

발간등록번호
11-1352159-000645-10

위탁 의료기관용

2017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Childhood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침 안내문

- 본 지침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제작하였습니다.
- 또한, 위탁 의료기관 계약부터 예방접종 비용상환 지급까지 예방접종 과정별로 필요한 정보를 기술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동 지침은 2017. 1. 1.부터 적용됩니다.

첫 발간 2009. 1.
1차 개정 2010. 8.
2차 개정 2011. 3.
3차 개정 2012. 1.
4차 개정 2013. 1.
5차 개정 2013. 12.
6차 개정 2014. 12.
7차 개정 2015. 12.
8차 개정 2016. 12.

동 지침내용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련 문의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48~52)

2017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

구 분	2016년	2017년	비고
사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2세 이하 아동 (2003. 1. 1. 이후 출생자) * 단, Hib 및 PCV 백신은 생후 59개월 이하, A형간염 백신은 2012년 이후 출생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2세 이하 아동 (2004. 1. 1. 이후 출생자) * 단, Hib 및 PCV 백신은 생후 59개월 이하, A형간염 백신은 2012년 이후 출생아 지원 * HPV백신은 2003~2005년 출생한 여아. 단, 2003년생은 2016년 1차 접종자에 한해 2차접종 지원 * 인플루엔자는 생후 6~59개월 아동 ※ 사업시기 등 세부내용은 2017년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을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PV의 경우 2016년 6월 신규 도입시 지원대상자 결정됨에 따라 2017년 내용 추가 * 인플루엔자는 2016년 신규 도입(생후 6~12개월)에 따라 내용 추가 및 2017년 사업 대상 확대
지원 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종 (BCG,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일본뇌염 사백신 및 생백신, 수두, Td, Tdap, Hib, 폐렴구균, A형간염, HP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종 (BCG,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일본뇌염 사백신 및 생백신, 수두, Td, Tdap, Hib, 폐렴구균, A형간염, HPV, 인플루엔자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플루엔자 추가
지원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비 및 예방접종시행비용 - 백신비: 백신별 공고가 -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8,000원. 단, DTaP-IPV 혼합백신은 27,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비 및 예방접종시행비용 - 백신비: 백신별 공고가 -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8,200원. 단, DTaP-IPV 혼합백신은 27,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비용은 지침발간일 기준임 * 2016년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1회당 18,200원(혼합백신은 27,300원임) * 2017년 지원비용은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공고(안내) 예정
비용 상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상환가능 - 사업대상기준에 적합하고,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한 접종 - 비용상환불가접종 중 의학적소견이 타당한 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상환가능 - 사업대상기준에 적합하고,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한 접종 - 비용상환불가접종 중 의학적소견이 타당한 접종 - (추가) 만 3세 이상에서 일본뇌염 베로세포 유래 사백신으로 접종할 경우 0.7ml백신만 비용상환 - (추가 예정) 일본뇌염 쥐뇌조직 유래 사백신으로 1, 2차 접종 후 베로세포 유래 사백신으로 3차 접종한 경우 * 일본뇌염 사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할 경우 베로세포유래 사백신 접종을 원칙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약처 허가사항 준수 * 2017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후 시행일 안내 예정

구 분	2016년	2017년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상환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접종 - 이른접종(최소접종연령, 최소접종간격 미준수) - 불필요한 추가접종 - 일본뇌염 생사백신 및 사백신간 교차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상환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접종 - 이른접종(최소접종연령, 최소접종간격 미준수) - 불필요한 추가접종 - (추가) 만 3세 이상에서 일본뇌염 베로세포 유래 사백신 0.4ml 백신으로 2vial 사용할 경우 - (추가 예정) 일본뇌염 베로세포 유래 사백신으로 1, 2차 접종 후 쥐뇌조직 사백신으로 3차 접종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약처 허가사항 준수 * 2017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 및 시행일 등 안내 예정
비용상환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상환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장이 청구내역 적합성 심사 - 이의신청 심의결과에 불복할 경우 질병관리본부장 조정 요청 - 보건소 자체심사가 어려운 경우 질병관리본부에 전문심사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상환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장이 청구내역 적합성 심사 - 이의신청 심의결과에 불복할 경우 질병관리본부장 조정 요청 - 보건소 자체심사가 어려운 경우 질병관리본부에 전문심사의뢰 - (추가 예정)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산하 예방접종비용 지급심사분과위원회(가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지급심사결과에 대한 질평가 및 비용상환심사 자문
비용상환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상환 심사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비용지급일: 월 2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별 지급일자 지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상환 심사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비용 지급 기한(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제외 • 비용지급일: 월 2회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별 지급일자 지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6-81호) 개정사항
예방접종입시번호발급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시 신생아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대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 - 발급절차: 접종기관에서 신생아 인적정보(생년월일 및 성별, 7자리) 및 보호자 인적정보를 전산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시 신생아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대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 - 발급절차: 접종기관에서 신생아 인적정보(생년월일 및 성별, 7자리) 및 보호자 인적정보를 전산등록 	

구 분	2016년	2017년	비 고
예방 접종 임시 번호 발급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등록 우선순위: ①모, ②부, ③조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보호자 등록 우선순위: ①모(母) 원칙 ②모(母) 확인 어려울 경우 기타 보호자 * 모(母)이외 기타 보호자 등록시 정확한 정보 확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 신생아번호 발급자의 인적정보관리 강화를 통한 신속한 비용상환 처리 및 임시번호 발급자 접종기록의 체계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상환 신청기한: 생후 1개월 이내(1개월 하루전까지) - 비용상환 신청가능한 접종: B형간염 1차 접종 및 BCG - 신생아번호 관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상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비용상환접수 ·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로 접종정보 통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상환 신청기한: 생후 1개월 이내(1개월 하루전까지) - 비용상환 신청가능한 접종: B형간염 1차 접종 및 BCG - 신생아번호 관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상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비용상환접수 ·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로 접종정보 통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 신생아번호 발급자에 대한 비용지급 처리 절차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 임시 관리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대상: 개인식별번호가 없는 만 12세 이하 내·외국인 - 발급절차: 보건소에서 보호자(신분증) 확인 후 피접종자 인적사항과 함께 보호자 인적정보를 전산등록 * 발급 전 동일인의 과거 관리번호 발급여부 확인 * 보호자 등록 우선순위: ①모, ②부, ③조부모, ③기타 * 외국인의 경우 단기 및 장기체류자 구분 없이 발급가능. 단, 여권번호(국적)입력 - 관리번호 관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발급시 접종정보 통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접종 임시 관리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대상: 개인식별번호가 없는 만 12세 이하 내·외국인 - 발급절차: 보건소에서 보호자(신분증) 확인 후 피접종자 인적사항과 함께 보호자 인적정보를 전산등록 * 발급 전 동일인의 과거 관리번호 발급여부 확인 * (변경) 보호자 등록 우선순위: ①모(母) 원칙 ②모(母) 확인 어려울 경우 기타 보호자 * 모(母)이외 보호자를 등록할 경우 휴대전화번호 인증 필수 * 관리번호는 현장발급을 원칙으로 함 * (변경) 외국인의 경우 단기체류자 발급 제외, 3개월 이상 장기체류자는 여권번호(국적), 비자로 체류기간 정보 확인 후 발급 - 관리번호 관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발급시 접종정보 통합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 관리번호 발급자의 인적정보관리 강화를 통한 신속한 비용상환 처리 및 임시번호 발급자 접종기록의 체계적 관리 * 여행 등 단기방문자의 경우 자국의 예방접종일정에 따라 접종하도록 유도

구 분	2016년	2017년	비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접종자 생년월일 기준 - 보호자로부터 확인한 실제 생년월일 * 생년월일 변경 권한: 보건소 및 접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접종자 생년월일 기준(변경)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원칙으로 함 - 보호자가 실제생년월일 변경을 희망할 경우 출생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변경 신청 * 생년월일 변경 권한: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른접종 등 예방접종실시 기준 적용을 위한 생년월일에 대한 정확한 기준 마련 및 생년월일에 대한 적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연접종 안내(Recall) 문자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연접종 안내(Recall) 문자서비스 제공(추가) - 대상자: 2013년 이후 출생자 - 제공내용: 표준예방접종일보다 1개월 이상 지연된 접종 안내 * 보호자가 지연사유 회신 또는 일정기간 안내 중지 요구 시 서비스 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7월부터 서비스 중 * 적기접종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어 다음접종(Remind) 문자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어 다음접종(Remind) 문자 서비스 제공(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7월부터 서비스 중 * 적기접종 유도 및 누락접종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 관리 - 예방접종대상자관리시스템에 보건소에서 확보한 중점관리 대상자를 등록하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 관리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로 사회적 취약계층(복지시설 이동 여부, 장애이동여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예방접종대상자정보 시스템에 제공하여 보건소에서 관리 	

국가예방접종 용어

- NIP(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국가예방접종
- IR(Immunization Registry): 예방접종 전산등록
- VIS(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 예방접종안내문
- 국가예방접종 지원 백신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결핵	BCG(피내용)	bacille Calmette-Guérin(vaccine against tuberculosis)
B형간염	HepB	hepatitis B vaccine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diphtheria and tetanus toxoid with acellular pertusis vaccine
	Td	tetanus toxoid with reduced amount of diphtheria toxoid
	Tdap	tetanus toxoid vaccine (full dose) with acellular pertusis vaccine (reduced dose)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DTaP, IPV vaccines combined
폴리오	IPV	inactivated polio vaccine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Hib	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vaccine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PPSV(다당)	pneumococcal polysaccharide vaccine
홍역, 풍진, 유행성이하선염	MMR	measles-mumps-rubella vaccine
수두	Var	varicella virus vaccine
A형간염	HepA	hepatitis A vaccine
일본뇌염	JE	Japanese encephalitis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human papilloma virus vaccine
인플루엔자	Flu	influenza vaccine

목 차

I. 사업추진 개요	1
1. 사업 개요	3
2. 사업 추진실적	5
3. 사업 목표 및 전략	5
4. 사업 내용	8
5. 예방접종업무 위탁 관련 법적 근거	9
6. 기관별 역할	15
II. 사업관리체계	17
1. 사업 추진 체계	19
2. 위탁계약 추진 절차	19
3. 비용상환 체계	20
III. 의료기관의 역할	23
1. 예방접종 교육 이수	25
2.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27
3. 예방접종 시행	30
4. 비용상환 신청 및 결과 확인	38
5. 자율점검 실시 및 방문점검 협조	46
6. 예방접종기록의 개인정보 관리	46
7.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47
8. 해외 장기체류자 귀국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지참 안내	48

[별첨자료]

I. 주요서식	49
〈별첨 1-1〉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기본교육 수료증	51
〈별첨 1-2〉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보수교육 수료증	52
〈별첨 1-3〉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53
〈별첨 1-4〉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확인증	54
〈별첨 1-5〉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공급 협약서	55
〈별첨 1-6〉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56
〈별첨 1-7〉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58
〈별첨 1-8〉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계약 해지 신청서 ...	59
〈별첨 1-9〉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60
〈별첨 1-10〉 예방접종 예진표	62
〈별첨 1-11〉 백신별 예방접종 비용상환 내역(의료기관)	63
〈별첨 1-12〉 예방접종별 안내문(VIS)	64
II.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89
[1] IR 의료기관 등록 및 사용자 승인 요청(의료기관)	91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91
2. 예방접종관리업무 권한 신청	93
2.1 IR 의료기관 사용자 권한 신청	93
2.2 어린이 NIP 위탁의료기관 승인요청(전자계약)	96
2.3 NIP 참여 의료기관 승인 확인(서면계약)	99
[2]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100
1)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접속	100
2) 예방접종내역 등록	102
3) 비용상환 신청	105
4) 비용상환 신청내역 확인	107

5) 비용지급결과 확인	109
6) 행정자치부 인증결과 오류내역	110
7) 다음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111
8) 행정서식	112
9) 의료기관 정보 관리	113
10) 부가기능	114
11) 자율점검	115

Ⅲ.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 매뉴얼117

[1] 교육시스템 이용 방법(학습자 매뉴얼)	119
1. 회원가입	119
2. 로그인 하기	119
3. 수강신청 하기	120
4. 학습하기	122
5. 수료 확인하기	124
6. 질문하기	124

Ⅳ.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125

[1] 개요	127
[2] 아나필락시스 대응법	129
1. 신속 대응	129
2. 사전 준비 사항	130
3. 심폐소생술(필요시)	132

[부록 I] 관련 법령	137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139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146
[부록 II] 백신보관과 관리	157
1. 백신의 보관과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권고사항	159
2. 백신 보관 시 필요한 기구들	161
3. 백신의 주문과 인수, 재고 관리 시 주의사항	165
4. 백신 보관시 점검 사항	168
5. 백신 보관 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치사항들	173
[부록 III] 예방접종 관련 정보 안내	177
1. 어린이 표준예방접종 일정표(2017)	179
2. 백신의 보관관리	180
3. 백신 접종법	182
4. 각 백신별 최소접종 간격	184
5. 미접종 소아의 예방접종 일정표	185
6.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186
7.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기준	187
8. 국내 유통 백신 현황(2016.12.5. 기준)	190
[부록 IV] 민원상담 사례집	193
1. 사업운영	197
2. 등록 및 시스템 운영	220
3. 교육시스템	239
4. 이상반응 관리	244



I. 사업추진 개요

1. 사업 개요	3
2. 사업 추진실적	5
3. 사업 목표 및 전략	5
4. 사업 내용	8
5. 예방접종업무 위탁 관련 법적 근거 ..	9
6. 기관별 역할	15



1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이나,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이 보건소 이용자로만 한정되어 접근성이 좋은 민간 의료기관 이용 시 지불하는 접종비용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함

 - ※ 예방접종 장애요인은 높은 예방접종비용(83%), 의료기관과의 거리(28%), 예방접종횟수, 시기에 대한 지식부족(26%)임(예방접종인식조사, '08.7월)
 - ※ 보건소는 전국 253개소이나,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민간의료기관은 약 12천 개소임('08년)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발생은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만 3세 아동의 완전접종률은 88.3%, 만 6세 아동의 완전접종률은 60.0%로 감염병 퇴치를 위한 목표수준인 95%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임

 - ※ 완전접종률(만3세): BCG, 3HepB, Var, 4DTaP, 3Polio, 1MMR, 3(2)JEV을 모두 받은 비율 (자료원 : 2015 전국 예방접종률 조사. 질병관리본부)
 - ※ 완전접종률(만6세): BCG, 3HepB, Var, 5DTaP, 4Polio, 2MMR, 4(3)JEV을 모두 받은 비율 (자료원 : 2012 전국 예방접종률 조사. 충남대)
 - ※ 미국 77.9%(3HepB, 4DTaP, 3Polio, 1MMR, 1Var, 2013년)
 - ※ 호주 92.6%(4HepB, 4DTaP, 3Polio, 2MMR, 4Hib, 2014년)
- '09년부터 민간의료기관의 백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본인부담금이 여전히 높아 영유아 부모의 사업만족도는 23%, **지원 확대요구는 94%** 수준임

 - ※ 국가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2차년도 평가 연구. 충남대, 2010년
- 이에,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을 향상**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및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함



추진경과

- 예방접종기록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02년~현재)
- 시범사업 실시('05년~'06년)
 - '05년 민간의료기관 필수접종비용 지원 시범사업 실시(7월~12월, 대구, 군포)
 - '06년 보건소 예방접종 확대 시범사업 실시(1월~12월, 강릉, 연기, 양산)
-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업무 위탁을 위한 근거 법령 제·개정('06년~'07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 전염병예방법 '06.9.27.) 및 같은 법 시행령('06.12.29.) 개정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07.10.)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상환관리를 위한 예방접종비용상환시스템 구축('07년)
-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지원사업 실시
 - (지원비용) 백신비('09.3.) → 백신비 및 시행비용 일부('12년) → 예방접종비용 전액('14년)
 - ※ '12년 본인부담금 5,000원 → '14년 본인부담금 폐지(전액 무료접종)
 - (지원항목) 8종('09.3.1.) → 9종('11.10.6. DTaP-IPV 추가) → 10종('12.1.1. Tdap 추가) → 11종('13.3.1. Hib 추가) → 13종('14.2.14. 일본뇌염 생백신, 5.1. 폐렴구균 추가) → 14종('15.5.30. A형간염 추가) → 16종('16.6.20. HPV, 10.4.인플루엔자 백신 추가)

지원백신(16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수두,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사백신, 생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간염,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Flu(인플루엔자)

- 2013 국정과제 채택(62-1) 맞춤형 임신·출산 비용지원

- 만 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 본인부담 폐지 및 항목확대 추진



2 사업 추진실적

구 분	참여 의료기관 수	참여 소아청소년과 수	비용상환 신청 건수(월평균)	비용상환 신청 금액(월평균)
2009년	3,949개소	364개소	87,666건	498백만원
2010년	4,937개소	1,011개소	119,648건	695백만원
2011년	6,769개소	2,302개소	272,486건	1,791백만원
2012년	7,047개소	2,335개소	526,441건	9,253백만원
2013년	7,111개소	2,107개소	721,270건	13,521백만원
2014년	7,265개소	2,039개소	838,596건	27,001백만원
2015년	7,326개소	2,182개소	913,904건	32,710백만원
2016년 11월	10,079개소	2,079개소	968,660건	35,549백만원

* 자료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보고자료, 의료기관의 전산등록 수정보고 등으로 변동 가능함

* 지원항목: 2009년 백신비, 2012년 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 일부(5천원 본인부담), 2014년 전액지원(무료접종)

3 사업 목표 및 전략



◎ 전략 1. 공공기능 강화

- 예방접종의 종류, 접종시기, 접종방법 및 접종하는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기준 관리
 -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2016-80호)
- 예방접종업무의 민간의료기관 확대 실시
-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적극적 서비스 제공 및 예방접종 관리
 - 예방접종별 지역사회 예방접종대상자에게 다음접종 및 누락접종 안내
 - 예방접종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접종서비스 제공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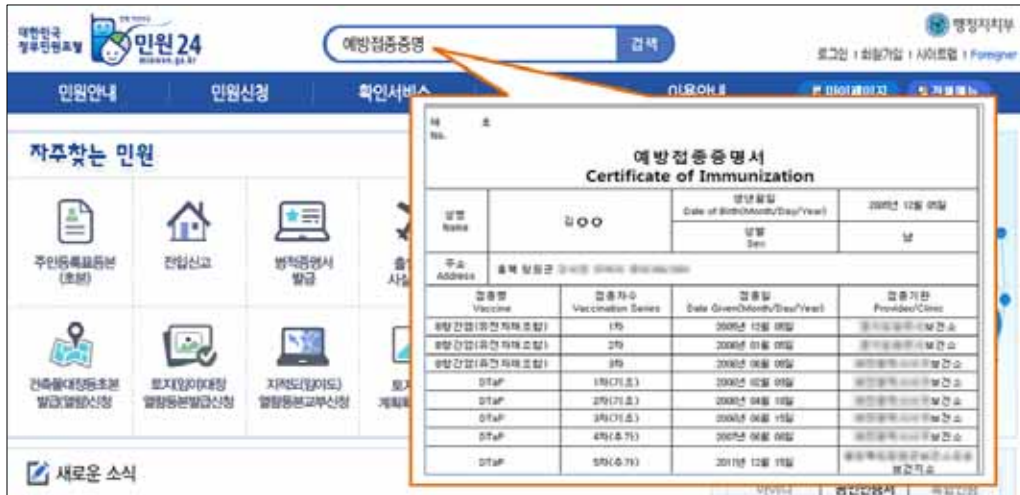
◎ 전략 2.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정기예방접종 대상자 부모에게 자녀의 다음접종 사전 알림 및 미접종에 대한 누락접종 문자 알림서비스 제공
 - ※ 문자서비스는 정기예방접종의 다음접종 및 완료 여부에 관한 정보 수신 동의한 경우 제공함
-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 등을 통해 올바른 전문정보 제공
- 예방접종내역 조회 및 예방접종증명서 무료발급 서비스 제공
 - 예방접종기록 통합관리를 통해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예방접종 내역 조회 서비스 제공





- 민원24(<http://www.minwon.go.kr>)를 통한 온라인 예방접종증명서 무료 발급 서비스 제공
 -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서비스 제공 예정(2017년)



전략 3. 예방접종 인프라 강화

범부처 통합 예방접종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 예방접종대상자에 대한 유관기관의 인적정보와 예방접종정보를 연계한 예방접종 통합정보체계 구축
 - 행정자치부(주민정보): 지역사회 예방접종 대상자 정보를 제공받아, 지역사회의 미접종자에게 적극적 접종서비스 안내
 - 교육부(입학생정보): 학교장이 교육부 교육정보시스템(NEIS)에서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에게 예방접종 안내
 - 보건복지부(보육시설 아동정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입소자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에게 예방접종 안내
 - 건강보험공단(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시 예방접종 내역 활용
 - 보건소,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실시 전 과거접종내역 조회 후 중복접종 등 방지



4 사업 내용

● 사업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2004.1.1. 이후 출생자)

- '17년부터 사업대상자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적용함
 - ※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상이하여, 실제 생년월일을 적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분만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등 실제 생년월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 변경
 - ※ 의료기관에서는 실제 생년월일 수정 불가하므로 보호자에게 보건소에 변경요청도록 안내
-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은 연령, 신규도입된 백신의 경우 다음과 같이 예방접종비용 지원 대상 연령이 제한됨
 - Hib, 폐렴구균 : 생후 59개월 이하
 - A형간염 : 2012.1.1. 이후 출생자
 - HPV : '03~'05년 출생한 여아(단, '03년생의 경우 2016년 1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2017년 2차 접종 비용지원)
 - ※ 백신 공급체계 등 기타 세부사항은 '2017년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관리지침' 참조
 - 인플루엔자 : 생후 6~59개월 어린이
 - ※ 백신 공급체계, 사업시기 등 기타 세부사항은 '2017년 인플루엔자 관리지침' 참조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는 해당 사업에서 예방접종비용 등을 지원하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B형간염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함
 -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의 B형간염 예방접종, 면역글로불린 주사 및 항원·항체검사는 '2017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관리지침' 참조

● 지원내용 : 국가예방접종의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전액 지원

● 지원백신 : 16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수두,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사백신, 생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간염, HPV(사람유두종 바이러스), Flu(인플루엔자)



● 사업체계

- 지자체장은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 위탁의료기관이 청구한 비용상환에 대해 피접종자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비용 지급 심사(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준수 여부 심사) 후 비용지급



5 예방접종업무 위탁 관련 법적 근거

●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 실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74호, 2015.8.11.]

제24조(정기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 7. B형간염
- 8. 유행성이하선염
- 9. 풍진
- 10. 수두
- 11. 일본뇌염
-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13. 폐렴구균
- 1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법률 제14316호, 2016.12.2.](시행 2017.6.3.)에 따라 제24조제1항제14호로 인플루엔자 추가 예정

●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9호)

제1조(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제1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때, 다음 각 호 중 제4호 외의 감염병에 대하여는 위험군 등 일부 권장대상에 대해서만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

- 1. 장티푸스
- 2. 인플루엔자
- 3. 신증후군출혈열
- 4. A형간염
- 5.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정기 및 임신예방접종에 대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예방접종)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임신예방접종) ② 제1항에 따른 임신예방접종업무를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를 위탁)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 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기 및 임신예방접종에 대한 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① 보건소장 및 제24조제2항(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본문에 따라 예방접종을 확인하는 경우 제33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는 보건소장과 법 제24조제2항(법 제2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예방접종을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 “보건소장등” 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한다는 사실
2. 예방접종 내역에 대한 확인 방법

● 정기에방접종 다음접종 사전안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에방접종)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에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에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정기에방접종의 사전 알림)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정기에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 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알림에 동의한 사람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알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필요한 개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정기에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예방접종기록 보고 및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예방접종 받은 사람의 이름, 접종명, 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
3.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개설 정보,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내용 등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예방접종 정보의 입력) 보건소장등이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체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성명
 - 나. 주민등록번호. 다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외국인이거나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2. 예방접종의 내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 가. 예방접종 명칭
- 나. 예방접종 차수
- 다. 예방접종 연월일
- 라. 예방접종에 사용된 백신의 이름
- 마. 예진 의사 및 접종 의사의 성명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부담한다.

3.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는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제66조(시·도가 보조할 경비) 시·도(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64조에 따라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2.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시·도가 부담할 경비의 2분의 1 이상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0호)

- 예방접종 실시 장소, 접종 의료인 숙지내용, 유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
-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및 보존기간 등에 관한 사항
- 예방접종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등에 관한 사항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1호)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등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예방접종비용 심의 및 공고에 관한 사항
-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6 기관별 역할

○ 시·도의 역할

- 관할 시도의 국가예방접종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시·도 의사회 등 관련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유지
- 시·군·구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 지역사회 예방접종률 분석 및 미접종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방안 마련
- 예방접종업무 담당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예방접종 전문교육과정 이수

○ 시·군·구의 역할

- 관할 시군구의 국가예방접종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 지역 의사회 및 의료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유지
- 관할 지역 육아, 보육시설 및 학교 대상 예방접종사업 관련정보 안내
- 예방접종업무 담당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예방접종 전문교육과정 이수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관리 및 위탁의료기관 공고
- 위탁의료기관 교육관리
- 위탁의료기관 관리 및 점검실시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관리
- 보건소 방문자에 대해 예방접종 실시 및 예방접종기록 전상등록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서비스 제공
- 예방접종대상자에게 정기예방접종 사전 알림 서비스 실시
- 지역사회 예방접종률 분석, 미접종자 관리 및 접종안내
- 예방접종기록 개인정보 관리 철저



○ 의료기관의 역할

- 관할 보건소와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 위탁계약 전 의료기관내 예방접종시행 예진의사의 예방접종교육 이수
-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접종 환경 구비
 - 예방접종 백신관리(백신냉장고 온도점검, 청결, 유효기간 등) 철저
- 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 기록 보고 및 비용상환 신청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
 - ※ 예방접종 시행 전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및 보관(5년)
 - 예방접종 내역 등록, 비용상환 신청 및 다음접종 안내
 -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비용상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비용상환 불가 및 환수
 - ※ 보호자가 다음접종일 안내문자서비스 제공에 동의할 경우 다음접종일을 전산시스템에 등록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자율점검 실시(상·하반기 각 1회 연 2회) 및 보건소 방문점검 협조
 - 백신관리상태, 예방접종실시기준 준수여부 등 점검
- 예방접종기록 개인정보 관리 철저
 - 예방접종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금지
- 관할 시도/보건소와 지역사회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업무협조체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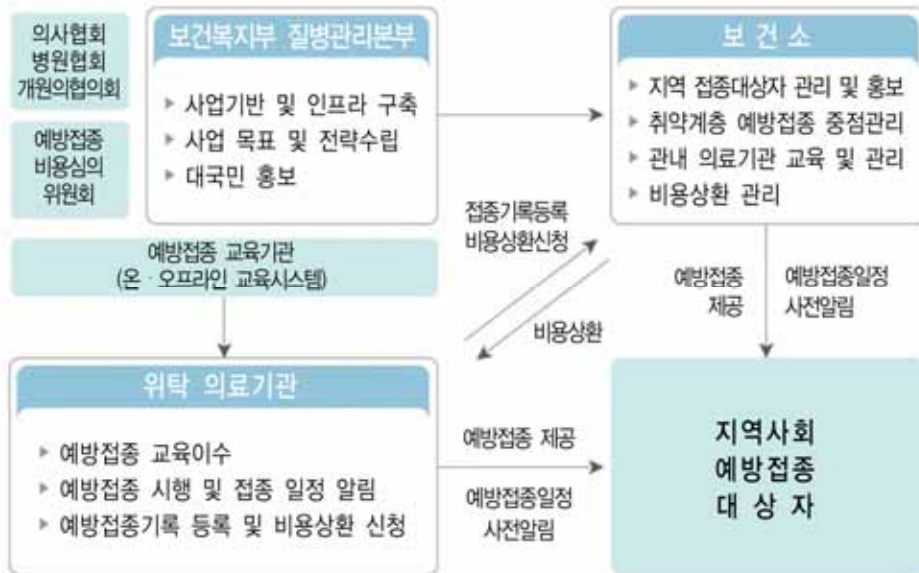


Ⅱ. 사업관리체계

- 1. 사업 추진 체계 19
- 2. 위탁계약 추진 절차 19
- 3. 비용상환 체계 20



1 사업 추진 체계



2 위탁계약 추진 절차

- 1. 예방접종 교육 이수(의료기관)**

 - 사업 참여 전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을 통해 기본교육과정 이수
 - ※ 위탁 의료기관 예진의사는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2. 계약체결(보건소, 의료기관) 및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발급**

 - 보건소 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날인하여 위탁계약 체결
 - 계약체결 후 보건소에서 교부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수령 및 비치
- 3. 위탁 의료기관 공고(보건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의거, 위탁 의료기관 공고

3 비용상환 체계



- (의료기관) 피접종자 본인 확인 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접종내역은 가급적 당일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접종정보가 불완전하게 등록될 경우 비용상환 신청이 불가하므로 접종정보 정확히 등록
 - ※ 출생신고 전 1개월 이하의 신생아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향후 피접종자의 예방접종통합관리 및 신속한 비용상환업무를 위해 반드시 보호자의 인적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등록함
 - ※ 보호자는 모(母)의 인적정보를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보호자의 인적정보를 등록할 경우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한 본인확인 후 등록함
 - * 기타 보호자 인적정보 휴대전화번호 인증방법 개발 예정(확정시 별도 안내 예정)
 - ※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보건소에서 부여한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관리번호로 예방접종 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 B형간염 2차 또는 BCG 접종 시 B형간염 1차 접종내역이 전산등록되지 않은 경우 1차 접종 여부에 대해 보호자에게 확인 후 보호자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과거 접종력 조회 및 인적 통합(민원상담사례집 p.235 참조)



- ☞ **접종내역 전산등록 시 신생아번호 접종내역 확인요청 팝업 안내**
 - 13자리 주민(외국인/관리)번호로 B형간염 1차 접종을 등록하는 경우
 - 13자리 주민(외국인/관리)번호로 B형간염 2차 접종내역 전산등록 시 B형간염 1차 접종이 없는 경우
 - 13자리 주민(외국인/관리)번호로 BCG 접종내역 전산등록 시 B형간염 1차 접종이 없는 경우

〈안내 내용〉

접종정보 등록 전 신생아 임시번호(생년월일 및 성별)로 기존에 등록된 B형간염 1차 접종 기록을 확인하여 접종이력을 통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번호로 등록된 접종은 보호자의 인적정보(주민등록번호)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 신청내역을 접수 및 심사(일반심사, 전문심사 의뢰, 이의심사)후 심사결과에 따라 비용지급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비용상환 기준을 숙지하여 위탁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상환내역에 대해 지급여부 심사
 - ※ 보건소 심사결과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정기적으로 심사결과의 적정성 점검 실시
 - ※ 2017년부터 예방접종비용 심사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산하 ‘예방접종비용 지급심사 분과위원회(가칭)’ 신설 예정
 - 보건소에서 지급심사가 어려운 경우 질병관리본부로 전문심사 의뢰
 - 전산등록 된 예방접종 내역은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공유센터’에서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로 통지(약 1일 소요)
 -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접수, 심사 및 비용지급 실시
 - 출생신고 전 신생아 임시번호(생년월일 및 성별, 7자리)로 등록된 접종내역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환 관리 후 지급
 - ※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생후 3개월 이상 출생신고가 지연된 경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 관리번호를 발급하여 비용지급심사 진행
 - ※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관리번호 발급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 진행
 - 의료기관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심사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이 가능하며, 일반심사(당초 심사)를 시행한 보건소에서 이의심사 시행
 -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는 예방접종비용지급 별도 관리

● 비용상환 업무처리 기한

구분	내용	처리 기한	처리 기관	법적근거
비용 상환	신청	비용상환 신청기한 폐지(2015년) 단, 중복접종 등을 방지하기위해 가급적 접종 당일에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중복접종 발생시 먼저 전산등록한 기관에 비용지급 ※ 접종 전 시스템 및 예방접종수첩 등을 통해 과거 접종력 반드시 확인	의료 기관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단, 신생아 제외) ※ 위탁 의료기관에서 보완 자료 제출에 소요된 기간(10일)은 제외됨	보건소	제7조(예방접종 비용상환 심사) 제8조(심사관련 보완자료 요청) 제9조(예방접종비용 심사결과의 통보)
	비용 지급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이 어려운 경우 제외	보건소	제10조(예방접종비용의 지급)
이의 신청	신청	비용상환 불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료 기관	제11조(비용상환 이의신청)
	심사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건소	

※ 법적근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81호)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및 예방접종수첩 등으로 중복확인을 완료하여 접종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서 중복접종이 이루어진 경우는 먼저 전산등록 한 의료기관에 비용지급





Ⅲ. 의료기관의 역할

1. 예방접종 교육 이수	25
2.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27
3. 예방접종 시행	30
4. 비용상환 신청 및 결과 확인	38
5. 자율점검 실시 및 방문점검 협조	46
6. 예방접종기록의 개인정보 관리	46
7.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47
8. 해외 장기체류자 귀국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지참 안내	48



1 예방접종 교육 이수

○ 교육과정

● (교육과정) 위탁 계약 체결 전 ‘기본교육과정’ 이수, 위탁계약 완료 후 재계약 시에는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기본교육)

- 교육대상: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인

※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의사는 반드시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예방접종업무 관계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도 교육 신청 및 수강 가능

〈위탁 의료기관 계약조건〉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내용

차 시	주 제
1	2017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2	HPV 백신과 예방접종 커뮤니케이션
3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4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I)
5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II)
6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7	BCG접종과 이상반응
8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시 대응법
9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10	백신의 보관과 취급
11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개요 및 시스템 사용방법

※ 운영기간: 2017.3.2.~2018.2.28.



● (보수교육)

- 교육대상: 위탁계약기간(3년) 만료 후 재계약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인
 - ※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 의사**는 반드시 교육 이수
- 교육내용

차 시	주 제
1	2017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2	HPV 백신과 예방접종 커뮤니케이션
3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의료기관용)
4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시 대응법

※ 운영기간: 2017.3.2.~2018.2.28.

● 교육방법

- (교육이수)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선택 후 온라인(e-learning) 교육 이수
 - 기본교육 과정명: [기본교육]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 의료기관 교육(2017)
 - 보수교육 과정명: [보수교육]어린이 NIP 위탁 의료기관 교육(2017)
 - ※ 각 과정은 2017.3.2.~2018.2.28.까지 운영되므로 학습 대상자는 기간 내 반드시 이수
- (수료확인 및 수료증 출력)
 - 학습자(의료기관 의료인): 교육시스템의 '수료증출력 → 수강종료과정'에서 수료 여부 확인 및 수료증 출력 가능
 - ※ 기본교육과정은 계약 체결 시 필요하므로 출력 후 보관
 - ※ 보수교육과정은 2014년부터 수료증 출력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필요하므로 출력 후 보관



2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 계약 체결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위탁계약 체결
 -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의료기관) 중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정기 및 임신예방접종 백신에 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 위탁계약 시 필요한 서류

- ▶ 필수 제출 서류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련 예진의사 기본교육 수료증
 - 통장사본
 -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접종을 시행할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확인증
 -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공급 협약서

- ※ 위탁계약 체결 전 의료기관에 소속된 예방접종 시행 의사는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반드시 예방접종 기본교육과정 이수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권고함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사업용 통장 사본 필요
- ※ HPV 접종 및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은 '2017년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관리 지침' 참조
- ※ 별첨 1-1~6. 교육수료증,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확인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공급 협약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 참여백신

-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대상백신 중 의료기관에서 실제 시행하고 있는 모든 백신에 대해 계약 체결 필요
 - (예) 국가예방접종 16종 백신 중 의료기관에서 10종 백신에 대한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면 10종 백신에 대해 계약체결 가능
 - ※ 단,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제 시행하는 백신 중 일부 백신만 선택적으로 참여 불가
- ▶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에 접종 시행여부를 표기하여 제출
- ▶ 위탁계약 참여백신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기관정보’에 반영되며 비용상환 신청과 연계
 -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의료기관의 백신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실시간 안내됨
 - 의료기관은 참여백신에 대해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특정 백신의 시행여부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을 다시 제출하여야 함
- ▶ 계약된 참여백신 구비 여부, 백신 보관 관리, 유효기간 경과백신 처리 등 관리 철저

【위탁 의료기관 준수사항(계약 조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 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게시
 - 관할 보건소에서 교부한 지정서는 의료기관내에 잘 보이도록 게시
 - ※ 별첨 1-7.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 재계약(계약 갱신)

- 의료기관 정보(요양기관번호, 대표자, 관할 주소지 변경 등)가 변경된 경우 재계약 체결
- 위탁 의료기관 이전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가 변경된 경우 재계약 체결
- 위탁계약기간 만료되기 1개월 전부터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재계약 체결 준비
 - ※ 2015.5.30. 이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위탁계약기간(2년) 만료 후 재계약

● 계약 해지

- 위탁 의료기관 계약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제출
 - ※ 계약해지 전 비용상환 신청한 접종내역은 심사 후 지급예정
 - ※ 별첨 1-8. 위탁 의료기관 계약 해지 신청서
 - ※ 별첨 1-4.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확인증(HPV 접종기관은 해지 신청 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에 참여 하지 않음으로 작성하여 제출 필요)
- 별도 계약 해지 절차 없이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로 위탁 계약 해지 같음

[예방접종 전산등록 의료기관 정보 연계]

- 의료기관 폐업신고 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자동 폐업처리 됨
- 폐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권한이 소멸되어 전산등록 누락 접종내역 추가 등록 불가
- 반드시 폐업 전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완료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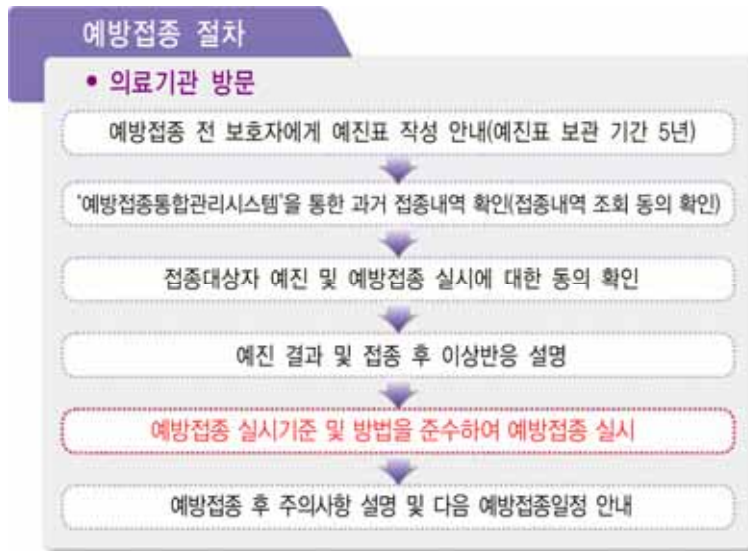
- 위탁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위탁 의료기관으로 사전통지 없이 해약 가능

①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탁계약의 해지】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 의료기관이 제2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3 예방접종 시행



○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및 보관

- 예방접종 예진표(별첨 I-10.)를 비치하고 예방접종 전 보호자에게 직접 작성토록 함
 - ※ 예방접종 예진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관 가능하며, 5년간 보관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시 접종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
 - ※ 2017년 모바일 앱을 이용한 '전자 예방접종 예진표' 활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 진행중임



● 예방접종 대상자 본인 확인 및 과거 접종력 확인

- 중복접종 및 이른접종을 방지하고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정확한 접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과거 접종내역을 반드시 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2015.12.29. 신설)

- ①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본문에 따라 예방접종을 확인하는 경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 B형간염 1차접종, BCG 접종내역이 등록되지 않는 경우 출생신고 전 신생아번호로 등록되었는지, 신생아번호(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접종내역확인하여 중복청구되지 않도록 주의
- ※ 보호자 확인결과 타기관에서 접종하였으나 전산등록되지 않은 경우, 보호자에게 접종기관에 전산 등록 또는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도록 안내

● 출생신고 전 신생아의 예방접종 대상자 본인 확인

- 신생아의 인적정보(생년월일 및 성별, 7자리 인적)와 함께 보호자(모(母)를 원칙으로 함)의 인적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등록하며, 신생아의 인적 및 보호자의 인적정보로 피접종자 본인 확인
- 보호자 중 모(母)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 보호자의 인적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자의 정확한 정보 확인 필요
 - ※ 예방접종은 권장하는 모든 예방접종 횟수를 완료할 경우 충분한 면역을 획득하므로, 출생신고 전 신생아의 이후 예방접종기록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정확한 인적정보가 중요함
 - ※ 부득이한 사유로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접종등록 가능하므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도록 안내

● 외국인의 예방접종 대상자 본인확인

-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 본인여부 확인

- 외국인 등록 면제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고, 관리번호를 이용하여 본인여부 확인
-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장기체류자의 경우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 가능하므로 보건소 방문 안내

② 예진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설명

- ① 예진 시 예방접종 실시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에 대한 보호자 동의 확인

〈예방접종 예진표〉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동의사항	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피접종자의 예방접종 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어린이) 정기예방접종의 다음접종 및 완료 여부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로 문자 수신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② 예진결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 후 서명

〈예방접종 예진표〉	
의사 예진 결과(의사 기록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온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하였음	<input type="checkbox"/>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야 함'을 설명하였음	<input type="checkbox"/>
문진결과 :	
이상의 문진 및 진찰 결과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의사서명 : (서명)	

③ 예방접종 실시

- ① 「예방접종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0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1호) 등 관련 규정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여 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 실시 기준 및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접종연령 및 최소접종간격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접종연령 및 최소접종간격을 준수하여 접종함 - 최소접종연령이나 최소접종간격보다 5일 이상 이른접종은 무효로 간주하고 부적절한 시점으로부터 최소접종연령 및 최소접종간격을 유지하여 재접종



● **생백신간 접종간격 준수**

- 수두, MMR, 일본뇌염 생백신간 예방접종은 동시접종 또는 최소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

● **권장하지 않는 교차접종 지양**

(1) **우발적 교차접종 시 접종력은 인정하나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 DTaP, DTaP-IPV 기초접종의 교차접종(기초 3회는 동일 백신으로 접종)
- 폐렴구균 PCV10과 PCV13간 교차접종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2가와 HPV4가 백신간 교차접종
- 일본뇌염 사백신간 교차접종. 단, 쥐뇌조직 유래 사백신 2회 접종 후 3차 접종 부터 베로세포 유래 사백신으로 교차접종 가능
 - ※ 사백신간 교차접종 허용 관련 내용(기준, 시행일 등)은 추후 안내 예정

(2) **교차접종 시 접종력 유효하지 않음**

- 일본뇌염 생백신과 사백신간 교차접종

● **권장하는 접종 연령 준수**

(1) **DTaP 백신은 만 7세 미만에서, 만 7세 이상은 Td 백신으로 접종**

- DTaP 1~3차 기초접종 완료 후 만 7세 이상에서 추가 접종시 Td 백신으로 접종 (만 11세 이후 Tdap 백신 접종 가능)

● **불필요한 추가접종 지양(지연접종시 추가접종 생략)**

- DTaP: 4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5차 접종 생략
- IPV: 3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4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 일본뇌염(사백신)
 - 3차접종이 지연되어 만 4~9세에 실시된 경우 4차 접종 생략 후, 만 12세에 접종
 - 3차 또는 4차 접종이 지연되어 만 10세 이후에 실시된 경우 추가접종 불필요
-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PCV(폐렴구균)
 - : 필요한 접종 횟수는 접종시작 연령에 따라 다르며, 접종을 시작했으나 중간에 접종 중지 후 재시작하는 경우의 접종 횟수는 다시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다름



• Hib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백신 종류	첫 번째 접종 시 연령(개월)	기초 접종	추가 접종
PRP-T 또는 HbOC	생후 2~6	3회	12~15개월에 1회
	생후 7~11	2회	12~15개월에 1회
	생후 12~14	1회	2개월 후 1회
	생후 15~59	1회	-

• Hib 지연접종 시 따라잡기 접종일정

최소접종 연령	1~2차 최소 접종간격	2~3차 최소 접종간격	3~4차 최소접종간격
생후 6주	4주 : 만 12개월 이전에 1차 접종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 만 12~14개월 사이에 1차 접종을 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만 15개월 이후에 1차 접종을 한 경우	4주 : 현재 연령이 만 12개월 미만인 경우 8주(마지막 접종) : 현재 연령이 만 12개월 이상이고 2차 접종을 만 15개월 미만에 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이전 접종을 만 15개월 이상에서 한 경우	8주(마지막접종) : 만 12개월 이전에 3회 접종을 한 만 12개월~만 5세 미만 소아만 필요

• PCV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백신 종류	첫 접종 연령(개월)	기초 접종	추가 접종
PCV10	생후 2~6	3회	12~15개월에 1회
	생후 7~11	2회	12~15개월에 1회
	생후 12~59	2회	-
PCV13	생후 2~6	3회	12~15개월에 1회
	생후 7~11	2회	12~15개월에 1회
	생후 12~23	2회	-
	생후 24~59(건강한 소아)	1회	-
	생후 24~71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	2회	-

• PCV 지연접종 시 따라잡기 접종일정

최소접종 연령	1~2차 최소 접종간격	2~3차 최소 접종간격	3~4차 최소접종간격
생후 6주	4주 : 만 12개월 이전에 1차 접종, 현재 연령이 만 24개월 미만인 경우 8주(마지막 접종) : 만 12개월 이후에 1차 접종, 현재 연령이 만 24~59개월인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건강한 소아로 만 24개월 이후에 1차 접종을 한 경우(PCV10은 8주 후 접종 후 종료)	4주 : 현재 연령이 만 12개월 미만인 경우 8주(마지막 접종) : 현재 연령이 만 12개월 이상인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건강한 소아로 이전 접종을 만 24개월 이후에 한 경우	8주(마지막접종) : 만 12개월 이전에 3번의 접종을 한 만 12개월~만 5세 미만 소아만 필요



● 예방접종 내역 등록

- 예방접종 실시 내역에 대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 자체 전산시스템 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본부 웹서비스)'을 이용하여 예방접종내역 등록(가급적 당일 등록 권장)

[위탁계약 조건]

- ④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 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별첨 II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2] 접종내역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2. 예방접종내역 등록

- 예방접종 전산등록 기준 준수
 - 표준예방접종시기에 따라 접종하며, 접종내역 차수는 순차적으로 등록
 - 지연접종으로 다음 차수 접종이 생략된 경우 생략된 칸을 비우지 않고 순차적으로 등록
 - ※ 예방접종 전산등록 시 접종연령이 아닌 접종차수를 기준으로 순차적 등록

[예방접종 전산등록 기준 및 유의사항]

● DTaP-IPV 혼합백신

- DTaP-IPV 혼합백신으로 기초(1~3차) 접종한 경우 <DTaP-IPV 1~3차>에 등록
 - ※ DTaP-IPV 콤보백신과 DTaP, IPV 단독백신을 중복등록 하지 않도록 주의
 - ※ DTaP 4차시기는 단독백신으로 접종하고 4차에 등록
 - ※ DTaP 기초 접종(1~3차)은 동일백신으로 접종 (제조사마다 백신 제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 DTaP 4차, IPV 3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만 4~6세 아동이 DTaP-IPV 혼합백신으로 추가 접종한 경우 <DTaP-IPV 추가(4차)>에 등록



※ DTaP-IPV 추가(4차) 접종 전 DTaP 4차 단독백신 접종력 확인

※ DTaP-IPV 추가(4차) : DTaP 5차, IPV 4차 접종과 동일

Td/Tdap 백신

- DTaP 5차까지 접종하고 만 11~12세에 Td 접종한 경우 <Td 6차>에 등록
- DTaP 4차를 만 4세 이후에 실시하여 DTaP 5차 접종을 생략하고 만 11~12세에 Tdap(또는 Td) 백신을 접종한 경우 <Tdap 6차(또는 Td 6차)>에 등록
- DTaP 5차 접종을 하지 못하고 만 7세에 Td 접종한 경우 <Td(그외) 1차>에 등록
 - ※ DTaP 백신 접종은 만 7세 미만에서만 실시
- DTaP 접종을 한번도 받지 않은 만 7세 이상 아동이 Td로 기초접종(3회 중 1회는 Tdap으로 접종)한 경우 <Td(그외) 1, 2차>에 순차적으로 등록, 3회 접종 중 1회 접종한 Tdap은 <Tdap 6차>에 등록
 - ※ Td 3회 기초접종(3회 중 1회는 Tdap으로 접종) 시 1~2차 접종 간격 4주, 2~3차 접종 간격 6개월을 준수하여야 함

Hib, PCV 백신

- 초회 접종시기 및 재시작 시기별 접종 실시 기준에 맞는 횟수에 따라 접종 1차부터 순차적으로 등록

MMR 백신

- 홍역 유행으로 6~11개월 영아에게 가속접종 한 경우 <MMR 1차>에 등록 (의학적 소견에 사유 입력)
- 6~11개월에 접종한 영아가 12~15개월에 재접종한 경우 <MMR 1차>에 중복등록 (의학적 소견에 사유 선택·입력)
- 만 4~6세 추가접종은 <MMR 2차>에 등록

일본뇌염 백신

- 일본뇌염 사백신 3차를 만 4~9세에 실시(일본뇌염 사백신 4차 접종을 생략)한 아동에게 만 12세에 추가접종한 경우 <일본뇌염 사백신 4차>에 등록
 - ※ 일본뇌염 사백신 5차 접종 시기라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일본뇌염 사백신 4차>에 등록
- 일본뇌염 생백신 1차 접종 후, 일본뇌염 사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한 경우 <일본뇌염 사백신 1차>에 등록
 - ※ 이후 접종은 접종 일정에 따라 완료하고 등록



②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설명

①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설명

-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관찰한다.
-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깊게 관찰한다.
- 접종 당일과 다음 날은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
-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한다.
-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과 경련이 있을 때에는 곧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한다.
- 아기는 반드시 바로 눕혀 재운다.

② 예방접종별 안내문(VIS;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 비치

※ 별첨 I-12. 예방접종별 안내문(VIS)

② 다음 예방접종 일정 알림 등록

① 정기예방접종에 대한 다음접종 일정에 대해 문자수신 동의여부 확인 후 다음 접종 일자를 시스템에 등록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 정기예방접종대상 아동 부모에게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안내

- 대상: 예방접종 예진표의 '예방접종 확인 및 다음접종 사전알림'에 수신 동의자

- 등록 방법: 예방접종내역 등록 시 '다음 예방접종 일자' 지정

- 문자 발송: 의료기관에서 지정(문자전송일은 다음접종일 2일전으로 기본설정 되었으며, 날짜 수정 가능)한 날짜에 문자 발송됨

※ 다음 예방접종 일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피접종자 주소지 지자체장명으로 표준예방접종 일정표에 따른 예방접종별 권장접종 시작시기를 안내하는 문자 발송

② 2016년 7월부터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위해 다국어 문자 알림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므로, 희망하는 보호자에게 안내 후 희망하는 언어를 전산등록함

※ 다국어 서비스 언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별첨 Ⅱ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2]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7. 다음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4 비용상환 신청 및 결과 확인

○ 비용상환 대상 및 상환 신청

● 주민등록 발급자의 비용상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관내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2004.1.1. 이후 출생자)
 - ※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상이하여, 보호자가 실제 생년월일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분만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도록 안내(의료기관에서는 피접종자의 생년월일 수정 불가)
 - ※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B형간염 예방접종 비용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서 지원하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B형간염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Hib, 폐렴구균 : 만 5세 이상에서 접종을 권장하지 않으므로, 생후 59개월 까지 지원(단, 고위험군 소아는 5세 이상에서도 지원)
- A형간염 : 2012.1.1. 이후 출생아 지원
- HPV : '03~'05년 출생한 여아(단, '03년생의 경우 2016년 1차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2017년 2차 접종 비용지원)
 - * 백신공급체계 등 기타 세부사항은 '2017년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관리지침' 참조
- 인플루엔자 : 생후 6~59개월까지 지원
 - * 인플루엔자 백신공급체계, 사업기간 등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2017년 인플루엔자 관리지침' 참조

● 출생신고 전 신생아의 비용상환

- 신생아의 인적정보(생년월일 및 성별, 7자리 인적)와 함께 보호자(모(母)를 원칙으로 함)의 인적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 보호자 중 모(母)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타 보호자의 인적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자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함
 - ※ 예방접종은 권장하는 모든 예방접종 횟수를 완료할 경우 충분한 면역을 획득하므로, 출생신고 전 신생아의 이후 예방접종기록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정확한 인적정보가 중요함
 - ※ 출생신고 전 신생아의 예방접종비용은 출생신고(주민등록번호 생성) 이후 출생신고 전후 인적정보를 확인하여 인적정보를 보완한 이후 비용지급 처리됨. 단, 출생신고를 3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지연사유 등을 확인 후 비용상환 접수처리함
- 신생아 비용상환 신청가능 접종(출생 후 1개월 이내): B형간염 1차, BCG
 - ※ 부득이한 사유로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신생아번호로 전산등록 또는 비용상환 신청이 불가하므로, 보호자에게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 접종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하도록 안내

◆ B형간염 1차 접종에 대한 비용상환 신청시 주의사항

- ▶ B형간염 1차 접종은 출생 직후 접종하므로 대부분 피접종자의 7자리 임시번호 (생년월일 및 성별)와 함께 보호자 주민등록번호로 비용상환 청구됨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 생성 시 7자리 임시번호 접종력은 통합관리됨)
- ▶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피접종자의 7자리 임시번호로 비용상환 신청 여부 확인 후 이종으로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① B형간염 1차 접종을 출생 당일 전산등록(비용상환 신청)하지 않을 경우
 - ② B형간염 1차 접종을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할 경우

● 외국인 예방접종 대상자의 비용상환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자(면제자 포함)의 경우 내국인에 준하여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실시 후 비용상환 신청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장기체류자는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 가능함

◆ 외국인에 대한 위탁의료기관 비용지원 기준

외국인등록번호 발급자(면제자 포함)는 내국인에 준하여 적용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미발급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번호 발급 후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가능

- ※ 관리번호 발급은 접종 대상자 보건소 방문이 원칙(유선발급 불가)
- ▶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자(면제자포함)) 본인 확인 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외국인 등록번호로 비용상환 신청가능
 -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 면제자는 보건소에서 별도의 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후 비용상환 신청가능
- ※ 외국인등록번호 미발급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

◎ 비용상환 신청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종내역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예방접종내역 등록 시 '예방접종 등록' 화면에서 '비용상환 신청비용'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비용상환 신청금액 확인 후 등록

별첨 II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 [2]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2. 예방접종내역 등록
 3. 비용상환 신청

◎ 비용상환 신청 결과 조회

- 신청한 접종내역은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공유센터'를 거쳐 피접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접수 후 비용상환 심사 및 지급
 - 등록한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오류가 발생하여 보건소에서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등록
 -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인증오류로 분류된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인적정보를 확인하여 수정 시 비용지급 가능



☞ 별첨 Ⅱ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2]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6. 행정자치부 인증결과 오류내역

- 심사결과는 ‘상환결정’, ‘예외인정’, ‘상환불가’, ‘전문심사의뢰’, ‘인증오류’로 구분되며, 지급이 완료된 경우 ‘지급완료’로 구분

☞ 별첨 Ⅱ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2]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4. 비용상환 신청내역 확인
- 5. 비용지급결과 확인

- (상환불가) ‘상환불가 사유’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며,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이의신청 가능
 - ※ 피접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이의심사 진행

☞ 별첨 Ⅱ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2]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4. 비용상환 신청내역 확인 ③이의신청

- (예외인정) 의학적 사유가 타당한 중복접종 또는 최소접종연령보다 이른접종 등으로 일반적인 예방접종 실시기준 이외 의학적 소견이 타당하여 비용상환이 가능한 접종으로 반드시 의학적 소견 등록 필요
- (전문심사의뢰) 보건소에서 질병관리본부로 검토의뢰를 한 경우로 검토 후 피접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심사
 - ※ 예방접종 비용상환 심사결과의 질평가를 위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산하 예방접종비용 지급심사분과위원회(가칭)’ 신설(2017년 상반기 예정)하여, 예방접종비용 지급심사결과에 대한 검증 예정임
- (인증오류)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가 오류인 경우로, 의료기관에서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하기 전까지는 피접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를 확인할 수 없어 비용상환 신청내역 접수 및 심사 불가



심사결과	세 부 내 용
상환결정	사업 대상 기준에 적합하며,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시행한 접종 보건소에서 비용지급 완료시 심사결과에 '지급완료'로 표시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한 지연접종은 비용상환 가능
상환불가 ¹⁾	- 중복접종, 이른접종(최소접종연령 또는 최소접종간격 미준수) - 불필요한 추가접종(지연접종으로 생략되는 접종을 시행한 경우) - 일본뇌염 교차접종 등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접종
예외인정 ²⁾	의학적 소견이 타당한 중복접종 및 이른접종 등
전문심사 의뢰	보건소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전문심사를 의뢰한 접종
인증오류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된 접종 ※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유센터'에서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불가 ※ 의료기관에서 직접 수정 전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및 심사불가

1) 상환불가 접종

- ▶ 동일백신, 동일차수의 중복접종('09.3월~)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된 자료 기준으로 중복접종인 경우
(예) 동일 피접종자의 인적정보를 두 개 이상 생성되어 동일접종 중복신청 등
 - ※ 중복접종이 등록된 경우 접종일 칸이 노란색으로 표시됨. 만약, 이전 접종차수가 중복으로 등록된 경우 이전 접종력 확인(차수 등록오류, 유효여부 등) 필요
- ▶ 최소접종연령보다 5일 이상 앞당겨 접종된 이른접종('12.7월~)
 - ※ 예방접종일정(적기성 정보)은 2017년부터 주민번호 생년월일 기준으로 생성되며, 실제 생년월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출생증명서류를 보건소로 제출하여 변경 요청
- ▶ 최소접종간격보다 5일 이상 앞당겨 접종된 이른접종('13.10월~)
 - ※ 이른접종의 경우 무효로 간주되므로 향후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따라 접종 일정에 맞춰 재접종이 필요하며, 접종 일정에 맞춰 재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
 - ※ (예외)4일 이하의 오차(grace period) 적용 제외 : 일본뇌염 사백신 1, 2차 최소 접종 간격 7일
- ▶ 불필요한 추가접종('14.8월~)
 - 지연접종으로 다음접종이 생략되는 접종을 시행한 경우
- ▶ 일본뇌염 생백신과 사백신간 교차접종('14.8월~), 사백신간 교차접종('15.5월~)*
 - * 일본뇌염 사백신간 교차접종 관련 내용은 변경예정으로 추후 안내 예정



2) 의학적 소견이 타당하여 예외인정 된 접종의 비용상환 신청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의학적소견/기타 사유'의 '사유입력' 버튼 클릭 후 의학적 소견 입력창에서 의학적 소견 대분류/소분류 항목을 선택

구분	대분류 선택 항목	중분류 선택 항목	소분류
공통	· 이전 접종력 불인정으로 인한 재접종	· 이전 접종 최소접종연령 미준수 · 이전 접종 최소접종간격 미준수	-
	·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접종	· 이식일자	-
	· 면역저하 상태 동안 받은 접종의 재접종 (항암치료 후 등)	· 상세사유작성	-
	· 지연등록(접종전산등록 누락 등)	-	-
BCG	· TST 결과 음성(접종연령 생후 3개월부터)	-	-
B형간염	· 20Kg 미만, 37주 이하 출생 미숙아 재접종	· HBsAg 양성 산모(주산기 예방사업 참여 미동의 대상자) · HBsAg 음성 산모(비용상환 제외) · 출생당시 산모의 HBsAg 상태를 알 수 없었음	· 출생주수 · 출생체중
	· 고위험군 재접종	· HBs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 · B형간염 바이러스 만성 감염자의 가족 · 혈액제제를 자주 수혈 받아야 되는 환자 ·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	-
	· 기초접종 후 항체 미형성으로 인한 재접종 (비용상환 제외, 접종비용 자부담)	-	-
DTaP	· 권장접종연령을 미준수한 우발적 접종 ※ 향후 동일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예) 만 7세 이상에서 DTaP 접종시	-
Td 6차	· 권장접종간격(5년)을 미준수한 우발적 접종 ※ 향후 동일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예) 직전 접종한 DTaP 접종과의 접종간격 5년 미준수 시	-
Tdap 6차	· DTaP 기초접종 1~3차 미완료자	예) 만 7~10세 Tdap 백신으로 기초접종시	-
	· 권장접종간격(5년)을 미준수한 우발적 접종 ※ 향후 동일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예) 직전 접종한 DTaP 접종과의 접종간격 5년 미준수 시	-
일본뇌염	· 과거 교차접종 시행으로 접종을 완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행된 교차접종	-	-
Hib	· 고위험군 접종	· 상세사유작성	-
폐렴구균	· 고위험군 접종	· 상세사유작성	-
MMR	생후 6~11개월 가속접종	· 홍역 확진 환자 접촉자 · 홍역 유행지역 거주자 · 홍역 유행지역 여행	-

* 직접 작성한 기타 사유의 경우 의학적 소견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심사



② 비용지급 결과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지급결과’ 메뉴에서 피접종자 주소지 보건소가 지급한 비용 확인 가능
 - 지급된 비용에 대해 기간별, 접종내역별, 보건소별로 검색가능
- 월별 지급통계(신청건수, 지급완료건수, 총 상환금액)는 ‘행정서식’에서 확인가능

☞ 별첨 II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2]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8. 행정서식

※ 별첨 I-11. 백신별 예방접종 비용상환 내역



● 예방접종비용

-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대한민국 전자관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

1.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용)		30,160
B형간염	HepB		2,27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치메로살 포함	4,510
		치메로살 미포함	6,300
	Td		12,620
	Tdap		19,640
폴리오	IPV		8,44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22,79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1,110
수두	Var		12,570
일본뇌염	JE(사백신)	쥐뇌조직유래	4,840
		베로세포유래	11,450
	JE(생백신)		11,340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5,63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3		60,580
	PCV(단백결합) 10		52,270
	PPSV(다당질)		20,090
A형간염	HepA		14,430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2		56,270
	HPV 4		62,040
인플루엔자	Flu 3	0.25ml	10,000
		0.5ml	8,600

2.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8,20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27,300원

- ※ 2016년 기준(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602호)으로 2017년 지원비용은 별도 공지 예정
- ※ 변경사항은 인터넷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전자관보 ‘공고’,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5 자율점검 실시 및 방문점검 협조

- (점검주기) 상·하반기에 걸쳐 각 1회씩 연 2회 실시
- (점검방법)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예방접종 실시기준 준수여부, 백신관리사항 등에 대해 점검한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행정업무/자율점검의 '자율점검표 항목'에 해당내용 표시 후 제출함(p.115 자율점검 참조)
- (점검내용)
 - 일반사항: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게시, 계약 체결한 백신 사전 구비 등
 - 예방접종 실시: 예진표 작성, 과거접종력 확인, 백신의 종류와 투여방법 설명, 예방접종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 설명, 정확한 접종부위·접종 용량·접종방법에 따른 접종, 접종 후 20~30분 정도 관찰, 예방접종기록의 전산등록, 비용상환 신청기한 준수 등
 - 백신관리: 백신관리 담당자 지정, 백신구입시 생물학적 출하증명서 수령, 백신전용 냉장고에 백신만 보관, 백신 보관 온도 2~8℃ 유지, 일 2회 이상 온도점검, 유효기간 확인 등
 - ※ 별첨 1-9.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 (점검결과) 관할 보건소로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전산등록
- 관할 시·군·구의 방문점검 협조(연 1회 이상)

6 예방접종기록의 개인정보 관리

- 예방접종기록의 개인정보 관리
 - 예방접종의 기록은 피접종자의 누락접종과 중복접종을 방지하기 위해 접종 기관간에 공유하고 있음
 - 예방접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접종기관간에 공유되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
 -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위탁계약조건 제6항에 따라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



7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종류

- 접종 후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 당해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

※ 부록 Ⅲ-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기준

●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예방 및 발생 시 대응법

- 접종 후 접종기관에 20~30분간 머물러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에 대비한 응급처리 장비 구비 및 후속조치 체계 마련
- 신속대응을 위한 담당자별 역할 숙지(예진 의사, 간호사, 보조원 등)

※ 별첨 Ⅳ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 이상반응 신고 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 안전관리 → 이상반응 →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

※ 부록 Ⅳ-4. 민원상담 사례집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기준

- 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0호)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

※ 부록 Ⅰ-3.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 보상신청 유효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금액: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

※ 보상관련 세부 사항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참고

8 해외 장기체류자 귀국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지참 안내

- 피접종자가 해외 장기체류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예방접종 기록 관리를 위해 귀국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참하도록 안내
 - 외국에서 접종한 예방접종증명서는 접종한 기관의 직인 또는 의사의 확인이 된 영문증명서로 접종하신 기관에서 피접종자가 직접 확인·발급
 - 국내에서 초등학교 입학 또는 어린이집 입소시 관련법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공식 사인(official signature or stamp)된 서류 필요
 - ※ 아기수첩은 보호자가 아기의 접종내역을 잘 관리하도록 도움을 주는 수첩으로 접종기관 직인이나 공식 사인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음
 - ※ 다만, 국가에서 발급한 나라의 경우 아기수첩에 표기된 예방접종기록 인정여부에 대해 검토중임

〈관련법〉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 ▶ 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 해외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전산등록 가능함을 안내
 - 외국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하도록 안내
 - *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와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 확인 가능함



〈별첨자료〉

I. 주요서식

〈별첨 1-1〉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기본교육 수료증	51
〈별첨 1-2〉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보수교육 수료증	52
〈별첨 1-3〉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53
〈별첨 1-4〉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확인증	54
〈별첨 1-5〉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공급 협약서	55
〈별첨 1-6〉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56
〈별첨 1-7〉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58
〈별첨 1-8〉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계약 해지 신청서	59
〈별첨 1-9〉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60
〈별첨 1-10〉 예방접종 예진표	62
〈별첨 1-11〉 백신별 예방접종 비용상환 내역(의료기관)	63
〈별첨 1-12〉 예방접종별 안내문(VIS)	64



〈별첨 I-1〉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기본교육 수료증

질병관리본부[on]-17-NIP1-00000001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교육 수료증

소 속 :
직 군 : (면허번호:)
성 명 :
소재지 :

귀하는 질병관리본부 온라인 교육시스템에서 기본교육과정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 의료기관 교육(2017)」)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질병관리본부장 직인생략



〈별첨 I-2〉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보수교육 수료증

질병관리본부[on]-17-NIP2-00000001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교육 수료증

소 속 :

직 군 : (면허번호:)

성 명 :

소재지 :

귀하는 질병관리본부 온라인 교육시스템에서 보수교육과정
 («어린이 NIP위탁 의료기관 교육(2017)»)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질병관리본부장 직인생략



〈별첨 I-3〉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참 여 백 신 시 행 확 인 증
 (보건소 제출용)

기 관 정 보			
기 관 명		요양기관 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소재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시행 백신정보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시행여부	
결핵	BCG(피내용)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B형간염	HepB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Td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Tdap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폴리오	IPV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PPSV(다당질)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수두	Var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A형간염	HepA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일본뇌염	JE(사백신-취뇌조직 유래)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JE(사백신-베로세포 유래)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JE(생백신)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인플루엔자	Flu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 . . .	
		대표자	(서명)



〈별첨 I-4〉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확인증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확인증

(보건소 제출용)

기 관 정 보			
기 관 명		요양기관번호	
대표자명		전 화 번 호	
주 소 (소재지)			

①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를 위한 교육자료 수령 및 사업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②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HPV 예방접종 시행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예방접종 시행 백신 정보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시행여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를 확인합니다.

20 . .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위탁계약 해지 신청할 경우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계약해지 신청서' 외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확인증' 추가 제출 필요 (시행하지 않음을 표시하여 제출)



〈별첨 I-5〉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공급 협약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공급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중 [가다실, 또는 서바릭스] 공급에 대한 협약이다.

제2조(공급방법) “갑”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을”에게 위의 백신공급을 요청하고, “을”은 “갑”이 요청한 백신을 지정한 장소에 직접 운반·납품 한다.

제3조(보관 및 수송) “을”은 백신의 보관 및 수송시에는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판매관리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다.

제4조(백신비 지급) “갑”이 예방접종 실시 후 보건소에 비용상환을 요청하고, 보건소의 지급심사에서 상환결정된 건은 보건소에서 조달계약업체(정부조달계약에 의해 결정)로 지급을 하며, “을”은 조달계약업체를 통해 상환 받는다.

※ 보건소의 지급심사 결과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갑”은 “을”에게 백신비를 직접 지급한다.

- 보건소의 지급심사에서 상환불가로 결정된 건(중복접종, 이른접종 등)
- 접종자의 과실로 인해 백신 오염이 발생한 경우
- “갑”이 공급 요청하고 “을”이 납품을 완료한 백신 중 유효기간이 도래시까지 접종하지 못한 백신

제5조(백신공급기관 변경) “갑”이 백신공급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을”에게 변경의사를 통보해야하며, 백신공급기관이 변경 승인된 시점에 “을”이 공급한 백신이 남아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잔여 백신에 대한 백신비를 지급한다.

제6조(기타) 동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운영세칙)에 따른다.

20 년 월 일

“갑”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주 소 :
연 락 처 :
의료기관명 :
요양기관번호 :
대 표 자 :

(인)

“을” 백신공급기관

주 소 :
연 락 처 :
회 사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별첨 I-6〉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쪽)

제1조	계약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2조	“을”	의 료 기 관 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 시 과 목	
		주 소 (소 재 지)			
		전 화		전자우편주소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면 허 종 별		면 허 번 호	
		의료정보시스템	<input type="checkbox"/> 사 용 ※ 사용사업체명 : _____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제3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제4조	위탁계약 범위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예방접종업무 []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예방접종업무			
제5조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계약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을〉 의료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뒤쪽)

〈위탁계약조건〉

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별첨 1-7〉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구-전자(또는 서면)-○○-○○○호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예방접종업무 위탁범위 :

귀 기관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m²]



〈별첨 I-8〉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계약 해지 신청서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계약 해지 신청서				
의료기관	기 관 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 시 과 목	
	대 표 자		연 락 처	
	해지사유 및 요청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본 의료기관은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 해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40px;">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해지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40px; font-weight: bold;">(특별자치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p>				



〈별첨 I-9〉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자율 점검 표
(보건소 제출용)

※ 의료기관 대표자께서 점검하시고 점검결과 란에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등록사항				
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전문과목 (표시과목)		
주소(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FAX번호		이메일주소		
예방접종업무 담당인력	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의사 : 명 <input type="checkbox"/> 간호사 : 명 <input type="checkbox"/> 간호조무사 : 명 <input type="checkbox"/> 행정요원 : 명 <input type="checkbox"/> 전산요원 : 명		
예방접종 시행여부	국가 예방접종	예방접종비용 지원		기타 <input type="checkbox"/> 장티푸스 <input type="checkbox"/> 신증후군출혈열
		<input type="checkbox"/> BCG(피내) <input type="checkbox"/> B형간염 <input type="checkbox"/> DTaP <input type="checkbox"/> Td <input type="checkbox"/> Tdap <input type="checkbox"/> IPV <input type="checkbox"/> DTaP-IPV <input type="checkbox"/> Hib <input type="checkbox"/> PCV(단백결합) <input type="checkbox"/> PPSV(다당질) <input type="checkbox"/> MMR <input type="checkbox"/> 수두 <input type="checkbox"/> 일본뇌염(사백신-쥐뇌조직 유래) <input type="checkbox"/> 일본뇌염(사백신-베로세포 유래) <input type="checkbox"/> 일본뇌염(생백신) <input type="checkbox"/> A형간염 <input type="checkbox"/> HPV <input type="checkbox"/> 인플루엔자		
	기타 예방접종	<input type="checkbox"/> BCG(경피) <input type="checkbox"/> 로타바이러스		
일반사항 및 접종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일반사항				
1)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또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인증서」를 방문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2)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백신을 사전에 구비해 둔다.				
3) 보호자에게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한다.				
2. 예방접종 실시 전 준비사항				
1) 예방접종 예진표를 비치하고 있다.				
2) 접종 전 보호자(법정대리인)에게 예진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3) 예방접종 실시 전 반드시 과거 접종력을 확인한다(1차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2차 : 예방접종수첩).				
4) 보호자가 작성한 예진표를 확인하여 접종대상자를 예진하고 진찰소견, 서명 등을 기록한다.				
5) 예진 시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일정 안내 문자서비스 수신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를 확인한다.				
6)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및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설명한다. -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안내문(VIS :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을 제공한다.				



일반사항 및 접종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3. 접종실시		
1) 준비된 백신의 유효기간, 처방내용이 일치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2) 백신을 접종하기 전 손을 비누로 씻거나 소독제로 소독한다.		
3)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와 투여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4) 정확한 접종부위, 접종용량, 접종방법에 따라 접종한다.		
5) 주사 후 마른 솜이나 거즈로 주사부위를 뺀 부위를 가법게 수 초간 눌러준다.		
4. 접종 후 서비스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호자 신고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2) 다음 예방접종일을 안내하고, 20~30분 정도 접종의료기관에 머물도록 하여 관찰한다.		
5. 기록보존		
1) 예진표를 정해진 기간(5년) 동안 보존한다.		
2) 접종대상자의 인적정보를 확인하고 변경사항(휴대전화번호 등)은 수정한다.		
3) 예방접종기록은 가급적 당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전산보고)하고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접종기록을 작성하고 제출		
백신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7. 백신관리		
1) 백신관리 전담자 및 대체요임을 지정한다.		
2) 백신 구입 시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를 수령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한다.		
3) 백신보관만을 위한 전용 냉장고를 보유하고 있다. ※ 음식물, 검체 등을 함께 보관하면 안 됨		
4) 냉동고의 문이 따로 있는 냉장고를 사용한다.		
5) 백신보관 냉장고는 성애가 끼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6) 「백신전용 냉장고」 표시 및 「백신의 보관관리」 내용을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다.		
7) 냉장고 내부의 안쪽에 온도계를 부착하고 있다. ※ 온도계 고장 시 즉시 교체		
8) 백신보관 온도는 2~8℃ 유지한다.		
9) 1일 2회(일과 시작 전, 일과 마친 후) 이상 온도를 점검하고 기록한다.		
10) 주기적으로 백신 유효기간을 확인하며, 유효기간이 가까운 백신이 냉장고 내 앞쪽에 위치하도록 하고 있다.		
11)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은 관리방침에 따라 폐기처리 한다.		
상기 자율점검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위 점검자(대표자)		20 . . . (서명)

담당자 확인 (보건소 기재란)	종합의견 : 직급 : 성명 : (서명)
---------------------	--

※ 자율점검표 작성 내용이 거짓임이 확인 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음



<별첨 I-11> 백신별 예방접종 비용상환 내역(의료기관)

()월분 예방접종 비용상환 내역

의료기관 _____

접종명	총 등록건수	비용상환 신청건수	비용상환 심사결과				총 상환금액 (원)
			상환결정	예외인정	상환불가	미결정	
총 계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DTaP-IPV							
수두							
MMR							
일본뇌염(사백신)							
일본뇌염(생백신)							
Td							
Tdap							
Hib							
PCV10							
PCV13							
PPSV23							
A형간염							
HPV							
인플루엔자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예방접종관리' ▶ '자료실' ▶ '각종서식'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

〈별첨 I-12〉 예방접종별 안내문(VIS)

결핵(BCG)

결핵(BCG)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BCG 접종 대상과 접종시기

BCG 접종 대상과 접종시기는?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
- 권장 접종시기: 생후 4주 이내 1회 접종

이럴 땐 BCG 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선천성 면역결핍증, HIV 감염, 백혈병, 림프종 등 면역 결핍 상태에 있는 경우
- 스테로이드,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 등으로 면역 억제 상태에 있는 경우
- BCG 접종부위 화상, 피부감염이 있는 경우
- 미숙아나 입원이 필요한 심한 질환이 있는 경우 (퇴원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하는 것이 좋음)
 - ※ 경한 호흡기 감염, 설사 등과 같이 가벼운 질환은 금기 사항이 아닙니다.

예방접종 후 알아두어야 합니다

BCG 접종 후 관리 및 주의사항

- 속옷(가능한 면 종류)을 깨끗이 갈아 입고 접종부위를 깨끗이 해 줍니다.
- 물우리에 생긴 고름을 짜지 않습니다. 고름이 많으면 소독된 솜으로 깨끗이 닦아주고 통풍이 잘 되게만 해줍니다.
- 접종부위에 궤양이 생기더라도 약을 바르거나 반창고 등을 붙이지 않도록 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 예방접종 부위의 통증, 발적, 압통, 부종이나, 약간의 두통, 근육통, 발열, 오심과 같은 경미한 이상반응은 일반적으로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정상 면역반응으로 볼 수 있으나, 2~3일 지켜 보세요.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이 심해지거나 지속되는 경우 또는 다른 전신 이상반응이 생기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의 「이상반응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합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란?

- 정부는 1995년부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심의하여 진료비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결핵(BCG)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진료비 지원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피내접종을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접종받은 기관이나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 콜센터 ☎ 129 |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 |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예방접종 안내문

결핵이란?

- 결핵은 결핵균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주로 폐에 발생하지만, 인체의 모든 장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객담(가래)에서 결핵균이 발견되는 호흡기 결핵만 전염성을 갖고 있으며, 다른 장기의 결핵은 전염성이 거의 없습니다.
- 결핵균에 감염되면 대부분 증상이 없는 잠복결핵감염 상태로 지내다가, 이 중 약 5~10%에서 결핵이 발병합니다.
- 어린 나이에 결핵균에 감염될수록 결핵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으며, 파종성 결핵이나 결핵성 수막염은 치명률이 높습니다.

결핵균의 전파경로

- 주로 결핵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호흡기 분비물에 있는 결핵균이 전파되어 감염됩니다.

BCG 백신 종류

- BCG 접종은 접종방법에 따라 피내접종(주사형)과 경피접종(도장형)으로 구분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는 BCG 백신의 양을 정확하고 일정하게 주입할 수 있는 BCG 피내접종(주사형)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에는 피내접종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BCG 피내접종 후 정상 경과과정

접종 후 시간	소 건
접종 직후	접종 부위가 부풀어 올랐다가 10~15분 지나면 없어진다 ❶
1~2주	아무 소견도 보이지 않는다.
2~4주	접종 부위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 몽우리가 생긴 후 점점 커져 단단한 경결이 된다. ❷ 이후 경결이 부드러워지면서 농주머니가 만들어진다. 이 때 거드랑이나 목에 밑프진이 멍울로 만져질 수 있는데 화농성 림프절염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치료가 불필요하고 보통 수개월 내에 없어지나 1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4~6주	농주머니를 덮고 있는 피부를 툇고 고름이 나오기도 하며 께양을 형성한다.
6~9주	께양이 아물면서 딱지가 앉는다. 이 때 딱지를 누르면 고름이 나오며, 이후 점차 고름이 나오지 않게 된다. ❸
9~12주	딱지가 떨어지고 2~3 mm 크기의 반흔을 남기며 아문다.



예방접종
편의서비스
3종 세트

예방접종이 모든 것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nih.go.kr

소아청소년에 용이하는
예방접종 도우미 앱
예방접종도우미 앱에 통해 다운로드

올해 반드시 무료접종
온라인 예방접종 증명서
신청서 서비스를 통해 어디서나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

B형간염

B형간염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B형간염 예방접종 대상과 접종시기

B형간염 예방접종 대상과 접종시기는?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
- 권장 접종시기

	출생	1개월	6개월
B형간염	1차 (기초)	2차 (기초)	3차 (기초)

이럴 땐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백신 구성 성분이나 이전에 B형간염 예방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급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합니다.
※ 경한 호흡기 감염, 설사 등과 같이 가벼운 질환은 금기 사항이 아닙니다

예방접종 후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관찰합니다.
-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 접종부위는 청결히 합니다.
-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곧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 예방접종 부위의 통증, 발적, 압통, 부종이나, 약간의 두통, 근육통, 발열, 오심과 같은 경미한 이상반응은 일반적으로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정상 면역반응으로 볼 수 있으니, 2~3일 지켜 보세요.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이 심해지거나 지속되는 경우 또는 다른 전신 이상반응이 생기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관찰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의 「이상반응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합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란?

- 정부는 1995년부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심의하여 진료비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접종받은 기관이나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B형간염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이상반응

B형간염 예방접종의 안전성

- B형간염 백신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지만 매우 드물며, 임신이나 수유 및 면역 억제 상태에서도 접종을 할 수 있는 안전한 백신입니다.

B형간염 예방접종 후 발생가능한 이상반응은?

- 국소 이상반응
- 접종부위의 통증, 종창, 경결
- 전신 이상반응
- 발열, 권태, 구토, 관절통, 피부발진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 콜센터 ☎ 129 |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 |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예방접종 안내문

B형간염이란?

- B형간염은 B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급성 또는 만성으로 간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 신생아기에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바이러스를 평생 동안 몸에 지니고 있는 만성 B형간염 보유자가 됩니다.
- 소아 및 성인기에 B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주로 식욕부진, 피곤, 설사와 구토, 황달과 같은 급성간염의 증상이 나타났다가 회복되지만 5~10%에서는 만성 B형간염 보유자가 됩니다.
- 만성 B형간염 보유자의 4명 중 1명은 나이가 들면서 만성간염, 간경변, 간암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B형간염 바이러스의 전파경로

- 감염된 사람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파됩니다.
 - 오염된 혈액이나 체액에 의한 감염(예 : 수혈, 오염된 주사기 사용, 혈액 투석, 침습적 검사 등)
 - B형간염 산모로부터 신생아에게 주산기 감염
 -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와 성 접촉
- ※ B형간염은 일상적인 활동(대체기, 기침, 쉼터기, 음식 나눠먹기, 모유수유 등)으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B형간염 예방접종 후 항체검사의 필요성

- 건강한 소아나 성인의 경우 예방접종 후 항체가 생겼는지 알아보기 위한 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고위험군의 경우는 3회의 예방접종 완료 후 항체검사를 실시합니다.
 -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가족
 - 혈액제제를 자주 수혈 받아야 하는 환자
 -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
 - HIV 감염인 등 면역저하자
 - 의료기관 종사자(B형간염 환자나 바이러스가 오염된 체액에 노출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
 -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와의 성 접촉자
 -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

B형간염 추가접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B형간염 3차 예방접종 후 1~3개월에 항체가 최고로 나타나며,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항체가 감소하지만 기억면역이 유지되므로 건강한 소아나 성인의 경우 예방접종 후 일률적인 항체검사나 이에 따른 추가접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편의서비스 3종 세트

예방접종지원센터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nih.go.kr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예방접종도우미 앱
예방접종도우미 앱에 등록

올해 한번도 무료접종 온라인 예방접종 증명서
신청서 서비스를 통해 어디서나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DTaP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DTaP 예방접종 대상과 접종시기

DTaP 예방접종 대상과 접종시기는?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
- 권장 접종시기

	2개월	4개월	6개월	15개월	18개월	만4세	만6세
DTaP	1차 (기초)	2차 (기초)	3차 (기초)	4차 (추가)	5차 (추가)		

이럴 땐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이전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이전 접종 7일 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뇌증을 보인 경우

Ⓢ**잠깐!** 이런 경우는 의사에게 꼭 알려 주세요

- 이전 접종 후 48시간 이내에 40.5°C 이상의 높은 열이 난 경우
- 이전 접종 후 48시간 이내에 호흡곤란, 허탈 상태, 심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을 보인 경우
- 이전 접종 후 48시간 이내에 3시간 이상 심하게 보냈을 경우
- 이전 접종 후 48시간 이내에 경련성 발작을 보였을 경우

예방접종 후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관찰합니다.
-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 접종부위는 청결히 합니다.
-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곧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 예방접종 부위의 통증, 발적, 압통, 부종이나, 약간의 두통, 근육통, 발열, 오심과 같은 경미한 이상반응은 일반적으로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정상 면역반응으로 볼 수 있으나, 2~3일 지켜 보세요.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이 심해지거나 지속되는 경우 또는 다른 전신 이상반응이 생기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의 「이상반응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합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란?

- 정부는 1995년부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심의하여 진료비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접종받은 기관이나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DTaP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이상반응

DTaP 예방접종의 안전성

- DTaP 백신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매우 드물며, 백신접종에 대한 이상반응의 위험성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에 걸렸을 때의 경우보다 훨씬 낮습니다.

DTaP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 흔한 이상반응
 - 접종부의 통증, 부어오름, 발열, 보챔, 식욕부진 구토 등
- 드문 이상반응
 - 40.5°C 이상의 심한 고열, 3시간 이상 심하게 보챔, 발작성 경련, 심한 두드러기와 같은 이상 증상
 - 뇌염이나 중추신경계 이상반응, 호흡곤란, 심한 알레르기 및 쇼크 증상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 콜센터 ☎ 129 |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 |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예방접종 안내문

디프테리아란?

- 디프테리아균은 인두와 편도에 염증을 일으켜 호흡장애를 일으키며, 심한 경우에는 기도폐쇄, 심근염,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디프테리아의 전파경로

- 호흡기로 배출되는 균이나 피부병변 등에 접촉으로 감염됩니다.



(디프테리아에 감염된 환자의 인두부를 덮고 있는 막)

파상풍이란?

- 파상풍균은 신경 독성 물질을 분비하여 근육을 마비시키고, 연하곤란(입을 열거나 삼키기 어려움), 호흡마비, 전신마비 등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파상풍의 전파경로

- 파상풍균은 토양 등의 환경에 존재하며 오염된 상처를 통해 감염됩니다.



(파상풍에 감염된 환자)

백일해란?

- 백일해균은 호흡기 염증을 일으켜 심한 기침발작을 유발하며, 이러한 증상은 수 주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폐렴, 경련, 뇌손상 등의 합병증을 일으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백일해의 전파경로

- 기침이나 재채기 등에 의한 호흡기 전파가 주된 경로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됩니다.



(백일해 환자의 특징적인 기침(whooping cough)으로 호흡곤란을 보이는 모습)

DTap-IPV(콤보백신)

-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 콤보백신 접종 시 접종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콤보백신은 3회의 기초접종(2, 4, 6개월)과 만 4~6세 추가접종 시에 접종 가능합니다.
 - ※ DTap 단독 또는 DTap-IPV(콤보백신)로 3회의 기초접종 시에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방접종
편의서비스
3종 세트

예방접종 지원 포털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nih.go.kr

소아병원에 문의하는
예방접종 도우미 앱
예방접종도우미 앱에 통해 다운로드

출석 전 반드시 무료영양
온라인 예방접종 증명서
신청서 서비스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

폴리오(소아마비)

폴리오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폴리오 예방접종 대상과 접종시기

폴리오 예방접종 대상과 접종시기는?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
- 권장 접종시기 :

	2개월	4개월	6개월	만4세 만6세
폴리오	1차 (기초)	2차 (기초)	3차 (기초)	4차 (추가)

이럴 땐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이전에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경우
- 임신부(단, 폴리오 노출 위험이 있을 때는 접종 가능)

예방접종 후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관찰합니다.
-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 접종부위는 청결히 합니다.
-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곧 의사의 진료를 받으도록 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 예방접종 부위의 통증, 발적, 임통, 부종이나, 약간의 두통, 근육통, 발열, 오심과 같은 경미한 이상반응은 일반적으로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정상 면역반응으로 볼 수 있으니, 2-3일 지켜 보세요.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이 심해지거나 지속되는 경우 또는 다른 전신 이상반응이 생기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의 「이상반응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합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란?

- 정부는 1995년부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심의하여 진료비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접종받은 기관이나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폴리오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이상반응

폴리오 예방접종의 안전성

- 주사용 불활성화 폴리오 백신은 현재까지 보고된 심각한 이상반응이 거의 없으며, 다른 주사용 백신과 마찬가지로 접종 부위의 통증과 부종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경미합니다.

폴리오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 국소 이상반응
 - 임통, 접종부위의 발적, 경결(단단하게 굳음) 등
- 전신 이상반응
 - 스트렙토마이신, 네오마이신에 의한 과민반응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 콜센터 ☎ 129 |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 |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예방접종 안내문

폴리오란?

- 소아마비로 알려진 마비성 회색질 척수염(마비성 폴리오 또는 폴리오)은 폴리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 대부분 불현성 감염으로 나타나지만, 팔이나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마비성 회색질 척수염이 발생하면 마비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거나 사망하기도 합니다.



〈 폴리오(소아마비)로 위축된 다리 〉

폴리오의 전파경로

- 사람에서 사람으로의 직접감염, 특히 분변-경구로 감염됩니다.

폴리오 발생현황과 예방

-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부터 폴리오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아직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차드에서 폴리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파키스탄 인근의 중국에서도 폴리오가 발생하였듯이 국외에서 폴리오가 유입될 경우, 예방접종으로 면역이 형성되어 있어야 폴리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문의서비스
3종 세트



국민행복 포털 중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nih.go.kr>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예방접종 도우미 앱
예방접종도우미 앱에 홈 다운로드



올해 하반기 무료발급
온라인 예방접종 증명서
신청서 사자도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MMR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MMR 예방접종 대상과 접종시기

MMR 예방접종 대상과 접종시기는?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
- 권장 접종시기

	12개월	15개월	만 4세	만 6세
MMR	1차 (기초)		2차 (추가)	

이럴 땐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이전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MMR 백신에 포함된 성분(예 : 젤라틴, 네오마이신 등)에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의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경우
- 임신, 면역기능 이상, 또는 중등도 이상의 급성 질환
- 면역글로불린, 수혈 등 항체 함유 혈액제제 투여 후 일정기간 이내

예방접종 후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관찰합니다.
-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 접종부위는 청결히 합니다.
-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곧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 예방접종 부위의 통증, 발적, 압통, 부종이나, 약간의 두통, 근육통, 발열, 오심과 같은 경미한 이상반응은 일반적으로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정상 면역반응으로 볼 수 있으니, 2~3일 지켜 보세요.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이 심해지거나 지속되는 경우 또는 다른 전신 이상반응이 생기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의 「이상반응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합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란?

- 정부는 1995년부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심의하여 진료비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접종받은 기관이나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MMR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이상반응

MMR 예방접종의 안전성

- MMR 백신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매우 드뭅니다.

MMR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 흔한 이상반응
 - 발열, 발진, 이하선염 등
- 드문 이상반응
 - 고열과 이로 인한 열성경련, 일시적인 관절통, 일시적인 혈소판 감소증 등
 - 뇌염이나 중추신경계 이상반응, 호흡곤란, 심한 알레르기 및 쇼크 증상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 콜센터 ☎ 129 |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 |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예방접종 안내문

홍역이란?

- 처음엔 감기처럼 콧물, 기침 같은 증상과 결막염 등이 나타나다가 고열과 함께 온몸에 발진이 나타나는 감염성이 높은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 중이염이나 폐렴같은 합병증이 흔히 발생하고 홍역 환자 1,000명 중 1~2명은 뇌염처럼 심각한 후유증을 앓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홍역의 전파경로

- 호흡기 분비물 등의 비말 또는 이에 오염된 물건을 통하여 호흡기로 감염됩니다.



〈홍역 발진이 나타난 모습〉

유행성이하선염이란?

- '볼거리'라고도 하며, 귀 아래의 침샘이 부어오르고 열과 두통이 동반되는 감염성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 합병증으로 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고 간혹 뇌염, 청력장애, 고환염, 난소염, 췌장염 등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매우 드물지만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행성이하선염의 전파경로

- 비말감염, 타액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됩니다.



〈유행성이하선염 증상〉

풍진이란?

- 미열과 피부 발진 유행성홍역이 특징적인 감염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합병증으로는 관절염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여성이 임신 중에 풍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유산을 하거나 아기가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풍진의 전파경로

- 비말감염 또는 태아의 경우 태반을 통하여 모체로부터 감염됩니다.



〈신생성 풍진증후군〉

예방접종
편의서비스
3종 세트

예방접종 지원 포털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예방접종 도우미 앱
'예방접종도우미' 검색 후 다운로드

올해 첫번들로 무료접종
은혜인 **예방접종 증명서**
인원*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

수 두

수두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수두 예방접종 대상과 접종시기

수두 예방접종 대상과 접종시기?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
- 권장 접종시기 :
생후 12~15개월에 1회 접종

이럴 땐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수두백신에 포함된 성분(예: 젤라틴, 네오마이신 등)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경우
- 임신, 면역기능 이상, 또는 중등도 이상의 급성 질환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 면역글로불린, 수혈 등 항체 함유 혈액제제 투여 후 일정기간 이내

수두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이상반응

수두 예방접종의 안전성

- 수두 백신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매우 드물며, 안전한 백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두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 국소 이상반응
- 발적, 접종부위의 통증이나 부어오름, 주사부위의 염종 등
- 전신 이상반응
- 발열, 대상포진, 수포성 발진

예방접종 후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관찰합니다.
-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 접종부위는 청결히 합니다.
-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곧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 예방접종 부위의 통증, 발적, 압통, 부종이나, 약간의 두통, 근육통, 발열, 오심과 같은 경미한 이상반응은 일반적으로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정상 면역반응으로 볼 수 있으나, 2~3일 지켜 보세요.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이 심해지거나 지속되는 경우 또는 다른 전신 이상반응이 생기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의 「이상반응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합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란?

- 정부는 1995년부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심의하여 진료비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접종받은 기관이나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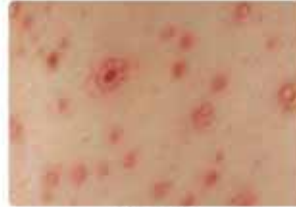
보건복지 콜센터 ☎ 129 |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 |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예방접종 안내문

수두란?

- 수두는 소아기에 흔한 발진성 질환 중의 하나로, 수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수포성 발진이 머리, 얼굴, 몸통 및 사지에 퍼지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간혹 발열과 피로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 수두를 앓은 후 통증을 동반하는 대상포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두 발진)

수두의 전파경로

- 수두 바이러스는 호흡기 분비물 등의 비말을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거나 피부 병변 수포액에 직접 접촉함으로써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수두에 걸리면 ~

- 수두로 진단받았다면 같은 집단생활을 하는 다른 소아에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부 병변이 가피로 덮일 때까지 격리되어야 하므로 학교, 유치원, 학원 등에 등교를 중지해야 합니다.

<p>예방접종 편의서비스 3종 서비스</p>	<p>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p>	<p>예방접종도우미 앱 '예방접종도우미' 검색 후 다운로드</p>	<p>온라인 예방접종 증명서 신청서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p>
------------------------------	---	--	---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

일본뇌염

일본뇌염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상과 접종시기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상과 접종시기?

-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
- ▶ 권장 접종시기

백신구분	12개월	24개월	36개월	만6세	만12세
불활성화 백신	1차~2차 (기초)		3차 (기초)	4차 (추가)	5차 (추가)
약독화 생백신	1차~2차 (기초)		-	-	-

이럴 땐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불활성화 백신〉

- ▶ 이전에 불활성화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경우
- ▶ 백신 성분 및 첨가제에 과민 반응이 있었던 경우
- ※ 쥐 뇌조직 유래 백신에는 티메로살, 젤라틴, myelin basic protein이 추가로 함유

〈약독화 생백신〉

- ▶ 이전에 약독화 생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경우
- ▶ 백신 성분 및 첨가제에 과민 반응이 있었던 경우
- ▶ 임신, 면역기능 이상, 또는 중등도 이상의 급성 질환
- ▶ 면역글로불린 수혈 등 항체 함유 혈액제제 투여 후 일정기간 이내

▶▶ 예방접종 후 알아두어야 합니다.

▶▶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 ▶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증상을 관찰합니다.
- ▶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증상을 관찰합니다.
- ▶ 접종부위를 청결히 합니다.
- ▶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곧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 ▶ 예방접종 부위의 통증, 발적, 부종이나, 약간의 두통, 근육통, 발열, 오심과 같은 경미한 이상반응은 일반적으로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정상 면역반응으로 볼 수 있으므로 2~3일간 지켜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이 심해지거나 지속되는 경우, 또는 다른 전신 이상반응이 생기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또한 관찰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의 '이상반응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합니다.

▶▶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란?

- ▶ 정부에서는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심의하여 진료비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문의하시거나,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안내문

일본뇌염이란?

- ▶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의해 매개되는 감염질환입니다.
- ▶ 감염자 약 250명 중 1명에서 임상증상을 나타내며,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이나 바이러스성 수막염으로 이행되기도 하고 드물게 뇌염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뇌염의 경우 성격 변화와 신경증상이 나타난 후 오한과 두통이 심해지면서 고열과 함께 경련 및 의식소실, 혼수상태로 진행되는 것이 전형적인 임상양상으로 약 30%의 치명률을 보입니다.
- ▶ 뇌염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회복되어도 1/3의 환자들에서 침범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남깁니다.

일본뇌염의 전파경로

- ▶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리면 감염이 됩니다.

모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

- ▶ 가정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합니다.
- ▶ 모기 활동 기간 중 야간에는 야외 활동을 가능한 자제하며,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긴 팔, 긴 바지 착용 등).
- ▶ 주변에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물웅덩이나 빗물이 고인 곳 등은 소독을 실시합니다.

일본뇌염 백신의 종류

- ▶ 불활성화 백신 : 병원체를 배양한 후 열이나 화학약품으로 불활성화 시킨 백신
- ▶ 약독화 생백신 : 일본뇌염 생바이러스를 약독화시켜 생산된 백신

종류	제출명	비고	
불활성화 백신	취 뇌조직 유래*	녹십자-일본뇌염백신주 보령일본뇌염백신주	취 뇌조직 유래 불활성화 백신과 베토세포 유래 불활성화 백신 간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음
	베토세포 유래*	녹십자-세포 배양일본뇌염백신주 보령세포 배양일본뇌염백신주	
약독화 생백신	헬스터 신장세포 유래*	씨디제막스	-
	키메릭 베토세포 유래	이오셉	-

*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백신임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간, 불활성화 백신과 약독화 생백신 간의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편의서비스
3종 세트



백신접종도움권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nip.go.kr



스마트기기 문자메시지
예방접종 도우미 앱
'예방접종도우미' 검색 후 다운로드



문득 환원으로 무료발급
온라인 예방접종 증명서
인원대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or Td)

Tdap 와 Td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Tdap/Td 예방접종 대상과 접종시기

Tdap/Td 예방접종 대상과 접종시기?

- 접종대상 : 모든 소아
- 권장 접종시기 :
만 11~12세에 Tdap 또는 Td 백신으로 1회 접종
※ DTaP 기초 접종력이 불완전한 만 7~10세의 경우
Tdap 백신으로 1회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럴 땐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이전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이전 접종 7일 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뇌증을 보인 경우

Tdap/Td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이상반응

Tdap/Td 예방접종의 안전성

- Tdap 또는 Td 백신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매우 드뭅니다.

Tdap/Td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 국소 이상반응
- 접종부위 통증, 부어오름, 발적 등
- 전신 이상반응
- 발열, 림프절염, 두통, 전신 두드러기, 신경학적 합병증 등

예방접종 후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관찰합니다.
-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 접종부위는 청결히 합니다.
-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곧 의사의 진료를 받으록 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 예방접종 부위의 통증, 발적, 압통, 부종이나, 약간의 두통, 근육통, 발열, 오심과 같은 경미한 이상반응은 일반적으로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정상 면역반응으로 볼 수 있으니, 2~3일 지켜 보세요.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이 심해지거나 지속되는 경우 또는 다른 전신 이상반응이 생기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의 「이상반응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합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란?

- 정부는 1995년부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심의하여 진료비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접종받은 기관이나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 콜센터 ☎ 129 |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 |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예방접종 안내문

디프테리아란?

- 디프테리아균은 인두와 편도에 염증을 일으켜 호흡장애를 일으키며, 심한 경우에는 기도폐쇄, 심근염,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디프테리아에 감염된 환자의 인두부를 덮고 있는 막)

디프테리아의 전파경로

- 호흡기로 배출되는 균이나 피부병변 등에 접촉으로 감염됩니다.

파상풍이란?

- 파상풍균은 신경 독성 물질을 분비하여 근육을 마비시키고, 연하근관(입을 열거나 삼키기 어려움), 호흡마비, 전신마비 등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파상풍에 감염된 환자)

파상풍의 전파경로

- 파상풍균은 토양 등의 환경에 존재하며 오염된 상처를 통해 감염됩니다

백일해란?

- 백일해균은 호흡기 염증을 일으켜 심한 기침발작을 유발하며, 이러한 증상은 수 주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폐렴, 경련, 뇌손상 등의 합병증을 일으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백일해 환자의 특징적인 기침(whooping cough)으로 호흡관만을 보이는 모습)

백일해의 전파경로

- 기침이나 재채기 등에 의한 호흡기 전파가 주된 경로로 사람에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됩니다.

Tdap 또는 Td 예방접종이 필요한 이유는?

- 영유아시기에 DTap 백신을 접종하지만 5회의 접종효과가 10년 정도 밖에 지속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접종이 필요합니다.
- Tdap 백신은 기존 Td(파상풍/디프테리아 예방) 백신에 백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항원이 추가로 포함된 백신으로 추가접종 시 1회만 접종합니다. 이후 추가접종 시에는 Td 백신으로 접종합니다.

예방접종
편의서비스
3종 세트

예방접종 지원 포털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nih.go.kr

스마트폰에 용이하는
예방접종 도우미 앱
'예방접종도우미' 검색 후 다운로드

출석 전 반드시 무료접종
관리인 **예방접종 증명서**
신청서 서비스를 통해 인쇄 받으십시오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Hib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Hib 예방접종 대상과 접종시기

Hib 예방접종 대상과 접종시기는?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
- 권장 접종시기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15개월
Hib	1차 (기초)	2차 (기초)	3차 (기초)	4차 (추가)	

* 일반적으로 만5세 이상 소아청소년에게는 접종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럴 땐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Hib 백신 성분 또는 이전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경우
- 생후 6주 미만 영아

Hib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이상반응

Hib 예방접종의 안전성

- Hib 백신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매우 드물며, 안전한 백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ib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 국소 이상반응
- 주사부위 종창, 발적, 통증 등
- 전신 이상반응
- 발열, 보챔 등

예방접종 후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관찰합니다.
-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 접종부위는 청결히 합니다.
-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곧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 예방접종 부위의 통증, 발적, 압통, 부종이나, 약간의 두통, 근육통, 발열, 오심과 같은 경미한 이상반응은 일반적으로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정상 면역반응으로 볼 수 있으나, 2~3일 지켜 보세요.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이 심해지거나 지속되는 경우 또는 다른 전신 이상반응이 생기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의 「이상반응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합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란?

- 정부는 1995년부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심의하여 진료비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Hib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은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된 시기 이후에 접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접종받은 기관이나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 콜센터 ☎ 129 |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 |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예방접종 안내문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란?

-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인플루엔자균, *Haemophilus influenzae*)는 과거에 인플루엔자의 원인균으로 오인된 때가 있어서 이름에 인플루엔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 인플루엔자균에는 피막을 가진 균과 피막을 가지지 않는 균으로 나눌 수 있으며, 피막을 가진 균은 피막의 항원성에 따라 a부터 f까지 6가지의 혈청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린 소아에서 인플루엔자균에 의해 발생하는 침습 질환의 95%는 b형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 b형의 영어 이름 *Haemophilus influenzae* type b에서 첫 자를 따서 흔히 Hib 라고 부릅니다.
-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는 뇌수막염, 후두개염, 폐렴, 관절염, 봉와직염 등 침습성 감염 질환의 원인이 되며, 5세 미만 소아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 ※ 일반적으로 만5세 이상 소아청소년에게는 접종이 권장되지 않지만 침습성 Hib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이 필요하므로 의사와 상담 후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 침습 Hib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경우: 겸상적혈구증(sickle cell disease), 비장 절제 등에 의한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asplenia), 면역결핍질환(특히, IgG2 아형 결핍증), 보체결손증, 항암치료에 따른 면역저하, HIV 감염, 최근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등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의 전파경로

- 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분비되는 호흡기 비말에 의해서 감염됩니다

예방접종
편의서비스
3종 세트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nih.go.kr



스마트폰에 관하여는
예방접종 도우미 앱
'예방접종도우미' 앱에 주시 바랍니다.



광학 판독으로 무위험성
온라인 예방접종 증명서
신청서 사인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

페렴구균

페렴구균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 페렴구균 예방접종 대상과 접종시기

페렴구균 예방접종 대상과 접종시기는?

- ▶ 단백결합 백신(PCV)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
 - 권장 접종시기

백신구분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15개월
PCV10	1차(기초)	2차(기초)	3차(기초)	4차(추가)	
PCV13	1차(기초)	2차(기초)	3차(기초)	4차(추가)	

- ※ PCV10과 PCV13 백신간의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 일반적으로 건강한 만 5세(60개월) 이상 소아청소년에게는 접종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 ▶ 다당질 백신(PPSV)
 - 페렴구균 감염 위험이 높은 2세 이상 소아~64세
 - 65세 이상 성인

이렇 썬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 백신 성분 또는 이전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경우
- ※ 중등도 이상의 심한 급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을 연기하나 가벼운 상기도 감염 등 가벼운 질환은 접종 금기가 아닙니다.
- ▶ PPSV는 임신부와 태아에게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지만, 페렴구균 감염 위험이 높은 여성의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임신 전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합니다.

▶▶▶ 예방접종 후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 ▶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증상을 관찰합니다.
- ▶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감계 증상을 관찰합니다.
- ▶ 접종부위를 청결히 합니다.
- ▶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곧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 ▶ 예방접종 부위의 통증, 발적, 부종이나, 약간의 두통, 근육통, 발열, 오심과 같은 경미한 이상반응은 일반적으로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정상 면역반응으로 볼 수 있으므로 2~3일 지켜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이 심해지거나 지속되는 경우, 또는 다른 전신 이상반응이 생기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또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의 「이상반응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합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란?

- ▶ 정부에서는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심의하여 진료비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페렴구균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은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 후 접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접종받은 기관이나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페렴구균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이상반응

페렴구균 예방접종의 안전성

- ▶ 페렴구균 백신은 안전한 백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매우 드뭅니다.

페렴구균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 ▶ 국소 이상반응: 주사부위 통증, 발적, 통증 등
- ▶ 전신 이상반응: 발열, 근육통 등



예방접종 안내문

폐렴구균이란?

- ▶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 Pneumococcus)은 급성 중이염, 폐렴 및 균혈증, 수막염 등 침습성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의 하나이며, 현재까지 약 90여 가지 혈청형이 밝혀졌습니다.
- ▶ 모든 혈청형이 질환을 일으킬 수 있지만 약 10여 가지의 혈청형이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의 약 60%를 차지하고, 국가별, 연령 등에 따라 흔한 혈청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영아 및 어린 소아와 65세 이상의 고령자에서 발생 빈도가 높으며 예방접종은 이러한 감염증의 발생을 줄여줍니다.

폐렴구균의 전파경로

- ▶ 주로 호흡기 비말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됩니다.

폐렴구균 백신 종류 및 예방효과

▶ 단백결합 백신(PCV)

- PCV10과 PCV13이 있으며, 두 가지 백신 모두 백신에 포함된 혈청형으로 인하여 생기는 균혈증, 수막염 등의 침습성 질환과 급성 중이염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백신구분	백신 포함 혈청형
PCV10	• 10가지(4, 6B, 9V, 14, 18C, 19F, 23F, 1, 5, 7F)
PCV13	• 13가지(4, 6B, 9V, 14, 18C, 19F, 23F, 1, 5, 7F, 3, 6A, 19A)

- PCV10과 PCV13 백신간의 교차접종은 권고하지 않으므로 2세 미만의 영·유아의 기초 및 추가접종 시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하도록 합니다.
- 폐렴구균 감염 위험이 높은* 2개월 이상 영아의 경우 단백결합 백신(PCV)을 우선 접종하고, 2세가 되면 이전 접종으로부터 최소 8주 이상 경과 후 다당질 백신(PPSV)으로 추가 접종이 필요하므로 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 접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건강한 만 5세 이상 소아청소년에게는 단백결합 백신(PCV) 접종이 권장되지 않지만 폐렴구균 감염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접종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 접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폐렴구균 감염 위험이 높은 경우
 - (정상면역) 만성 심장질환, 만성 폐 질환, 당뇨병, 뇌척수액 누출, 인공외우 이식 상태
 - (기능적 혹은 해부학적 무비중) 겸상구 빈혈 혹은 헤모글로빈증, 무비중 혹은 비장 기능장애
 - (면역저하) HIV 감염증, 만성 신부전, 신중추근, 면역억제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질환(악성 종양, 백혈병, 림프종, 호지킨병) 혹은 고령 장기 이식,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 다당질 백신(PPSV)

- 백신에 포함된 23가지 혈청형으로 인하여 생기는 균혈증, 수막염 등의 침습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백신구분	백신 포함 혈청형
PPSV23	• 23가지(4, 6B, 9V, 14, 18C, 19F, 23F, 1, 5, 7F, 3, 19A, 2, 8, 9N, 10A, 11A, 12F, 15B, 17F, 20, 22F, 33F)

- PPSV23은 65세 이상 상인과 폐렴구균 감염 위험이 높은 2~64세 연령에서 접종이 권장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kci.go.kr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예방접종 도우미 앱
'예방접종도우미' 검색 후 다운로드



플릭 한 번으로 무료발급
온라인 예방접종 증명서
'예방' 사이트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

A형간염

A형간염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 A형간염 예방접종 대상과 접종시기

A형간염 예방접종 대상과 접종시기는?

-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
- ▶ 권장 접종시기

백신구분	12개월	23개월	35개월
A형간염	1차~2차 (6~12개월 간격)*		

* 일부 백신의 경우 6~18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합니다.

이럴 땐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 이전에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경우
- ▶ 백신 성분 및 첨가제에 과민 반응이 있었던 경우

▶▶ A형간염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이상반응

A형간염 예방접종의 안전성

- ▶ A형간염 백신은 안전한 백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심한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지만 매우 드물다. 예방접종에 의한 이상반응은 A형간염에 이환되어 발생하는 합병증과 비교할 때 훨씬 덜 위험합니다.

A형간염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 ▶ 국소 이상반응: 접종부위의 발적, 부종, 통증 등
- ▶ 전신 이상반응: 권태감, 피로, 미열, 구토, 설사 등

▶▶ 예방접종 후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 ▶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증상을 관찰합니다.
- ▶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증상을 관찰합니다.
- ▶ 접종부위를 청결히 합니다.
- ▶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곧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 ▶ 예방접종 부위의 통증, 발적, 부종이나, 약간의 두통, 근육통, 발열, 오심과 같은 경미한 이상반응은 일반적으로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정상 면역반응으로 볼 수 있으므로 2~3일간 지켜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이 심해지거나 지속되는 경우, 또는 다른 전신 이상반응이 생기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또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odc.go.kr>)의 '이상반응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합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란?

- ▶ 정부에서는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심의하여 진료비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접종받은 기관이나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odc.go.kr>)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 콜센터 ☎ 129 | 질병관리본부 <http://www.odc.go.kr> |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odc.go.kr>



예방접종 안내문

A형간염이란?

- ▶ A형간염은 A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야기되는 간 질환입니다.
- ▶ A형간염에 감염되었을 경우 고열, 권태감, 식욕부진, 메스꺼움, 복통,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2개월 미만으로 지속되지만 6개월간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도 있으며, 드물게 전격성 간부전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 증상의 발현은 연령과 관련이 있어 6세 미만의 소아에서는 약 70%에서 증상이 없고, 증상이 있더라도 황달이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6세 이상 소아나 성인에서는 대부분 감염의 증상이 생기며, 이 중 70%에서 황달이 동반됩니다.

A형간염 바이러스의 전파경로

- ▶ A형간염 바이러스는 A형간염 환자의 대변으로 배설되며 환자의 접촉, 환자의 대변으로 오염된 식수나 음식을 통해서도 감염됩니다.

A형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없는 고위험군 성인도 예방접종이 필요해요!

고위험군
• 20~30대 성인 중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A형간염을 앓은 적이 없는 경우
• A형간염 환자 발생이 높은 국가(지역)로 여행하는 경우 ※ 국가별 A형간염 발생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http://travelinfo.cdc.go.kr) 참고
• A형간염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
• A형간염 바이러스를 다루는 실험실 종사자
• 군인, 의료인, 외식업 종사자
• 혈액공급 질환자
• 만성 간질환자
• 약물 중독자
• 남성 동성애자

예방접종 전후 항체검사는 필요하지 않아요!

- ▶ A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경우는 평생 면역을 획득하므로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 따라서 예방접종 전 항체검사 실시여부는 연령별 면역도, 검사 비용, 백신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국내의 경우 30세 미만 연령은 항체검사 없이 예방접종할 것을 권장하며, 30세 이상 연령층은 A형간염에 대한 항체검사 실시 후 항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백신의 항체 생성률이 거의 100%에 달하므로 예방접종 후 항체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안내문

예방접종으로 자궁경부암을 예방하세요

2017년 11월부터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의료기관선국 256개 보건소 포함을 통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만 12세 아예(00~04년생)를 대상으로 무료로 접종합니다.

* 참여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Human papillomavirus, HPV)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로, 성생활을 시작한 여성 4명 중 2~3명은 평생 적어도 한 번 이상 HPV에 감염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증상 없이 자연적으로 사라지지만, 암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유전형 HPV 16, 18 등에 지속적으로 감염될 경우 수년에서 수십 년 후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된 두 가지 백신은 백신에 포함된 유형에 의해 발생하는 70%의 자궁경부암을 효과적으로 예방 합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만 12세에 권장되며, 권장 접종간격을 유지하여 2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으로 사용되고 있는 백신은 지금까지 전세계 66개국에서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하여 약 2억 건 이상 접종되었으며,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입니다.



권장 접종시기 및 대상

해당 연도에 만 12세이거나 만 12세에 달하게 되는 여아



권장 접종횟수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만 14~15세(백신별로 200) 이상에서 1회 접종 시 3회 접종 필요



접종대상 백신

가디실, 서바릭스
예방접종 시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예방접종 주의사항

- 예방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으록 합니다.
- 접종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 예방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에서 백신 접종 후 통증으로 일시적으로 실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다른 예방접종 후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발생 시 눕어지면서 다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 후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앉아 있거나 누워있도록 합니다.

이럴 땐 접종하면 안됩니다.

- 백신 성분 또는 이전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경우
* 급성 알성질환에 걸린 경우에는 회복될 때까지 접종을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 때문에 접종을 연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 국소 반응: 접종부위 통증, 부어오름, 발적, 두드러기 등
- 전신 반응: 발열, 메스꺼움, 근육통 등
* 예방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매우 드뭅니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신고해 주세요.

- 예방접종 후 생기는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가볍고 수일 내에 회복됩니다. 다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다른 전신 이상반응이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 도우미사이트 (<http://nip.cdc.go.kr>)를 통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해 주세요.
- 국가에서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 시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심의하여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비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우리 아이 첫 예방접종, 이것만은 알아 두세요!

생후 6개월까지 필요한 예방접종으로 8가지 감염병(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감염증,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 꼭 받아야 하나요?

- ▶ 아이가 태어나면서 어머니로부터 받은 감염병에 대한 면역항체는 출생 후 3~12개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 시기에 감염병에 노출이 되면 치명적이고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아이에게 병원균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면역항체를 길러 주어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예방접종은 감염병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우리 아이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예방접종을 꼭 받도록 합니다.



▶▶ 백신의 역할?

- ▶ 감염병에 걸리면 우리 몸에서 해당 병원균에 대한 면역반응이 일어나 항체를 만들지만 감염병에 걸리는 것은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 ▶ 백신은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 또는 바이러스의 독성을 약화시키거나 사멸시켜 만들어지며,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감염병에 노출된 것과 마찬가지로의 면역항체가 생기게 됩니다.

▶▶ 생후 6개월까지 예방접종으로 8가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감염병 종류	일상 증상
결핵	전신 무력감, 체중감소, 미열, 밤에 땀이 나는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폐결핵의 경우 지속적인 기침, 가래에 피가 섞임, 가슴통증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영아의 경우 가래가 없는 기침, 호흡곤란 및 미열 등이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B형간염	일반적으로 자각증상이 없이 진행되며 피로, 설사, 구토, 황달(눈 흰자위, 피부가 노랗게 변함), 근육통, 관절통, 위상복부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B형간염은 간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디프테리아	푸르스름한 흰색 빛의 막이 편도에 생기기 시작하여 입천장 뒤쪽부위(연구개)까지 뒤덮게 되며, 호흡곤란 및 심부전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파상풍	근육경련으로 통증을 동반하며 일반적으로 전신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턱이 경직되어 입을 벌리거나 삼킬 수 없습니다.
백일해	격렬한 기침으로 음식을 먹고, 마시거나 숨쉬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수 주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폐렴, 경련, 뇌 손상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폴리오	대부분 무증상 감염을 보이지만 극히 일부에서 마비성 척수염을 일으켜 사지의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감염증	경증인 경우에는 임상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수막염(뇌와 척수를 덮고 있는 막의 감염), 폐렴, 균혈증, 관절염, 골수염, 심낭염, 뇌 손상, 청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폐렴구균 감염증	발열, 오한, 기침, 가슴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수막염(뇌와 척수를 덮고 있는 막의 감염), 폐렴, 균혈증, 중이염, 청력장애,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아기들은 감염병에 어떻게 걸리나요?

- ▶ 일반적으로 감염병 환자와 접촉을 통해 감염됩니다. 그 밖에 신모가 B형간염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출산 시 아기에게 감염시킬 수 있고, 파상풍은 상처를 통해 감염될 수 있지만 사람간의 전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 콜센터 ☎ 129 |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 |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

예방접종 안내문

▶▶ 생후 6개월까지 필요한 예방접종

백신	접종횟수	접종 시기	기타 정보
BCG	1	생후 1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종방법에 따라 피내접종(주사형)과 경피접종(도장형)이 있습니다. 피내접종 : 주사액을 피부 피내층에 접종 경피접종 : 피부에 주사액을 바른 후 9개 바늘을 가진 주사 도구를 이용하여 두 번에 걸쳐 강하게 눌러 접종
B형간염	3	생후 0, 1, 6개월	-
DTaP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5	생후 2, 4, 6개월, 15~18개월, 만 4~6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어도 기초접종 3회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하도록 합니다. DTaP-IPV 콤보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폴리오	4	생후 2, 4, 6개월, 만 4~6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DTaP-IPV 콤보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Hib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4	생후 2, 4, 6개월, 12~15개월	-
PCV(폐렴구균)	4	생후 2, 4, 6개월, 12~15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차 접종까지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하도록 합니다.

▶ DTaP와 폴리오 백신 접종 시 DTaP-IPV 콤보백신을 사용하면 접종횟수를 1/2(8회→4회)로 줄일 수 있습니다. (콤보백신 접종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 예방접종 주의사항

- ▶ 대부분의 경우 백신을 안전하게 접종받을 수 있지만 매우 드물게 예방접종 후 심각한 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백신을 접종하여서는 안 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전에 의사에게 꼭 이야기합니다.
 - 효모에 과민 반응을 보인 경우에는 B형간염 접종 전에 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 항생제(네오마이신, 스트렙토마이신, 폴리마이신 B)에 과민 반응을 보인 경우에는 폴리오 접종 전에 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신 성분에 과민반응 보인 경우에는 Hib, PCV 접종 전에 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 이전에 DTaP 접종 후 아래와 같은 증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 접종 후 7일 이내에 나타난 뇌·신경계 질환, 3시간 이상 심하게 울고, 보챌 경우, 경련 또는 화약, 40.5℃ 이상 열이 난 경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검정을 거친 안전한 백신입니다. 하지만 다른 의약품처럼 개인의 체질 등에 따라 불가피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대부분 접종부위가 단단해지거나,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열이 나는 등 경한 증상이며, 이러한 증상은 예방접종 후 1~2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 BCG: 림프절염 등 국소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심각한 이상반응은 드뭅니다.
 - B형간염/폴리오/Hib: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드뭅니다.
 - DTaP: 보편 식욕저하, 1~7일 동안 전체 말 부종(4차 또는 5차 접종 시 발생), 경련, 3시간 이상 지속되는 울음, 40.5℃ 이상의 고열 등이 드물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폐렴구균: 일부 연구에서 보채거나 늘어짐 또는 식욕저하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 심각한 이상반응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 ▶ 예방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고열 또는 평소와 다른 행동변화와 같은 특이사항이 있는지 관찰합니다.
 -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두드러기, 얼굴과 목이 붓고, 잦은 맥박,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은 접종 후 수분 내에 나타납니다.
- ▶ 만약 심각한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의 '이상반응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합니다.

▶▶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 ▶ 정부에서는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심의하여 진료비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



〈별첨자료〉

II.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1] IR 의료기관 등록 및 사용자 승인 요청(의료기관) 91

[2]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100



1 IR 의료기관 등록 및 사용자 승인 요청(의료기관)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사용을 위해 사이트 접속 후 '사용자 가입' 및 '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문의: ☎1644-1407(정보화 T/F HelpDesk)

※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로그인 후 관할 보건소로 예방접종관리 업무에 대한 사용자권한을 신청해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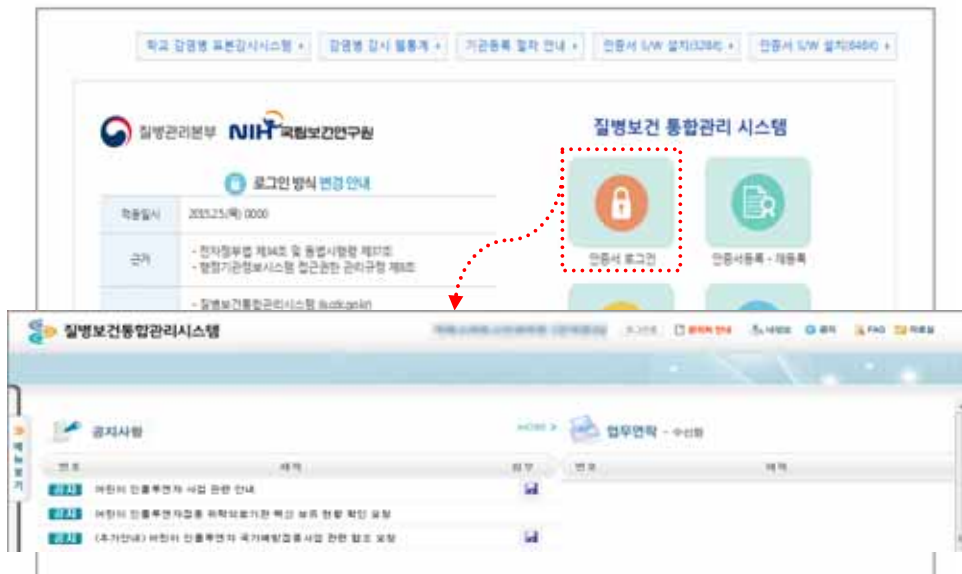
<그림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속 및 사용자가입>

② 사용자 가입 후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그림 2.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인증서등록〉

③ 등록한 인증서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림 3.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2. 예방접종관리업무 권한 신청

2.1 IR 의료기관 사용자 권한 신청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예방접종관리업무 사용자 권한’ 신청 절차

메뉴보기 → 권한/부가정보관리 → 예방접종업무 권한 상태 조회 → 승인기관(관할 보건소) 선택 →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 → 권한승인 후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메뉴 클릭 → 의료기관 부가정보 입력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 가능

※ 의료기관 부가정보 입력 완료 후 관할 보건소에서 참여 의료기관 승인 가능

- ① 시스템을 처음 사용하는 의료기관일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예방접종관리업무에 대한 사용자 권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좌측 메뉴보기에서 ‘권한/부가정보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림 4.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1)〉

- ② ‘권한 및 부가정보 관리’ 메뉴의 권한그룹선택에서 예방접종을 선택하거나 스크롤을 하단으로 내리면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항목이 보입니다.



〈그림 5.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2)〉

- ③ 예방접종관리 User(IR의원)의 ‘승인기관’을 클릭하여 관할 보건소를 선택한 후 ‘신청’을 클릭하면 권한신청이 완료됩니다. 보건소에서 권한신청을 승인하면 권한상태가 ‘신청중’에서 ‘승인’으로 변경됩니다.



〈그림 6.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3)〉

- ④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이 승인되면 로그인 시 메뉴보기에서 ‘예방접종관리’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7.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승인 후 메뉴〉



- ⑤ 초기 ‘예방접종관리’ 메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부가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입력이 완료되어야 관할 보건소에서 위탁사업정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관리’ 메뉴 클릭 시 부가정보 입력화면으로 자동 연동되며, 저장이 완료되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가정보: 기관 종별구분, 관할보건소, 사용 의료정보시스템명, 예진의사명, 접종자명, 기관 E-mail 등

〈그림 8. 의료기관 부가정보 입력〉



〈그림 9.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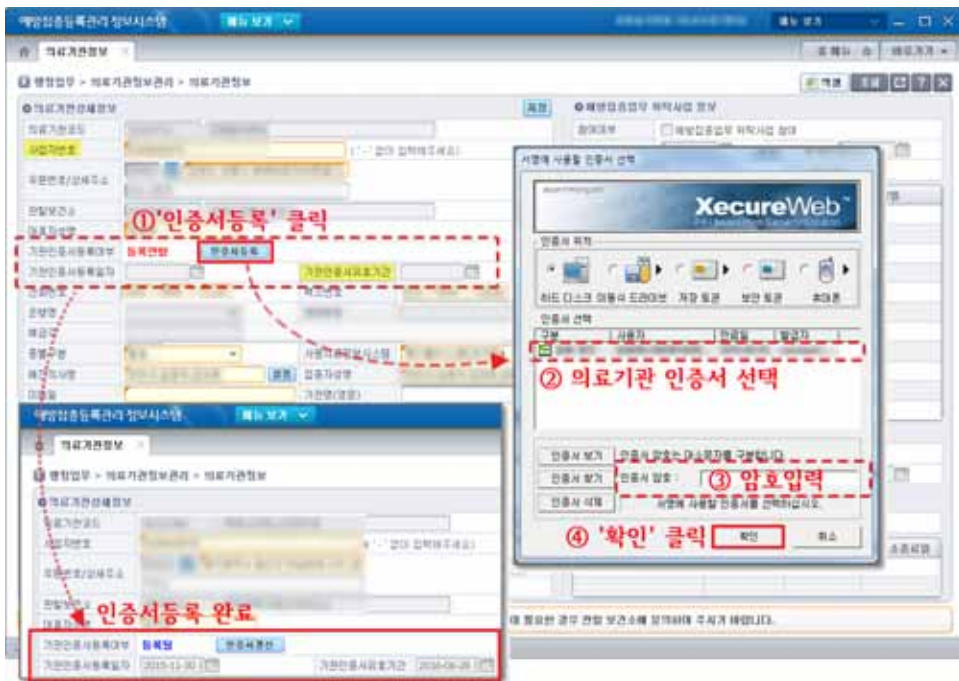
2.2 어린이 NIP 위탁의료기관 승인요청(전자계약)

- 전산으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예방접종관리 User(IR의원) 권한 승인’ 후에 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보건소로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합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어린이 NIP 위탁의료기관 계약승인’이 완료되어야 접종내역 전산등록 시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 신청 절차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메뉴보기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 계약신청(어린이)메뉴에서 신청
 ※ 전자서명에 사용되는 의료기관인증서 등록 후 계약관련 문서 작성

- ① 전자계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 기관인증서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정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급받은 기관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등록된 인증서는 위탁계약서 및 자율점검 서명 시 사용됩니다.



〈그림 10. 어린이 NIP 위탁의료기관 승인요청(1)-기관인증서 등록〉



② 기관인증서 등록이 완료되면 '계약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림 11. 어린이 NIP 위탁의료기관 승인요청(2)-전자계약신청 메뉴>

③ 계약신청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계약 필수서류: 기본교육수료증, 통장사본, 참여백신 시행확인증
- ※ HPV 접종시행 의료기관은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① 의료기관 기본정보 및 인증서 유효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 ② 비용지급 시 사용될 계좌의 통장사본 이미지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 ③ 의료기관 예진의사의 교육수료정보는 자동 조회되지만, 수료내역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수료번호(숫자10자리)를 입력하여 검증을 클릭합니다.
- ④ 실제 의료기관에서 시행중인 접종내역을 참여 백신 시행확인증에 체크하여 제출합니다.
- ⑤ HPV 백신 접종 의료기관은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확인증' 및 'HPV 백신 공급 협약서' 등록 필요
- ⑥ 사업참여에 필요한 필수서류 전산등록이 모두 완료되면 위탁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림 12. 어린이 NIP 위탁의료기관 승인요청(3)-계약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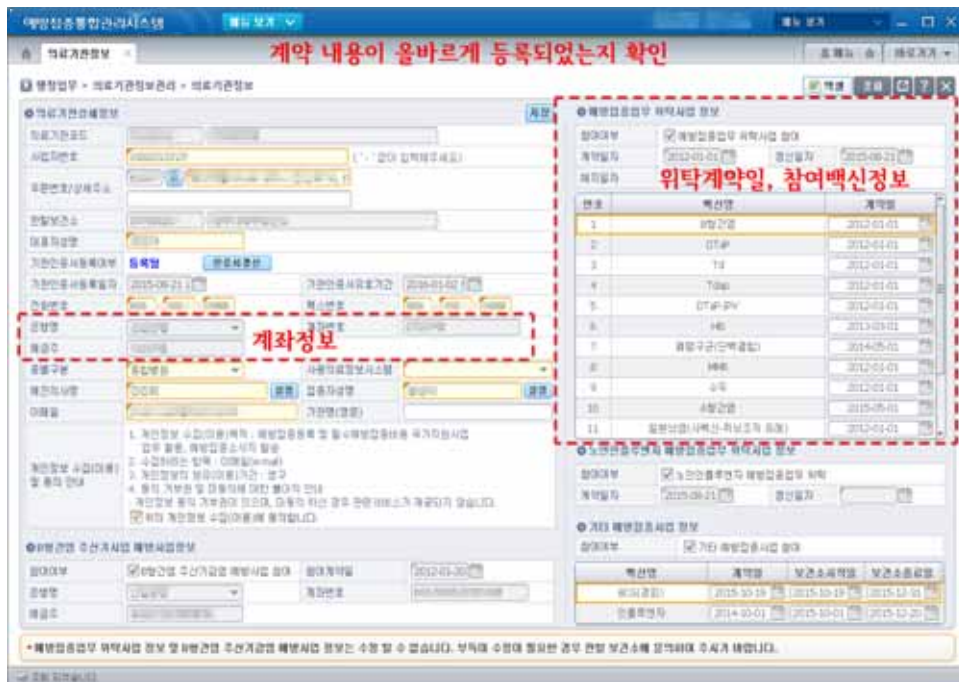


2.3 NIP 참여 의료기관 승인 확인(서면계약)

- 관할 보건소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예방접종관리 User(IR의원) 권한 승인’ 후에 ‘어린이 NIP 참여 의료기관 승인’이 완료되어야 접종내역 전산등록 시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승인’ 및 위탁사업 정보 확인 절차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메뉴보기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인터넷예방접종등록’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접속 → 상단 메뉴보기 → ‘행정업무’ → ‘의료기관정보관리’ → ‘의료기관정보’에서 확인

- ※ 예방접종업무 위탁 관련 ‘참여여부’, ‘계약일자’, ‘참여백신’,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등을 확인
- ※ 위탁사업 정보는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관할 보건소에서만 수정 가능



〈그림 13. NIP 참여 의료기관 승인 정보 확인〉

2 예방접종내역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1.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접속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인터넷예방접종등록 클릭



〈그림 14. 인터넷예방접종등록 프로그램 설치〉

②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실행됨



〈그림 15.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실행화면〉



1.1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성

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홈 화면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① 의료기관 기본정보(위탁계약일, 예진의사명, 접종자명, 위탁사업 백신종류) 확인
- ② 해당 월에 신청한 비용상환 내역의 심사 진행상태 확인
- ③ 신생아번호의 출생신고 후 인적정보 변경내역 및 인적정보 오류내역 확인
- ④ 예방접종등록 및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메뉴 바로가기
- ⑤ 최근 6개월간의 비용상환 내역을 그래프로 확인
- ⑥ 공지사항 및 지침 확인
- ⑦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즐겨찾기하여 사용 가능



〈그림 16.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홈 화면〉

2. 예방접종내역 등록

- ① 상단 ‘메뉴보기’ → ‘등록업무’ → ‘예방접종등록’ 순으로 클릭하거나 또는 좌측의 ‘예방접종등록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예방접종등록’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림 17. 예방접종등록 메뉴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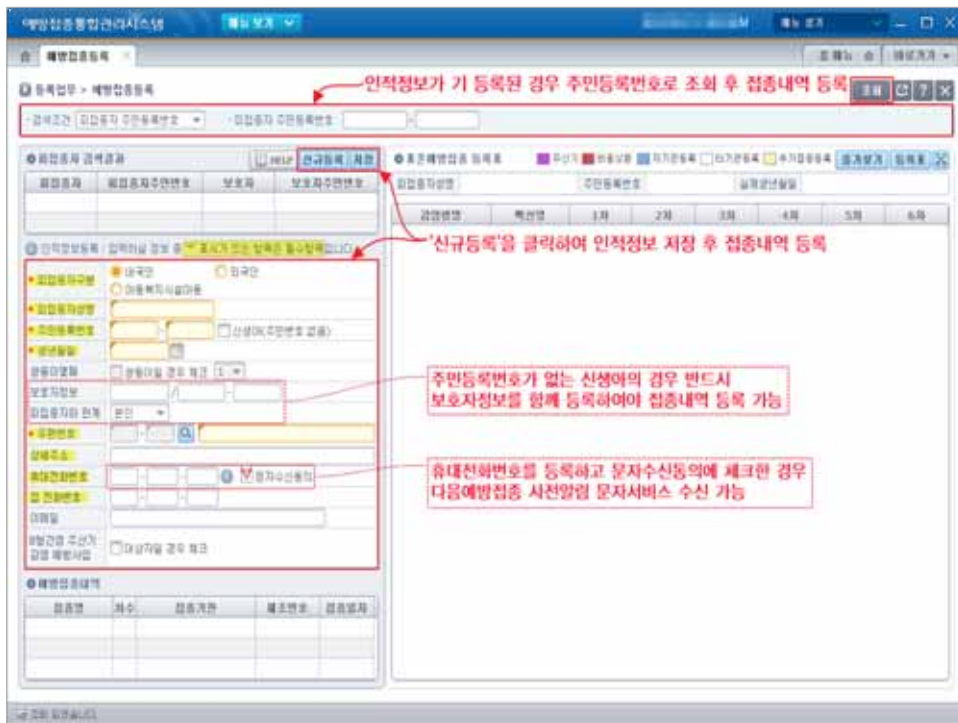
- ② ‘예방접종등록’ 메뉴에서 인적정보 및 접종정보를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림 18. 예방접종등록 화면〉



- ③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피접종자의 인적정보를 우선 등록합니다.
 인적정보가 기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피접종자를 조회합니다.
- ※ 피접종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핸드폰번호, 집전화번호)는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생아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인적정보를 함께 등록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 등록된 인적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수정이 가능하며, 수정한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수정이 완료됩니다.
 - ※ 인적정보 등록 시 핸드폰 번호를 기입하고, '문자수신동의' 항목을 체크한 경우 예방접종 다음예방접종 사전알림 문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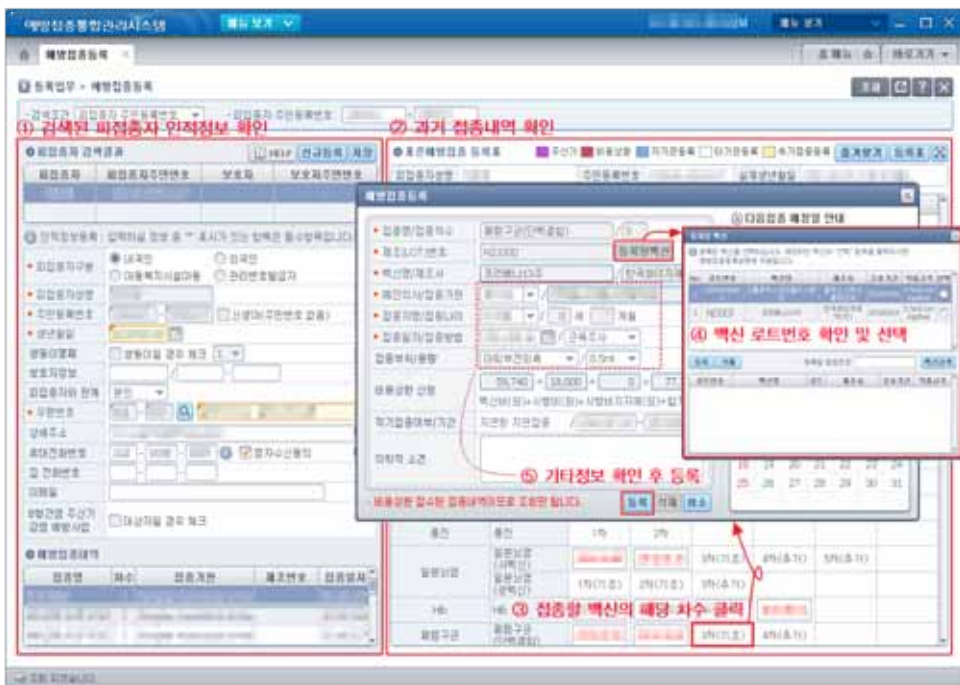


〈그림 19. 예방접종등록(인적정보)〉

④ 인적사항 확인 후 화면 오른쪽의 '표준예방접종 등록표'에서 접종할 백신의 차수를 클릭하면 예방접종등록 상세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 **접종 전 반드시 과거접종내역을 확인하여 중복접종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⑤ 팝업창에서 '등록된 백신'을 선택하고, 기타정보(접종일자, 접종방법, 접종부위, 용량 등)를 확인 후 '등록'을 클릭하면 전산등록이 완료되며 해당 차수에 접종일자가 표기됩니다.



〈그림 20. 예방접종등록(접종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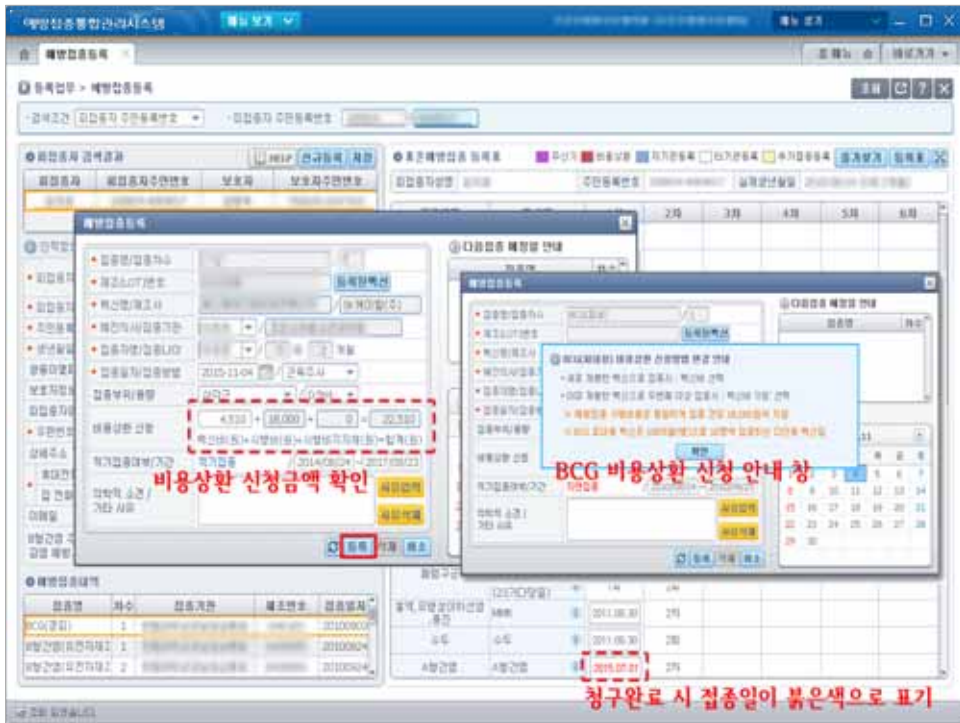
※ 접종내역 등록 시 참고사항

- 동일한 백신, 동일한 접종차수에 기록 등록 시 해당 접종차수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 Td(그 외)란에는 DTaP 접종이 지연된 만 7세 이상 대상자가 Td백신으로 접종한 경우에 등록합니다.



3. 비용상환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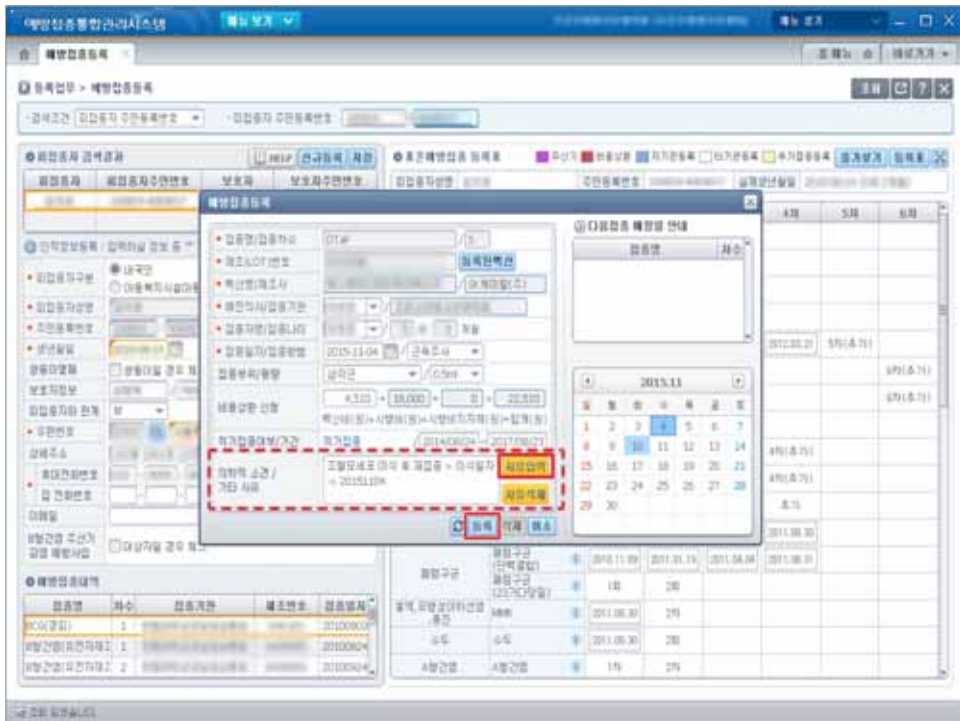
- 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인 경우, 예방접종내역 등록과 동시에 비용상환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예방접종등록 상세 팝업창의 '비용상환 신청' 항목에서 비용상환 신청금액을 확인하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② 비용상환 신청이 완료되면 '표준예방접종 등록표'의 해당 접종기록에 빨간색 글자로 날짜가 표시됩니다.
- ※ 비용상환 신청금액은 접종별로 자동입력 됩니다. 단, BCG 피내용 백신의 경우 실제 백신 개봉 시 백신비를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그림 21. 비용상환 신청(1)〉

③ 이전에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의학적 사유로 인하여 재접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접종차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중복등록 하되, 예방접종내역 등록 시 '의학적 소견'란에 사유를 선택·기입해야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학적 사유가 타당한 경우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그림 22. 비용상환 신청(2) - 의학적 소견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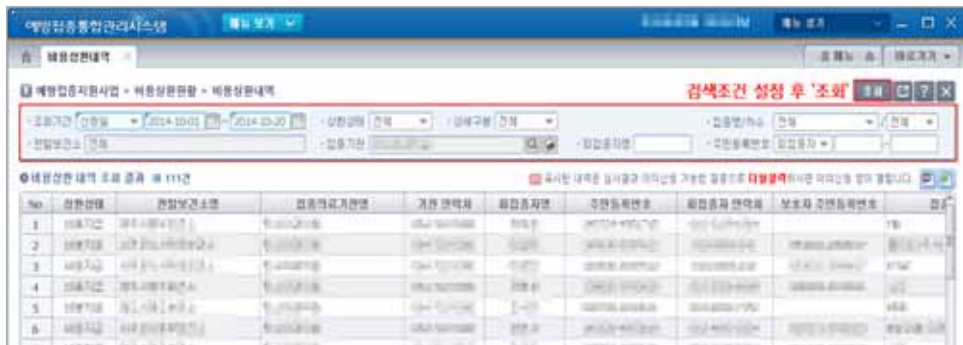
4. 비용상환 신청내역 확인

- ① 상단 '메뉴보기' →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상환현황' → '비용상환내역' 순으로 클릭하거나 또는 좌측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버튼을 클릭하여 '비용상환내역'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림 23. 비용상환 신청내역 확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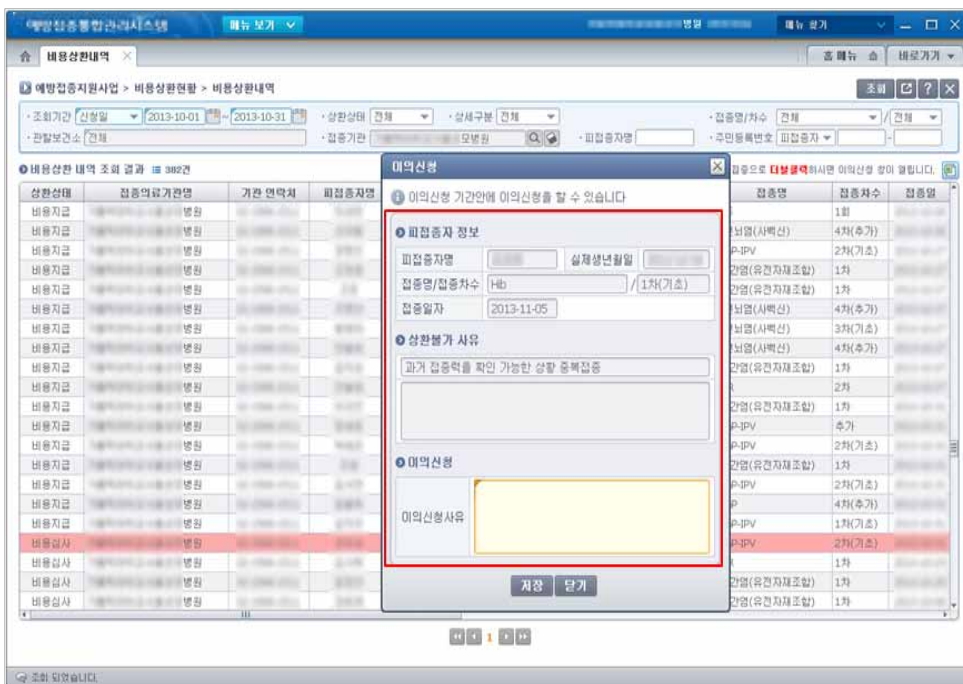
- ② '비용상환내역'에서 의료기관에서 비용상환 신청한 접종내역에 대한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24. 비용상환 신청내역 확인(2)〉

③ 상환불가 결정된 내역은 분홍색으로 표시되며 해당 내역을 더블클릭하면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이의신청은 반드시 '상환불가'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30일이 경과된 내역은 '지급취소'로 결정되어 재심사가 불가합니다.



〈그림 25. 비용상환 신청내역 확인(3)-이의신청〉



5. 비용지급결과 확인

- ① ‘메뉴보기’ →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지급결과’ 메뉴에서 조회기간을 설정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된 목록에서 보건소별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보건소를 더블클릭하면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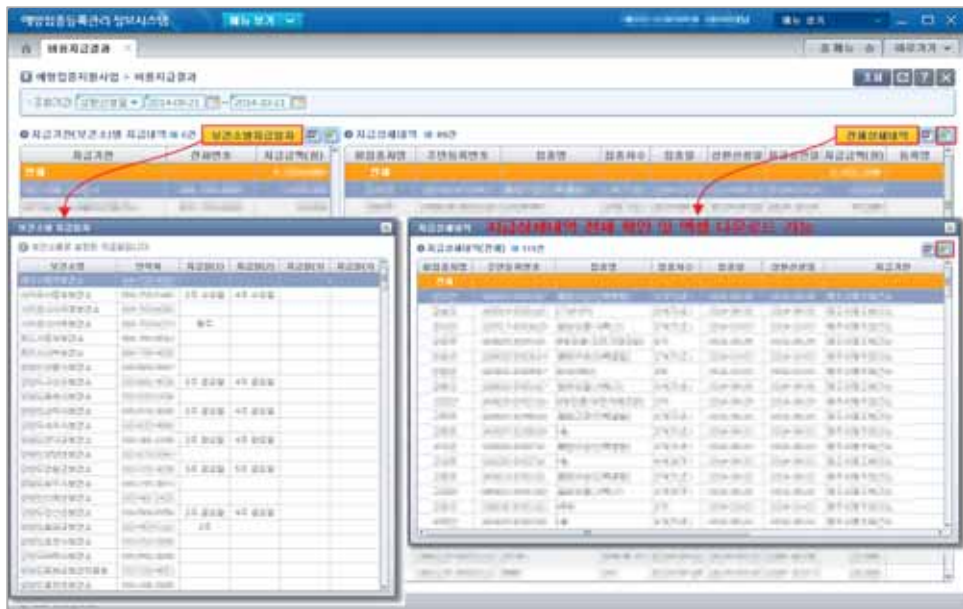
※ 지급승인일 : 보건소에서 해당의료기관에게 비용지급을 완료한 날짜



〈그림 26. 비용지급결과 확인〉

- ② ‘보건소별지급일자’를 클릭하여 각 보건소에서 설정한 비용지급일 확인이 가능하며, ‘전체상세내역’을 클릭하면 설정된 기간 내 지급된 전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종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비용상환 청구됨



〈그림 27. 보건소별 비용지급일정 및 전체상세내역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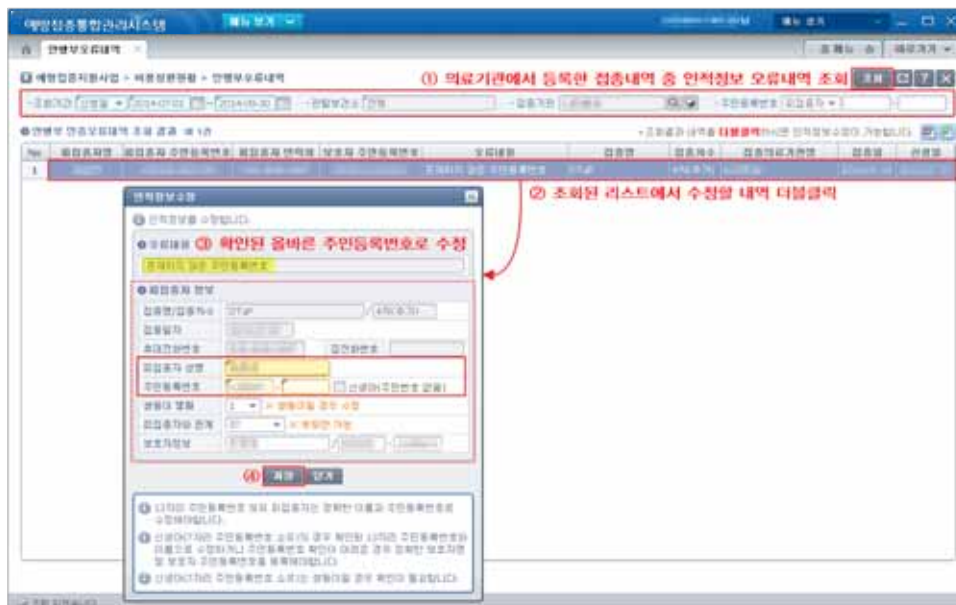
6. 행정자치부 인증결과 오류내역

- ① 행정자치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오류내역은 보건소에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접종을 실시한 의료기관에서 오류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 ②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메인화면 우측 ‘행자부오류내역’ 또는 ‘메뉴보기’ →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상환현황’ → ‘행자부오류내역’에서 수정이 필요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28. 행자부 오류내역〉

- ③ 수정된 정보는 행정자치부 재확인 후 피접종자의 주소지 보건소에서 비용상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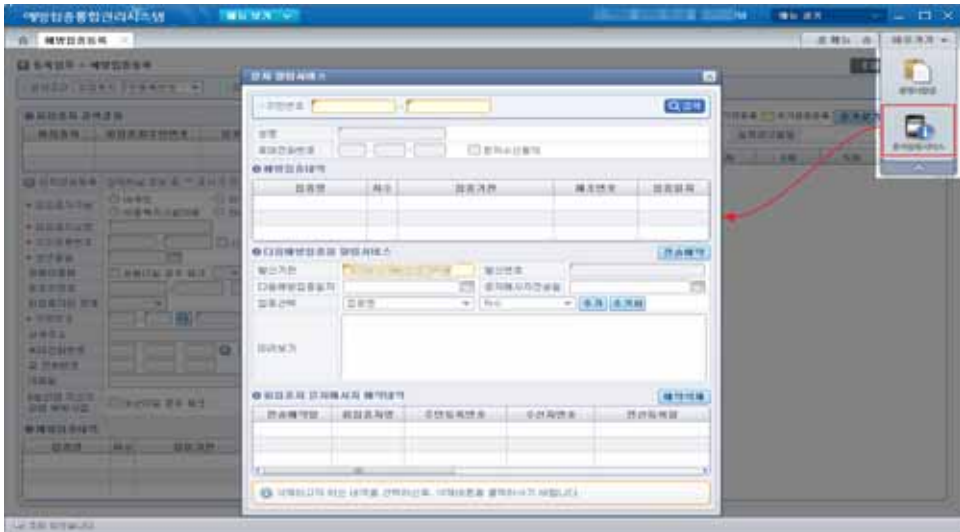


〈그림 29. 오류 인적정보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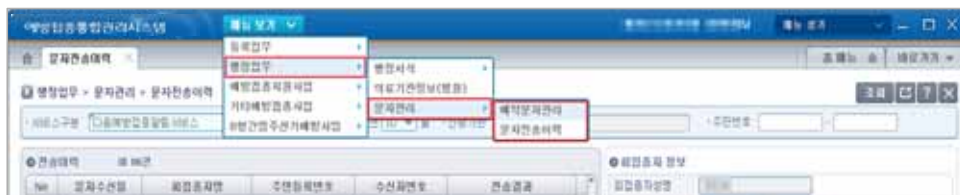
7. 다음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 ① 피접종자가 문자수신에 동의한 경우 다음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② 각 메뉴의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바로가기' → '문자알림서비스'에서 문자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 '예방접종등록' 메뉴에서 인적조회 후 바로가기를 통한 문자서비스 메뉴이동 시 조회된 해당 인적에 대한 문자 알림 설정가능
 - ※ 다음 예방접종일정 미입력 시, 앞차수 접종일을 기준으로 다음 차수 접종당일(10:00 이후)에 접종시기임을 환기하는 문자가 자동 발송됨



<그림 30. 다음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1)>

- ③ 문자 발송 예약 및 전송 이력 확인은 '메뉴보기' → '행정업무' → '문자관리' → '예약문자관리', '문자전송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31. 다음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2)>

8. 행정서식

- ① ‘행정서식’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접종내역에 대해 서식으로 조회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림 32. 행정서식(1)-예방접종 실적보고〉



〈그림 33. 행정서식(2)-예방접종 실시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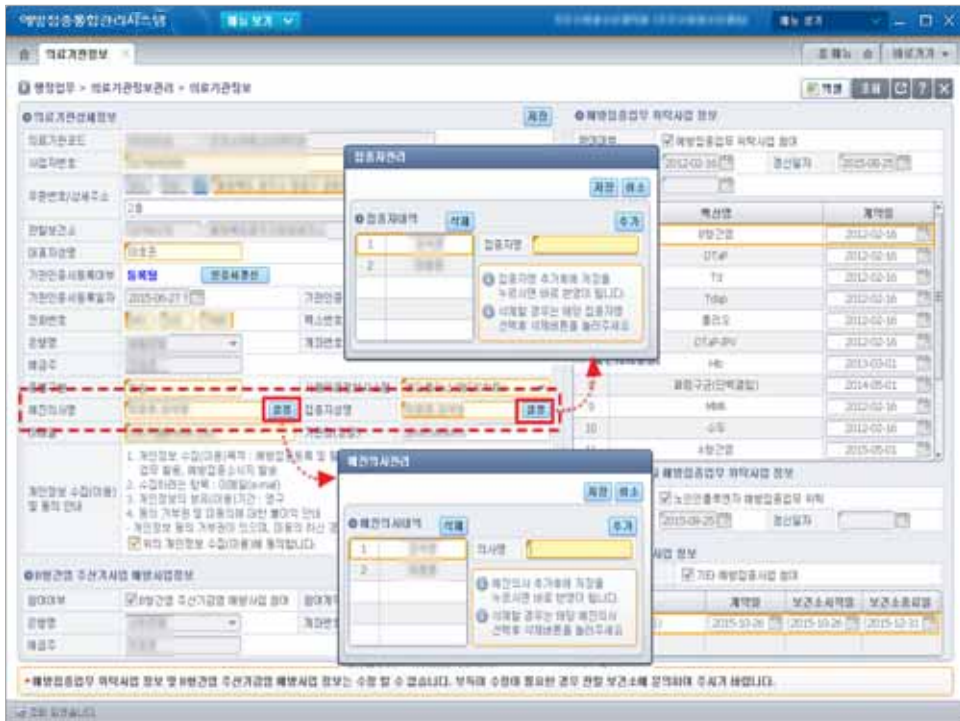
〈그림 34. 비용상환 현황 행정서식〉



9. 의료기관 정보 관리

① ‘메뉴보기’ → ‘행정업무’ → ‘의료기관정보관리’ → ‘기관정보관리’ → ‘의료기관정보’에서 의료기관의 일반정보와 위탁사업 정보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상세정보에서 예진의사명과 접종자명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예진의사와 접종자명은 최대 10명까지 등록 가능하며, 위탁계약 내용과 관련된 사항(계좌번호, 위탁계약체결일, 위탁계약백신 등)은 보건소에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림 35. 의료기관 정보〉

10. 부가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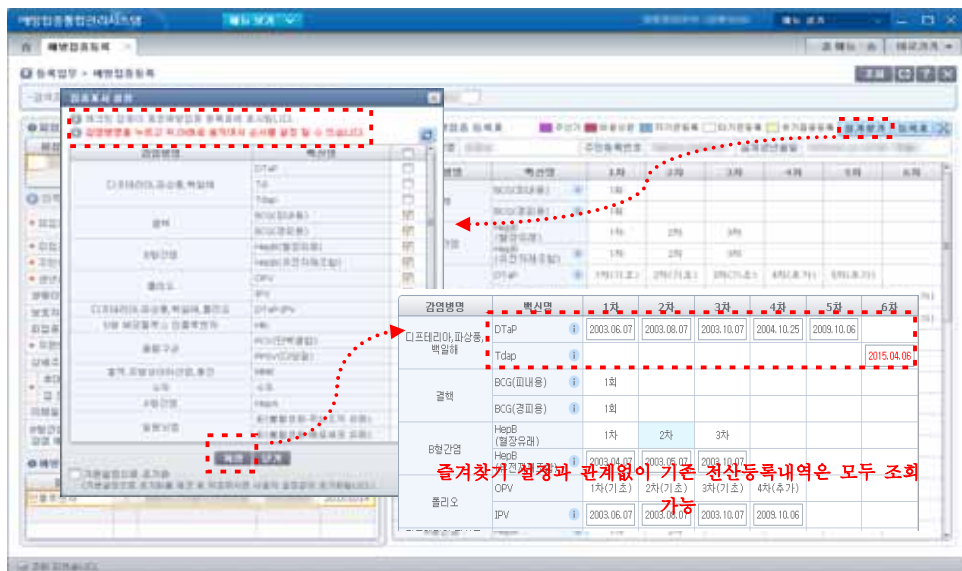
- ① ① 여러 탭을 열어 각각의 탭으로 바로이동이 가능하며, ② 화면의 ‘내보내기’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F3키’를 이용해 단일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36. 부가기능(1)〉

- ② ‘예방접종등록’ 메뉴에서 ‘표준예방접종 등록표’에 실제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고 있는 백신만 보이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순서도 설정 가능합니다.

※ 즐겨찾기 기능 설정과 관계없이 타 기관에서 등록한 접종내역은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그림 37. 부가기능(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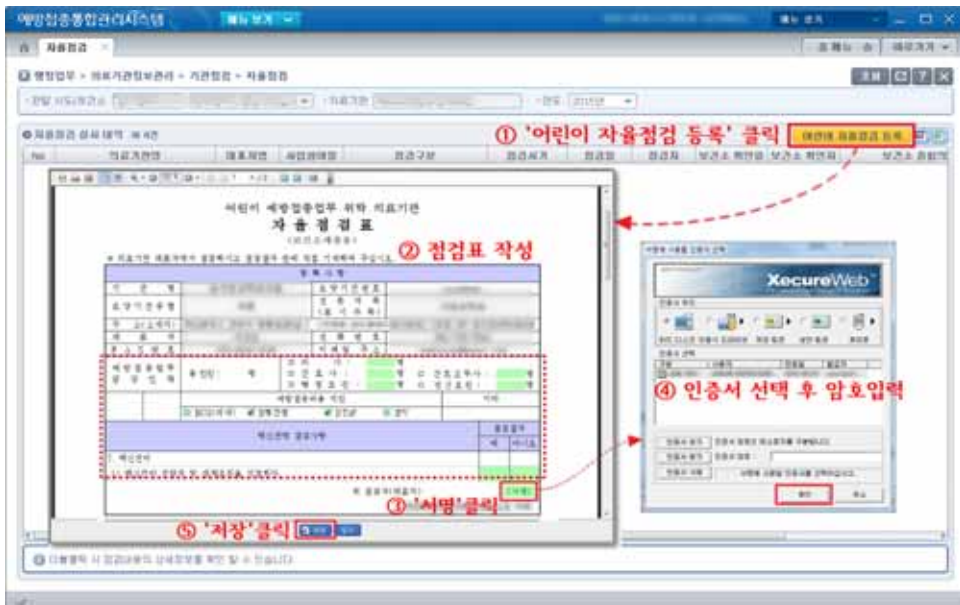
11. 자율점검

- ① '자율점검' 메뉴를 통해 점검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행정업무' → '기관점검' → '자율점검' 메뉴에서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등록)합니다.



〈그림 38. 자율점검 메뉴〉

- ② '어린이 자율점검 등록'을 클릭하여 점검표를 작성합니다. 점검표 작성 후 서명 및 저장을 완료하여야 점검표 제출이 완료됩니다.
- ※ '저장'버튼이 보이지 않는 경우 모니터 해상도를 권장설정으로 변경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전자서명단계에서 진행할 시 '의료기관정보'에 등록된 기관인증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 인증서 갱신한 후 재시도하시기 바랍니다(p.99 참조).



〈그림 39. 자율점검(1)-자율점검표 작성〉

③ 자율점검 등록 후 ‘조회’를 클릭하여 등록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40. 자율점검(2)-자율점검표 등록 확인〉

④ 등록한 자율점검표는 관할 보건소로 제출되며, 보건소 담당자 확인서명이 완료되면 종료됩니다.



〈그림 41. 자율점검(3)-보건소 확인〉



〈별첨자료〉

Ⅲ.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 매뉴얼

[1] 교육시스템 이용 방법(학습자 매뉴얼) …… 119



1 교육시스템 이용 방법(학습자 매뉴얼)

1. 회원가입

-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 사용 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후 학습자 권한 신청을 합니다.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 메뉴보기 → 권한/부가정보관리 → 교육관리 User(학습자) 권한 신청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문의: ☎ 1644-1407(정보화 T/F HelpDesk)
 - ※ 회원 가입시 학습자 본인의 실명과 직군, 면허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수수료 내 이름과 직군은 회원가입 시 입력한 대로 수수료가 출력되며 과정을 수강한 후에는 정보 수정이 불가하니 주의 합니다.

2. 로그인 하기

-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을 통해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승인 요청한 '교육관리 User(학습자)' 권한 승인이 완료되면,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3. 수강신청 하기

① 로그인 한 후의 메인 화면입니다. ‘예방접종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소속기관(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따른 신청 가능한 교육과정이 화면하단에 표시되며, 각자 수강할 과정에 대해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예로, 아래 화면에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로그인 한 경우, 신청 가능한 과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 교육신청 전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 확인 필요



② ①‘수강신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메시지 창이 뜨며, ②‘확인’을 클릭하면 수강신청이 완료됩니다.





- ③ 신청한 교육과정은 ① '진행중인 과정'에서 확인되며, ② '강의실입장'을 클릭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 ④ 또는 다음 화면과 같이 상단의 '수강과정' 메뉴를 클릭한 후, '학습하기'를 클릭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4. 학습하기

① ‘강의실 입장’ 또는 ‘학습하기’를 클릭 후 새로 열린 아래 창에서 ① ‘강의실 입장’을 클릭합니다.

※ ②: 웹 페이지 메시지를 확인하고, 강의실 홈 화면은 강의수강이 끝나기 전까지 닫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예) 2016년 교육과정 화면



② ‘강의실 입장’ 메뉴의 화면입니다. 각 회차 ‘학습하기’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기본교육의 경우 순차적으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수강 도중 e강의실 창을 닫을 경우 진도율이 정상적으로 체크되지 않아 수료완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교육 과정의 교육자료는 각 과정의 ‘자료실’ 메뉴에서 일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③ 2016년 교육과정 1회차 ‘2016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학습화면입니다.

- ① 화면 왼쪽메뉴에서 해당 차시의 소메뉴와 진도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 : 해당 페이지를 끝까지 들은 경우

미 : 수강중이거나 미완료한 경우

- ② 재생, 일시정지, 다시보기, 자막보기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③ 화면과 같이 ‘Click Next’ 표시가 나타나면 ‘NEXT’버튼을 클릭합니다.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왼쪽의 소메뉴 중 다음 진행할 부분을 클릭합니다.

모든 회차(10회차)를 수강하게 되면 ‘수료’처리가 됩니다.



※ 01/06 : 총 6페이지 중 1페이지를 의미함

5. 수료 확인하기

- ① 교육시스템 홈 화면 상단의 ① '수료증 출력' 메뉴를 클릭합니다. 수강과정 화면은 '진행중인 과정'과 '수강종료 과정'으로 구분되며, ② '수강종료 과정'에서 수료여부를 확인 및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수료증이 발급되는 과정의 경우, 아래 화면에서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6. 질문하기

- ① 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한 사항(진행률 오류 등)이 있을 경우, 게시판 (묻고 답하기)에 글을 남기시면 확인 후 처리해 드립니다.

※ 교육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043-719-6848~6852





〈별첨자료〉

IV.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1] 개요	127
[2] 아나필락시스 대응법	129



1 아나필락시스 정의

○ 개요

- 아나필락시스는 원인 알레르겐에 노출된 후 급성으로 발생하는 심한 전신적 알레르기 반응을 말하며 여러 가지 신체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피부 증상으로는 발진, 가려움증, 입술과 입안 부종, 호흡기계 증상은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심혈관계 증상은 저혈압, 실신, 가슴통증, 빠른 맥박, 그리고 소화기계 증상으로 복통, 구토, 설사,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호흡곤란, 저혈압,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등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그림 1).
- 아나필락시스는 우선 원인 물질 또는 특정 자극에 노출된 후 즉시 또는 수십 분 내에 1) 피부 반응과 호흡기 또는 심혈관계 반응이 나타난 경우, 2) 피부, 호흡기, 심혈관계, 소화기계 증상 중 2개 기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진단이 가능하다[1].
-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에 대한 자료는 제한적이나 일부 연구에서는 예방접종 100만건 당 0.65건의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2]. 예방접종 후 드물게 발생하지만 예방접종 후 수 분내 발생하고, 급격히 진행되는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대응이 중요시 된다. 특히, 예방접종은 주로 1차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알레르기 원인물질 또는 특정 자극에 노출된 후 즉시 또는 수십 분 내에 아래의 증상들이 나타나면 아나필락시스를 의심해야 합니다.

>> 호흡기



>> 심장혈관계



>> 피부



>> 소화기



>> 전신 및 신경



〈그림 1. 아나필락시스 주요 증상〉



2 아나필락시스 대응법

1. 신속 대응

●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 초기 대응은 상황평가, 도움요청, 응급처치, 응급의료기관 후송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

1) 상황평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증후를 조기에 인지하고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예방접종 담당 의료인은 예방접종 후 20~30분간 대기하는 시간 중에 백신 접종부위에 부종, 발적 등이 발생하면 전신 과민반응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관찰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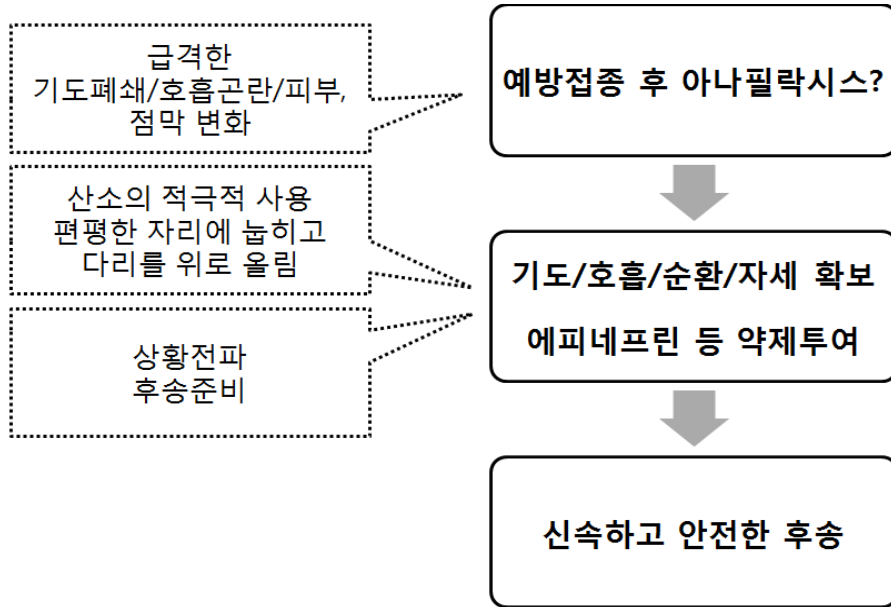
2) 도움요청: 전신 과민반응이 발생하면 우선 관련 상황을 의료기관내 신속히 전파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담당의사를 호출한다.

3) 응급처치: 담당의사는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의식과 맥박, 호흡을 확인한 뒤 간호사의 보조를 받으면서 기도확보, 산소공급, 에피네프린, 항히스타민 투여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 에피네프린은 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에 필요한 1차 약제이고 호흡곤란을 완화시켜주며, 적절한 심박출량을 유지시킴

※ 에피네프린 투여 후에도 증상 및 혈압 조절이 안되는 경우 10~20분 간격으로 3회까지 투여가 가능하며, 항히스타민은 발진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주어 2차 약제로 사용 가능

4) 응급의료기관 후송: 응급처치는 구급차가 도착할 때 까지 담당의사 주도하에 진행하고 구급차가 도착하면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센터에 후송한다.



〈그림 2. 아나필락시스 대응 흐름도〉

2. 사전 준비 사항

응급처치 장비 구비 및 후송체계 마련, 응급상황 발생 시 담당자별 역할 마련이 필요하다.

1) 응급처치 장비

가. 산소공급을 위한 산소탱크, 산소마스크, 앰부백, 에어웨이

나. 약제로는 에피네프린과 안티히스타민

다. 산소공급 장비는 소아용 성인용으로 구분하여 준비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되어야 한다[표 1].

※ 약물은 환자의 연령, 체중에 맞는 용량이 투여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비치[참고]

2) 후송체계 마련: 접종기관과 가까운 응급의료센터를 2개 이상 지정하고 전화번호, 위치, 후송거리 등을 파악해 두어야 한다.



3) 담당자별 역할 마련: 기본적으로 의사, 간호사, 보조원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의사는 환자 상태 평가 및 응급처치 지휘, 간호사는 응급처치 보조, 보조원은 응급 상황 및 후송 준비 상황 전파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표 2].

[표 1] 응급처치 장비 구비 및 점검 사항

장비	점검 사항
포터블 산소탱크	· 산소 충전 상태
산소 마스크	· 소아용/ 성인용 구비
엠부백	
에어웨이	
에피네프린	· 약제 유효기간(백신과 별도 보관)
항히스타민	· 소아용/ 성인용 접종 용량 준비

[표 2] 담당자별 역할

연령	역할
예진 의사	· 환자 상태 평가 · 기도, 호흡 확보유지, 순환기 및 의식상태 파악 · 약제 투여 필요성 판단 및 지시 · 심폐소생술 시행 필요성 판단 및 시행 · 응급의료센터(응급실) 후송 시 동행
간호사	· 상황 전파 및 도움 요청 · 약제 준비 및 투여 · 심폐소생술 시행 필요성 판단 및 시행 · 응급간호관리 · 응급의료센터(응급실) 후송 시 동행(필요시)
보조원	· 의료기관 내 상황 전파 · 119신고 및 구급차 호출 · 응급의료센터(응급실) 상황 알림, 후송 보조
보건소 구급차 운전기사	· 환자 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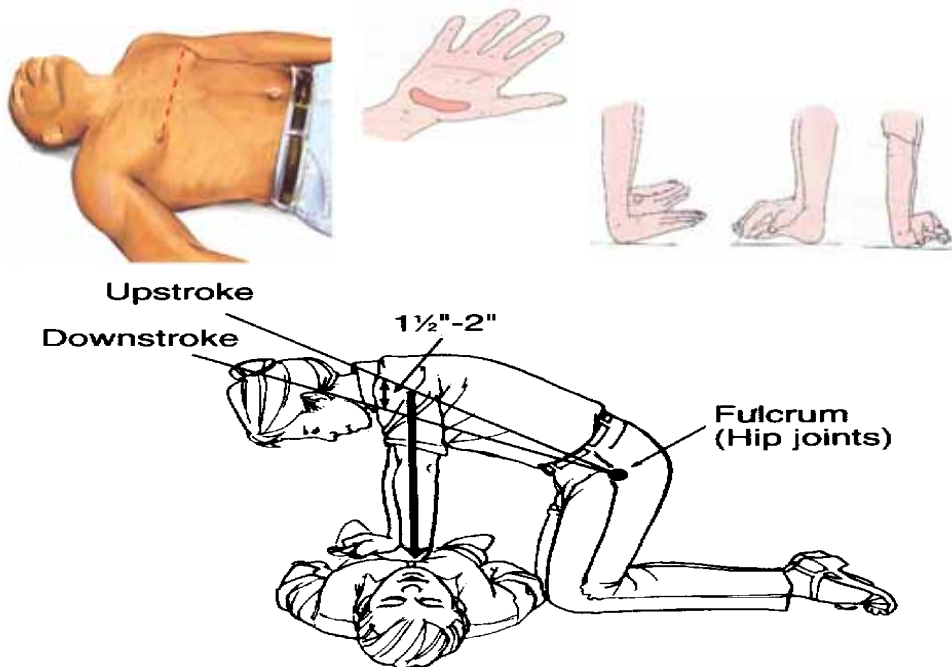
3. 심폐소생술(필요시)

● 환자가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킨 경우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 의료인의 경우 맥박 확인(10초 이내): 성인 및 소아는 경동맥 또는 대퇴동맥으로 확인하고 영아(12개월 미만)의 경우 목이 짧고 굵으므로 위팔 동맥에서 확인

● 성인 심폐소생술 순서(C-A-B)

- 1) 흉부압박(Compressions): 손을 흉부압박 위치(양쪽 젖꼭지 연결선과 가운데 흉골이 만나는 지점)에 놓고, 30회 흉부압박을 시행(분당 100회 속도, 4-5cm 깊이)[그림 3]
- 2) 기도열기(Airway): “머리기울임(head tilt)-턱들어 올리기(chin lift)”
- 3) 2회 인공호흡(Breathing)
- 4)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하여 반복



〈그림 3. 흉부압박법〉



● 소아 및 영아/신생아 심폐소생술 순서(C-A-B)

- 1) 흉부압박(Compressions): 손을 흉부압박 위치(양쪽 젖꼭지를 연결하는 가운데 흉골이 만나는 지점)의 아래를 압박 위치에 놓고, 30회 흉부압박 시행(분당 100회 속도, 4cm 깊이)

〈그림 4〉

가. 소아: 한 손을 사용하여 손바닥 끝부분으로 압박 〈그림 3〉

나. 영아/신생아: 한 손을 사용하여 두 손가락으로 압박 또는 두 손을 사용하여 엄지손가락으로 압박 〈그림 5〉

- 2) 기도열기(Airway): “머리기울임(head tilt)-턱들어 올리기(chin li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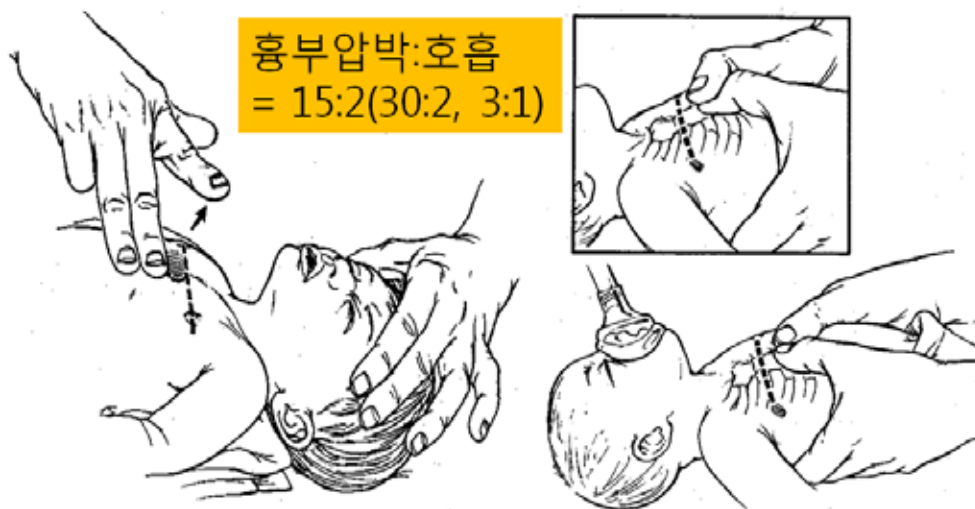
* 영아/신생아의 경우 기도를 수평으로 유지

- 3) 2회 인공호흡(Breathing)

- 4)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하여 반복



〈그림 4. 소아 심폐소생술 위치 및 방법〉



〈그림 5. 영아/신생아 심폐소생술 위치 및 방법〉

● 흉부 압박 방법

연령	압박/호흡 비율	
	1인 구조자	2인 구조자
신생아	3:1	3:1
영아(1세)	30:2	15:2
소아	30:2	15:2
성인	30:2	30:2

〈 참고문헌 〉

1. World Allergy, Organization, World Allergy Organization survey on global availability of essentials for th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anaphylaxis by allergy-immunology specialists in health care settings, Annals of allergy, asthma & immunology 2010 May;104(5):405-12.
2. Bohlke K, Davis RL, Marcy Sm et al, Risk of anaphylaxis after vaccin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Pediatrics, 2003 Oct;112(4):815-20



참고 1

아나필락시스 치료제 (체중·연령별 용량)

연령대	체중(kg)	에피네프린 근주용량	안티히스타민 (디펜히드라민 근주용량 12.5 mg/mL)
1-6개월	4-7kg	0.05mg(0.05mL)	5mg
7-18개월	7-11kg	0.1mg(0.1mL)	10mg
19-36개월	11-14kg	0.15mg(0.15mL)	15mg
37-48개월	14-17kg		20mg
49-59개월	17-19kg	0.2mg(0.2mL)	30mg
5-7세	19-23kg		
8-10세	23-35kg	0.3mg(0.3mL)	40mg
11-12세	35-45kg	0.4mg(0.4mL)	
13세 이상, 성인	45kg 이상	0.5mg(0.5mL)	50-100mg



〈부 록〉

I. 관련 법령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139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146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 2007. 10. 1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88호
 개정 2010. 8. 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66호
 개정 2010. 12. 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4호
 개정 2011. 3. 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41호
 개정 2011. 10. 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6호
 개정 2011. 12. 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78호
 개정 2012. 9. 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4호
 개정 2013. 2. 2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26호
 개정 2013. 9. 1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8호
 개정 2014. 1. 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18호
 개정 2015. 5. 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0호
 개정 2016. 5. 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8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이하 “예방접종업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위탁의 방법과 내용을 정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계약 체결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기간은 3년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3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 의료기관이 제2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4조(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며 위원장은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1. 질병관리본부장
2. 의료단체가 추천한 자 3인
3. 관련 학계에서 추천한 자 3인
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각각 추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관련 전문가 2인
5.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3인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예방접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 소속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예방접종비용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예방접종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예방접종비용) ① 예방접종비용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예방접종비용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1. 백신비
2. 예방접종 시행비용

제6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①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 상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 제 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 비용 상환 심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관련 보완자료 요청)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비용 상환 심사 시 위탁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의료기관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 의료기관이 동 기간 내에 보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위탁 의료기관이 책임진다.

제9조(예방접종 비용 심사결과의 통보)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용 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 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용 상환액을 지급하기 전 지급 불능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해 위탁 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위탁 의료기관이 보완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의료기관 또는 위탁

의료기관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① 위탁 의료기관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비용 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5일전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 요청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5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쪽)

제1조	계약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2조	“을”	의 료 기 관 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 시 과 목		
		주 소 (소 재 지)				
		전 화		전자우편주소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면 허 종 별		면 허 번 호		
		의료정보시스템	<input type="checkbox"/> 사 용 ※ 사용사업체명 : _____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제3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제4조	위탁계약 범위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예방접종업무 []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예방접종업무				
제5조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계약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기관명 : _____
 대표자 : _____ (서명 또는 날인)

<을> 의료기관명 : _____
 대표자 : _____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뒤쪽)

〈위탁계약조건〉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구-○○-○○○호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예방접종업무 위탁범위 :

귀 기관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정	2002.	7. 1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50호
개정	2005.	5. 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37호
개정	2006.	6. 1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	46호
개정	2010.	12. 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126호
개정	2011.	7.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77호
개정	2013.	2. 2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29호
개정	2014.	4. 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61호
개정	2014.	9. 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149호
개정	2015.	3. 1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47호
개정	2015.	3. 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57호
개정	2016.	5. 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80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예방접종 적용대상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13호에 규정된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2. 법 제24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제1조에 규정된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A형간염,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예방접종은 보건의료기관의 주관하에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되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능력을 갖춘 의료인이 접종하며 의료인은 현재 권장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 접종시기, 접종방법 및 접종하는 백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홍보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인은 접종대상자를 진찰할 때마다 예방접종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적기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유
2.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예방접종의 중요성, 접종시기,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접종내역의 기록 및 보관의 중요성 및 정기·임시 예방접종과 기타 예방접종의 차이에 대한 교육·홍보
3. 보건의료기관과 의료인은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호자’ 정의를 준용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를 작성토록 권유

④ 보건의료기관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주의사항 등) ① 의료인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충분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
2. 예방접종의 대상자가 접종의 금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접종을 해서는 아니됨. 단, 금기사항이 아닌 경우를 금기사항으로 잘못 적용하여 접종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주의

② 의료인은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및 예방접종의 이점과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부모나 보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

한다.

③ 보건 의료기관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에 관련된 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보존한다.

1. 접종대상자의 인적사항

2. 접종명, 접종차수, 백신제조번호, 접종일자, 접종방법 등 접종내역

④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 보건 의료기관은 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보건소에 그 내용을 보고한다. 다만, 접종 후 백신과 관련된 심각한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그 내용을 즉시 신고한다.

⑤ 보건 의료기관은 백신 구입 시 생물학적 제제 출하증명서를 수령하고 제조 연월일, 제조회사, 공급자(공급회사 또는 국가기관), 백신제조번호, 유효기간, 구입량 및 재고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접종 전까지 백신의 역가가 충분히 유지 되도록 적절한 용기와 방법을 사용하여 백신을 운반·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제2조에 규정된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및 표준 접종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준용) 이 기준은 별표 1에 규정된 접종대상 이외의 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6-80호, 2015.5.31.〉

이 고시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① 결핵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개월 이내에 접종을 권장한다.
- 백신종류
 - BCG(피내용)

② B형간염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HBsAg과 anti-HBs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인 성인 중에서는 B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성인은 우선 접종권장 대상이 된다.
 - ①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가족
 - ② 혈액제제를 자주 수혈받아야 되는 환자
 - ③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 ④ 주사용 약물 중독자
 - ⑤ 의료기관 종사자
 - ⑥ 수용시설의 수용자 및 근무자
 - ⑦ 성매개질환의 노출 위험이 큰 집단
- 표준접종시기
 - 모체가 HBsAg 양성인 경우 : HBIG 및 B형간염 1차 접종을 생후 12시간 이내 각각 다른 부위에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 모체가 HBsAg 음성인 경우 : 생후 1~2개월에 B형간염 접종을 시작할 것을 권장한다.
 - 모체의 HBsAg 검사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경우 : B형간염 1차 접종을 생후 12시간 이내에 실시하고, 산모의 검사 결과 양성으로 밝혀지면 가장 빠른 시기(늦어도 7일 이내)에 HBIG를 백신접종과 다른 부위에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③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생후 15~18개월, 만4~6세, 만11~12세에 3회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 기초접종 3회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표준접종일정

구 분		표준접종시기	접 종 간 격	백신
기초 접종	1차	생후 2개월	최소한 생후 6주 이후	DTaP
	2차	생후 4개월	1차접종후 4~8주 경과후	DTaP
	3차	생후 6개월	2차접종후 4~8주 경과후	DTaP
추가 접종	4차	생후 15~18개월	3차접종후 최소 6개월 이상 경과후	DTaP
	5차	만4~6세	-	DTaP
	6차	만11~12세	-	Tdap 혹은 Td

④ 폴리오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접종한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단, 3차접종은 생후 6~18개월까지 접종가능)
 - 만4~6세에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⑤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2~15개월과 만4~6세에 2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⑥ 일본뇌염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 쥐 뇌조직 유래 불활성화 백신과 베로세포 유래 불활성화 백신은 생후 12~23개월중 7~30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한 후, 12개월 뒤에 1회 더 접종하여 기초접종을 완료하고, 만6세와 만12세에 2회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햄스터 신장세포 유래 약독화 생백신은 생후 12~23개월에 1회 접종하고, 12개월 후 2차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⑦ 장티푸스

- 접종대상
 - 다음의 대상자중 위험요인 및 접종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①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가족 등)
 - ②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 및 체류자
 - ③ 장티푸스 균을 취급하는 실험실 요원
- 표준접종시기
 - Vi polysaccharide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3년마다 접종하고 2세 미만의 영아는 권장하지 않는다.

⑧ 인플루엔자

- 접종대상
 - 다음의 대상자를 우선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①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
 - ②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 ③ 만성간질환자, 만성신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병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아스피린 복용 중인 6개월~18세 소아
 - ④ 65세 이상의 노인
 - ⑤ 의료인
 - ⑥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 ⑦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 ⑧ 임신부
 - ⑨ 50세~64세 인구
 - ⑩ 생후 6개월~59개월 인구
- 표준접종시기
 - 매년 1회 접종을 원칙으로 한다.
 - 단, 과거접종력이 없거나, 첫 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이상 9세미만의 소아에게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후 매년 1회 접종한다.

⑨ 신증후군출혈열

- 접종대상
 - 다음의 대상자중 위험요인 및 접종환경들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① 군인 및 농부 등 직업적으로 신증후군출혈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
 - ②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 출혈열) 바이러스를 다루거나 쥐 실험을 하는 실험실 요원
 - ③ 야외활동이 빈번한 사람 등 개별적 노출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자
- 표준접종시기
 -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2차 접종 후 12개월 뒤에 3차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⑩ 수두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2~15개월에 1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⑪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⑫ 폐렴구균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표준접종시기
 - 영유아의 경우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기초접종을 실시하고,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접종 할 것을 권장한다.
 -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구균 다당질 백신으로 1회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⑬ A형간염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2~23개월에 1차 접종 후, 6~12개월(또는 6~18개월) 뒤에 2차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⑭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접종대상
 - 해당 연도에 만 12세 이거나 만 12세에 달하게 되는 여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 만 12세에 1차 접종 후 6개월 뒤에 2차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Form No. 1]

Screening Questionnaire for Immunization

Name		Foreign Registration Number	-	(<input type="checkbox"/> Male <input type="checkbox"/> Female)
Telephone	(Home)	(Cell phone)	Weight	kg
Home address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Vaccination	Patient/ Parent or Legal Guardian <input checked="" type="checkbox"/>
I hereby consent to provision of my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the Foreign Registration Number.	<input type="checkbox"/> I agree
I hereby consent to checking my child's(my) previous vaccination record.	<input type="checkbox"/> I agree
I hereby consent to receive a reminder message for the date of next schedule and confirmation of current receipt of vaccination (For children only).	<input type="checkbox"/> I agree
Pre-Immunization Screening Checklist	Patient/ Parent or Legal Guardian <input checked="" type="checkbox"/>
Are you sick today? If yes, please describe the symptoms. ()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Have you ever experienced an allergic reaction such as urticaria or rash after taking medications or food (including eggs), or receiving a vaccination?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Have you ever experienced any adverse event following vaccination in the past? If yes, please specify the vaccine. ()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Have you ever had been diagnosed with or treated for congenital anomaly, asthma, health problems of lung, heart, kidney, liver or metabolic disease (e.g. diabetes), or any blood disorder? If yes, please specify the health problem. ()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Have you experienced a seizure or a brain or other nervous system problem (e.g. Guillain-Barré syndrom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Do you have cancer, leukemia or any other immune system problem? If yes, please describe the disease. ()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 the past three months, have you taken cortisone, prednisone, other steroids or anti-cancer drugs, or had radiation treatment?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 the past one, have you been given a blood or other blood product transfusion immunoglobulin?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Have you received vaccination in the past one month? If yes, please specify the vaccine. ()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For women) Are you pregnant or is there a chance for you to become pregnant within one month from now?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 hereby give the consent for you to receiving vaccination(s) after being informed about the result of examination of you and the potential adverse events following immunization (AEFIs).	
Patient or Parent/Legal Guardian: (Name) (Signature) (Relationship with patient) * National Registration Number of legal guardian (if your child has not register the birth): - Date: ___(yyyy)___(mm)___(dd)	

Results of Pre-Vaccination Screening (to be completed by a physician)	Check <input checked="" type="checkbox"/>
Body temperature : _____ °C I have explained about possible risks of immunization(AEFI)	<input type="checkbox"/>
I have explained that the vaccine recipient should stay in the medical institution for 20~30 minutes for observation.	<input type="checkbox"/>
Results of history-taking :	
Based on the history and physical examination, the vaccine recipient is able to receive vaccination.	
Physician (Name): _____ (Signature)	

210mm× 297mm(보존용지(2종) 70g/㎡)



〈부 록〉

Ⅱ. 백신보관과 관리

1. 백신의 보관과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권고사항 159
2. 백신 보관 시 필요한 기구들 161
3. 백신의 주문과 인수, 재고 관리 시 주의사항 165
4. 백신 보관시 점검 사항 168
5. 백신 보관 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치사항들 173



1 백신의 보관과 관리

I 백신의 보관과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권고사항

가. 백신 접종에 관련된 지침서 준비 및 비치

백신 접종을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지침서를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백신 접종 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야 한다.

- 백신 보관과 취급, 접종을 책임지는 사람과 예비 인원에 대한 연락처
- 지역 보건당국의 연락처
- 백신 생산 회사 혹은 백신 공급 업체 연락처
- 백신 보관용 냉장고를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회사 연락처
- 백신 냉장고에 사용하는 온도계의 회사 연락처
- 백신 보관과 취급, 접종을 책임지는 사람과 예비 인원의 역할 분담
- 백신과 용해제의 보관 방법에 대한 정리된 내용
- 백신 보관 온도에 대한 내용
- 백신 보관 기구에 대한 내용
- 백신 보관 냉장고에서 백신의 위치
- 백신의 보관과 취급 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안
- 백신 재고 관리에 대한 내용
- 백신 이송과 백신을 회사나 백신 공급 업체에서 받을 때 절차에 대한 내용
- 백신 접종 방법에 대한 내용
- 백신 접종 후 조치 및 주사기 등의 접종과 관련된 물품의 관리에 대한 내용
- 사용 백신에 대한 설명서

나. 백신 접종에 있어 책임 관리자 선정

백신을 주문, 관리 및 접종하는 책임자를 정해야 하고 이 책임자는 백신 관리 및 접종에 관한 지침서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새로운 백신의 도입 시 사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국내에는 같은 종류의 백신이나 제조사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백신간의 교차 접종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책임자 유고시를 대비하여 미리 예비 인원들을 확보하여 교육해야 한다.

백신 책임 관리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의 온도를 하루에 2회 점검하고 기록한다.
- 백신 보관이 잘못되었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한다.
- 백신의 보관과 취급에 대한 기록을 한다.
- 백신 냉장고 안의 백신들 중 유효기간이 가까운 백신이 냉장고 내 앞에 위치하도록 하고 백신의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한다.
- 백신의 주문
- 백신 공급 업체에서 의료기관까지 백신 이송과정에 대한 검증, 백신 인수, 보관 및 관리를 책임진다.
- 백신 보관 이상 시 가장 먼저 조치를 하도록 하며, 만약 유고시에는 다른 예비 인원들이 응급상황에 맞는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다.
- 백신 냉장고 온도가 이상이 있는 경우에 자동 온도 조절계를 이용하여 온도를 조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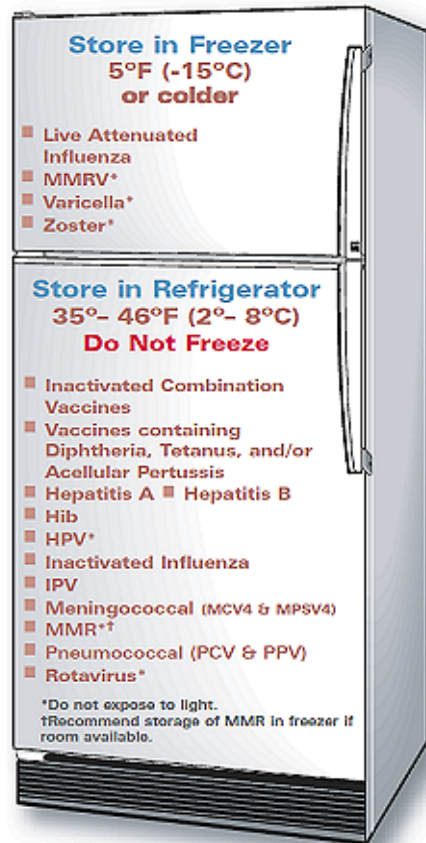
II 백신 보관 시 필요한 기구들

-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 백신 보관 감시체계
- 비상 상태를 대비한 백신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물품
- 정전 등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를 대비한 자가발전기 등 설치

가. 냉장고

1. 기종

백신만 보관하는 냉장고를 구입하여 비치하고, 냉장고와 냉동고가 분리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가정용 냉장고도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백신 냉장고 혹은 의료 전용 냉장고 중에는 냉장고문이 유리로 된 것이 있는데 일부 백신-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Human papilloma virus, HPV), 홍역, 볼거리, 풍진 혼합백신(Measles, Mumps, Rubella, MMR), 로타바이러스 백신 (Rotavirus), 수두백신(Varicella)은 일광에 노출되면 백신의 역가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단 가정용 냉장고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다른 음식물, 약품들과 같이 보관을 해서는 안된다.



2. 냉장고 위치

일반 가정용 냉장고와 같이 통풍이 잘되는 곳, 직사광선이 없는 곳, 건물의 벽에서 10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바닥에서는 2.5~5cm의 간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직사광선, 외부의 온도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창문부근에 두어서는 안 된다. 냉장고 뒷면에 코일이 있는 경우는 벽과 10cm이상의 여유 공간이 있도록 한다. 좁은 공간에 두어서는 안되고 다른 가전제품과 같이 두지 않는 것이 좋으며, 전기 콘센트도 다른 것과 연결하여 사용하지 말고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3. 냉장고의 온도

- 1) 냉장보관 : 백신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보관 온도를 준수해야 하나 대개의 백신들은 2~8℃에서 보관해야 하고, 온도 변화의 안정성을 위하여 5℃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개별 백신의 보관에 관한 지침은 백신설명서를 참조한다.
- 2) 백신 냉장고의 온도 조절은 책임자가 해야 하며, 냉장고의 온도 변화가 있을 시, 혹은 냉장고 온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백신 냉장고 안에 있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이용하여 조절한 후 30분 동안 온도를 점검한다.
- 3) 백신 냉장고의 온도 점검은 자주 하는 것이 좋으나 적어도 하루에 2회를 하는데, 아침에 일과 시작 시에, 일과를 마친 후에 점검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온도를 기록을 해둔다. 기록한 온도의 보존기간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제제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제5조 2항'에 따라 2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 4) 새로운 백신 냉장고를 구입했거나 백신 냉장고를 수리 후 다시 사용할 시에는 바로 사용하지 말고 냉장고 온도를 2일 동안 측정 후 사용해야 한다.



4. 냉장고 사용 시 주의점

- 1) 가능하면 문을 자주 열지 않는다.
- 2) 다른 약물, 혹은 음식물과 함께 보관하지 않는다.
- 3)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이 제대로 닫히는지, 냉장고 문의 도어가스킷에 새는 것이 없는지, 문의 기울기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5.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이용한 온도 조절은 백신 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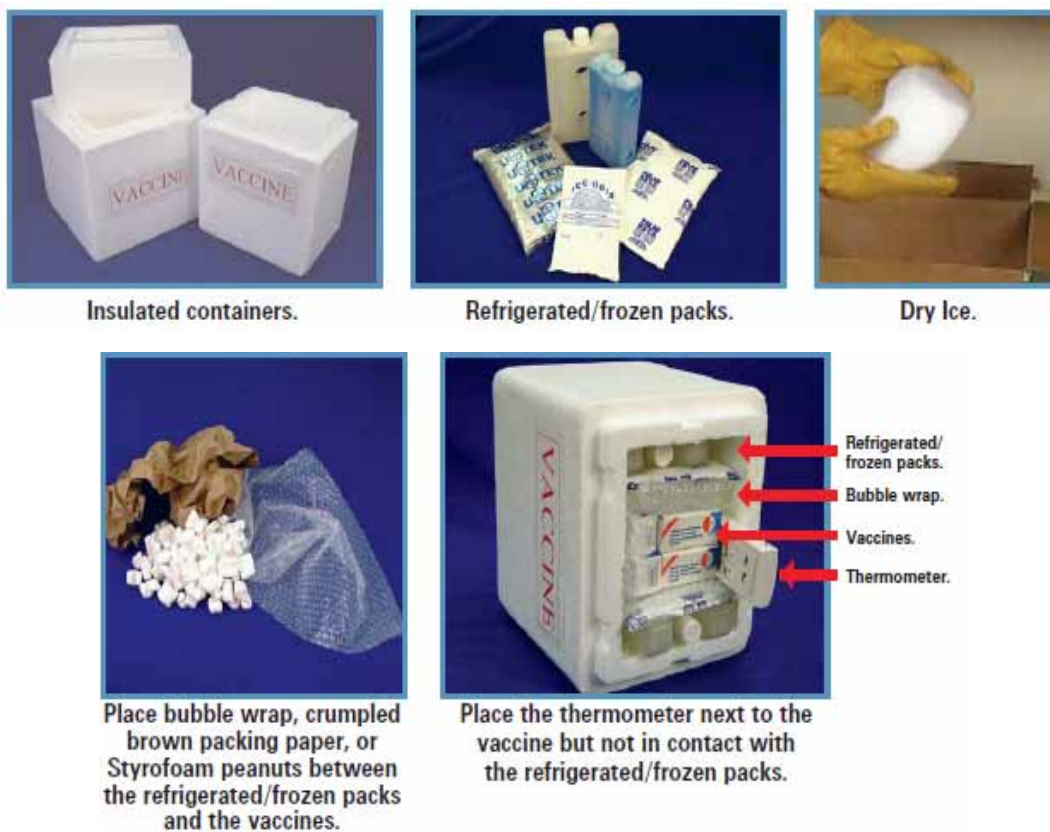
6. 백신 보관용 냉장고는 정기적인 점검을 받도록 한다.

나. 온도계

1. (온도계의 종류) 수은 온도계, 디지털 온도계, 자동온도기록장치 등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2. (온도계의 위치) 냉장고 중간 부분에 위치하도록 하며, 온도계가 냉장고 벽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온도계의 경우 감지기가 냉장고 벽에 역시 닿지 않도록 둔다.
3. (온도계의 관리) 백신 냉장고에 사용되는 온도계는 표준온도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표준 온도계는 1년에 한 번씩 국가 인증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보정을 받아야 한다. 디지털 온도계의 경우 여분의 건전지를 온도계에 부착 해둔다.
4. 온도가 일정 이상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경우에 알람이 울리는 것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5. 국내에서 나오는 일부 냉장고의 경우 온도계가 냉장고 본체에 붙어서 나오는데 이때에는 표준온도계를 구입하여 냉장고에 부착된 온도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다. 비상 상태를 대비한 백신을 한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물품

백신 보관에 갑작스런 이상이 생겼을 때 백신을 이송을 할 때 필요한 것들로 아이스팩, 아이스박스, 비닐 완충제, 여분의 온도계 등이 있어야 한다.



〈그림 1〉 백신을 이송할 때, 백신 보관 냉장고의 갑작스러운 이상, 혹은 냉장고 청소 등으로 일시적인 백신 보관이 필요할 때,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아이스팩과 백신이 직접 닿지 않도록 기포가 들어 있는 비닐 포장재 등이 들어있어야 한다. 백신 이수 시에 의료기관의 책임자는 위와 같은 것을 확인해야 한다. 드라이아이스는 냉동이 필요한 백신을 이송할 때에 사용한다.



Ⅲ 백신의 주문과 인수, 재고 관리 시 주의사항

가. 백신 주문 간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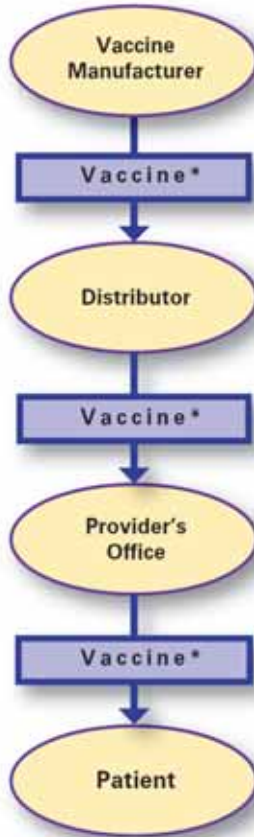
1. 백신은 약 2~3개월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을 주문하는 것이 좋으며, 재주문은 30일정도의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 좋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백신을 납품받아 보관하면 백신 냉장고 내부 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백신은 냉장고 용량에 50%정도 차지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백신 사용량이 많은 경우는 여러 대의 백신 냉장고가 필요할 수도 있다.
2. 백신을 주문 시 빈번한 소량 주문은 지양한다.

나. 백신 인수 시 주의사항

1. 백신 제조사의 원칙에 따라서 보관과 이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주문한 백신의 수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백신을 공급하는 회사나 업체에서 온도를 유지하며 잘 운송이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확인을 하는 방법은 백신을 운송해온 박스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는데 적절한 온도, 운송기간 동안 저온을 유지하는 기구들(아이스팩, 완충제 등)을 확인한다.
4. 백신을 운송해온 상자는 반드시 백신관리 책임자가 개봉을 하도록 하며 만약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예비 인원들이 할 수 있다.
5. 상자를 개봉한 후 주문백신의 수량, 백신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6. 백신이 물에 젖었거나, 상표가 훼손된 경우, 백신 병이나 주사기가 금이 간 경우에는 백신을 돌려보낸다.
7. 백신 운송상태를 확인한 후에는 즉시 냉장고에 보관한다.

백신 이송을 위한 저온체계

The Cold Chain



백신 회사나 공급업체에서 백신이 의료기관에 도착 시 그림처럼 온도가 제대로 보관이 되어 이송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백신이 깨져 있거나, 젖어 있거나, 상표가 손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백신을 인수하면 안 된다.

백신 인수는 책임자가 하도록 한다.

백신을 다른 곳에 옮길 때는 아이스 박스에 얼음을 채우고 백신과 얼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완충제를 채운 후 이송을 하여야 하며, 차량은 가능하면 냉장차를 이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때도 트렁크에 백신을 넣고 이송하면 안 된다.

〈그림 2〉 백신은 백신 생산 공장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접종할 때 까지 적절한 온도(2~8℃)에서 백신회사가 정한 원칙대로 보관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백신을 적절한 냉장용기, 냉동용기에 담아서, 냉장차량으로 이송해야 한다.



다. 백신의 재고 관리

최소한 한달에 한번, 백신 주문을 넣기 전에 백신 재고 목록을 작성한다. 백신 재고 관리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

1. 병원에 새롭게 들어 온 백신의 수량과 용해제의 수
2. 사용한 백신과 용해제의 수, 폐기된 백신과 용해제의 수, 손상이 있는 백신과 용해제의 수
3. 현재 보관하고 있는 백신의 수량과 용해제의 수
4. 우선 사용해야할 백신의 수량과 용해제의 파악
5.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의 파악
6. 주문된 백신의 수량과 용해제에서 반품을 할 수 있는 백신과 용해제의 파악
7. 새롭게 주문을 해야 할 백신의 수량과 용해제의 파악
8. 보건지소 등에 배정한 백신이 반납될 경우 보건지소에서의 보관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백신의 보관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는 그 기록을 바탕으로 제조회사와 연락을 하여 재사용 또는 폐기여부를 결정

항상 유효기간이 가장 적게 남은 백신을 먼저 사용하도록 한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백신을 저장고의 앞쪽으로 옮기고, '우선 사용'이라고 표시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백신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백신 바이알은 원래의 포장 박스에 보관한다.

라. 백신 보관 일지

백신과 용해제의 도착일시, 수량, 인수자 및 점검자의 이름, 도착시의 백신과 용해제의 상태(도착 당시 백신을 보관한 용기의 온도, 백신의 손상 등), 인수한 백신의 이름, 각각의 백신의 회사이름, 백신의 종류(1인회용 백신, 다인용 백신, 프리필드 백신), 백신 제조번호(lot number), 각각 제조번호에 따른 유효기간, 인수한 백신의 수, 사용, 폐기, 손상이 된 백신의 수와 남은 수가 포함이 되도록 한다.

마. 백신 사용일지

매일 사용, 폐기, 손상이 된 백신의 수를 기록한다.

IV 백신 보관시 점검 사항

가. 백신과 용해제의 보관

1. 백신 종류에 따른 특성

- 1) 사백신은 열과 냉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 되지 않으면 백신의 역가가 떨어진다. 잘못 보관된 백신은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으므로 백신 보관 온도를 항상 권장 온도 범위에서 유지시킨다.
-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Human papilloma virus, HPV), 홍역, 볼거리, 풍진 혼합백신(Measles, Mumps, Rubella, MMR), 로타바이러스 백신(Rotavirus), 수두백신(Varicella) 등은 빛에 굉장히 민감하므로 보관에서 접종 시 까지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홍역, 볼거리, 풍진 혼합백신, 로타바이러스 백신, 수두 백신은 보관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쉽게 백신이 손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동결건조 백신과 용해제

- 1) 동결건조 백신은 백신의 일반적인 원칙, 즉 2~8℃에서 보관이 되어야 하고 온도 변화의 안정성을 위하여 5℃에 보관이 되도록 한다.
- 2) 용해제는 상온이나 냉장고 보관이 다 가능하며 냉장고에서는 백신과 달리 냉장고 문에서도 보관이 가능하다. 동결건조 백신 접종 시 백신회사에서 제공한 용해제만을 사용해야 하므로 백신과 용해제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 3) ActHIB[®] 같은 백신은 용해제를 백신과 같이 보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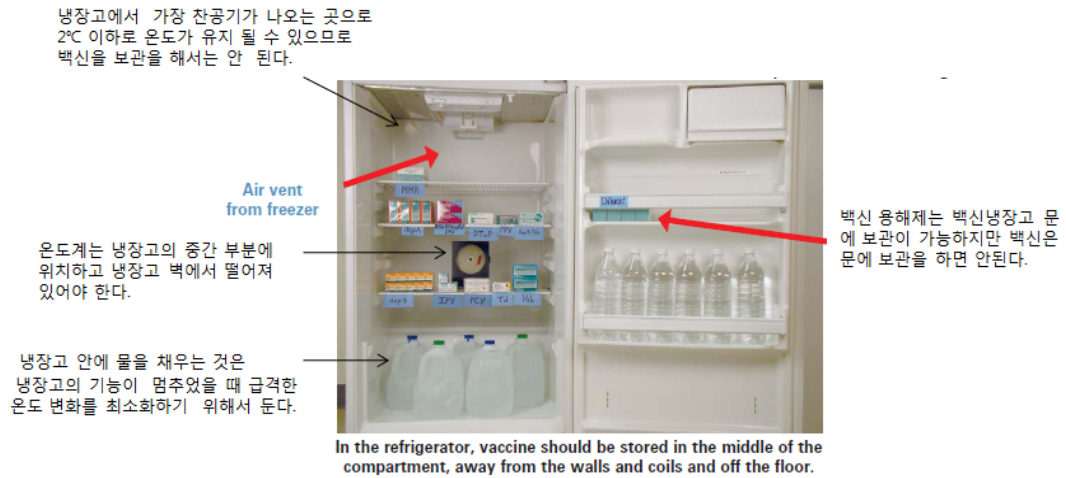
3. 백신에 용해제 혼합 후 백신 사용

백신 회사가 권장한 시간 내에 접종을 해야 하며, 가능하면 혼합 후 즉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미리 예상을 해서 혼합을 하지 말고, 접종을 받을 사람이 왔을 때 접종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 접종을 받을 백신을 확인한 후, 백신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혼합을 시작한다. 이때 혼합을 할 때는 동결건조 백신 내용물이 용해제에 잘 녹도록 충분히 흔들어 주어야 한다.

4. 백신 보관 시 백신의 냉장고에서 위치, 보관 시 주의사항들

- 1) 냉장고 구조상 바닥면에는 모터가 있어 온도가 높게 유지될 수 있으며, 냉장고 상단부에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팬이 있어 찬바람이 많이 나와 냉장고에서 온도가 가장 낮다. 따라서 냉장고의 온도가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므로 온도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냉장고 공간에서 중간에 백신을 두는 것이 가장 좋고, 거기에 온도계를 두어서 냉장고 온도가 2~8℃, 가장 안정적으로는 5℃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 2) 백신을 냉장고 벽에 너무 가까이 두게 되면 냉장고 벽의 온도에는 냉매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냉장고 벽에서 10cm를 띄워서 보관한다.
- 3) 백신은 백신 종류별로 정리를 해야 하며, 같은 종류의 백신들을 작은 상자에 넣어서 보관을 하도록 한다.
- 4) 백신이 정리된 후 백신마다 백신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기 좋게, 편리하게, 혼돈이 없도록 한다. 특히 같은 백신이 성인용, 소아용으로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위치에 두지 말고 따로 두어서 사용함에 있어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 5) 다인용 백신은 첫 사용시간을 백신에 기입을 하여 유효기간 이후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6) 백신의 위치는 유효기간 순서대로, 즉 새롭게 들어오는 백신이 가장 뒤에 위치하도록 한다.
- 7)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Human papilloma virus, HPV), 홍역, 볼거리, 풍진 혼합백신(Measles, Mumps, Rubella, MMR), 로타바이러스 백신 (Rotavirus), 수두백신(Varicella) 등 생백신은 빛과 열에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를 요한다.

- 8) 어떠한 경우에도 백신은 냉장고 문에 두어서는 안 된다.
- 9) 냉동고에 아이스 팩을 넣어두고, 냉동고에 물병을 넣어두면 냉장고 고장, 전원의 문제 등으로 냉장고가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냉장고 내의 온도의 변화를 최소화 해준다. 아이스팩은 냉동고 벽을 따라서, 혹은 문에 보관할 수 있으며, 물병은 냉장고 아랫부분과 문에 보관할 수 있다.
- 10) 다인용 백신은 사용을 시작할 때 백신에 사용 시작 날짜를 쓰고 유효기간이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BCG 피내용 백신은 개봉 후 4시간 이내 사용, 일본뇌염 사백신은 당일 사용이 원칙이므로 해당 시간이 경과한 후 백신을 재사용해서는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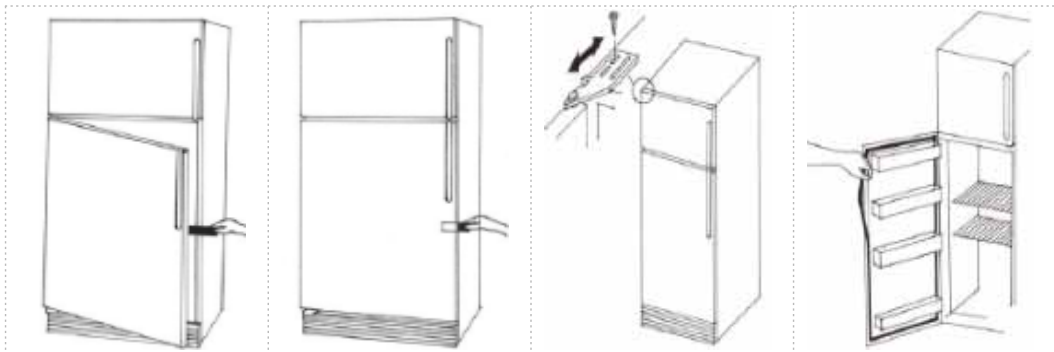
〈그림 3〉 백신은 냉장고에서 온도 변화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중간에 두며 냉장고 벽과는 10cm를 띄운다. 백신은 각각의 백신명이 적힌 작은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 사용하는데 혼돈이 없도록 한다.

나. 냉장고 내부온도 점검

- 하루에 2회, 일과 시작 직전, 일과를 마친 후 점검을 하여 기록 하며, 기록을 할 때 냉장고 문이 완전히 닫혀 있는 지, 냉장고 문과 본체 사이의 공간에 새는 것이 없는지 고무로 된 도어가스켓을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한다. 일과 중에도 책임자는 수시로 온도를 점검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림 4〉 냉장고의 온도는 하루에 최소한 2회 기록을 하며, 온도 점검 시 냉장고 문의 가스킷이 새는가를 동시에 확인한다.



〈그림 5〉 냉장고 문의 가스킷이 새는지 여부와 문의 경첩, 냉장고 문의 기울기 등을 점검한다.

- 사용 중 냉장고 온도가 권장 온도를 벗어나는 경우 백신 보관 책임자에게 알려서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냉장고 청소

1. 냉장고 코일과 모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냉장고에 있는 코일과 모터를 청소를 해주는 것이 냉장고의 기능향상, 고장방지, 냉장고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 부드러운 천이나 솔,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청소를 해주면 된다. 이 청소기간은 수 분간이므로 청소기간 동안 굳이 백신을 다른 곳에 옮길 필요는 없다.

2. 냉장고 내부 청소

한 달에 한 번 세균이나 진균 증식을 억제하게 위하여 냉장고 내부를 청소를 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미리 준비해둔 아이스 팩과 아이스박스 등에 백신을 옮긴 후 청소를 해야 한다. 백신을 옮긴 후 역시 온도 점검은 계속 해야 한다.

냉장고 전원을 끈 후에 내부 공간을 따뜻하고 약한 비눗물로 닦고 물로 다시 닦아내고 건조 시킨다. 건조가 다되면 다시 전원을 켜 후 온도 유지를 확인 후 백신을 다시 냉장고에 집어넣는다.



V 백신 보관 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치사항들

가. 취해야 일반적인 조치사항들

1. 먼저 백신 보관 책임자 혹은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가 되어야 한다.
2. 백신 냉장고가 있었던 공간의 온도를 측정하고 백신 보관이 얼마동안 잘못 보관이 되었는지를 확인, 백신 냉장고 내부의 온도를 측정 후 기록한다.
3. 이 기록들을 토대로 백신 회사에 연락을 하여 백신의 잘못된 보관 상태를 보고하고 백신이 사용 가능한지를 알아본다.
4. 보관이 잘못된 백신들은 다시 사용여부가 결정될 때 까지는 사용하지 않도록 따로 보관을 하여야 한다.
5. 냉장고 고장에 따른 백신 보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냉동고에 있던 얼음 주머니,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보관한다. 역시 이때에도 백신 보관 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한다.

나. 백신 냉장고의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점검해야 할 것은?

1. 백신 냉장고의 온도가 올라가 있는 경우
 - 1) (전기플러그가 꼽혀 있는가?) 전기 플러그가 콘센트에 정확하게 꼽혀 있는 지를 확인 한다.
 - 2) (냉장고 문은 정확하게 닫혀 있는가?) 냉장고 문이 실수로 열려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 3) (냉장고 문의 도어가스킷의 문제) 도어가스킷이 노후가 되어서 새는 것이 아닌지를 확인한다.
 - 4) (온도계 위치) 온도계의 위치가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온도가 실제 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다.
 - 5) 자동온도 조절 장치의 스위치를 확인하여 실제 온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면 온도를 낮추고 30분 동안 온도를 점검한다.

- 6) (냉장고가 있는 방안의 온도가 너무 높지 않는지?) 온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면 환기를 시킨다.
- 7) (냉장고 코일에 먼지가 있는지?) 확인 후 먼지가 있으면 진공청소기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먼지를 제거할 때는 냉장고 스위치를 끈 후 냉장고에 있는 백신들을 다른 냉장고, 아이스박스에서 2-8℃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냉동이 필요한 백신은 아이스박스에 드라이아이스를 넣은 후에 일시적으로 보관한다. 이후에 코일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다시 냉장고에 백신을 넣기 전에 냉장고 온도가 잘 유지가 되는 지를 30분 동안 관찰 후 재사용을 한다.

2. 백신 냉장고의 온도가 내려가 있는 경우

- 1) (온도계 위치) 온도계의 위치가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온도가 실제 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다.
- 2) 자동온도 조절 장치의 스위치를 확인하여 실제 온도가 낮다고 판단이 되면 온도를 올리고 30분 동안 온도를 점검 한다.

3. 백신 냉장고가 소리가 많이 날 때

- 1) 냉장고에서 소리가 나는 것인 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소리가 나는 지를 먼저 확인한다.
- 2) 냉장고의 코일 부분이나 이음새 부분에서 소리가 나는 지 확인을 하고 혹시 이음새 부분에 나사가 풀어져 있는 지도 확인한다.

4. 백신 냉장고가 멈추었을 때

- 1) (전기플러그가 잘 꼽혀 있는가?) 전기 플러그가 콘센트에 정확하게 꼽혀 있는지 확인한다.
- 2) 자동온도조절 장치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백신 냉장고의 문에 이상이 있을 때 조치는?

백신 냉장고 문에는 고무로 된 도어가스킷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종이를 이용하여 도어가스킷과 문 사이의 밀폐정도를 확인한다. 만약 밀폐정도를 확인 후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교환 조치를 하도록 한다.

백신 문의 경첩이 잘못 고정되면 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못하고, 도어가스킷 기능도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온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문의 기울기, 문을 닫았을 때 문의 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라. 온도계의 문제

표준온도계의 보정이 잘 되었는지, 백신 냉장고 안에서 온도계 위치를 다시 확인 한다.

마. 일과 중 갑자기 냉장고가 멈춘 경우, 일시적인 이상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1. 즉시 냉장고 회사에 연락을 하여 고장의 원인을 찾는다.
2. 가능하면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 냉장고 온도만을 확인을 한 후 냉장고가 멈춘 시간, 현재 냉장고의 온도 등을 기록한다.
3. 백신 상태를 백신 공급회사와 상의하여 재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4. 만약 냉장고의 온도가 유지는 되지만 냉장고의 기능이 금방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 백신 공급업체로 백신을 이송한다. 미리 준비해 둔 얼음주머니,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백신을 옮기는 것이 좋다.
5. 일시적인 정전으로 인한 냉장고의 기능이 정지 된 경우에는, 곧 전원이 들어올 것이 예상이 되면 백신 냉장고 문을 가급적 열지 말고 온도 측정을 하면서 경과를 본다. 만약 백신 냉장고 온도의 변화를 확인을 할 수 없다면 문을 열지 말고 백신 냉장고가 있었던 방안의 온도, 냉장고가 이상이 있었던 시간, 다시 전원이 들어와서 냉장고를 열었을 때의 온도를 기록한다. 만약 냉장고 이상이 확인이 되는 동안 백신 보관의 권장 온도를 벗어날 때에는 즉시 백신들을 비상 보관을 할 수 있는 얼음을 채운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보관한다.

6. 백신들을 비상 보관을 한 경우에는 백신 냉장고 안의 온도, 백신 냉장고가 있던 방안의 온도, 백신 냉장고가 다시 작동할 때 까지의 시간, 비상 보관 시의 온도와 시간 등을 기록한 후 백신회사와 상의하여 백신 재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바. 주말동안 정전이 되었거나 출근을 해보니 정전이나 냉장고 기능 이상이 발견된 경우, 부적절한 백신 보관의 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

1. 마지막으로 점검한 백신 냉장고 온도, 측정한 시간, 발견 당시의 백신 냉장고의 온도와 시간, 백신 냉장고가 있었던 곳의 온도 등을 기록한다.
2. 이상이 있었던 백신 보관 기록을 토대로 백신을 공급한 업체와 상의 하여 재사용여부를 결정한다.
3. 보관에 이상이 있었던 백신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재사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보관이 될 수 있는 다른 냉장고 또는 얼음을 채운 아이스박스 등에 보관한다.

대부분 백신은 일시적인 온도 상승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생백신은 손상을 쉽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문제라도 보관상의 문제는 백신을 공급한 회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부 록〉

Ⅲ. 예방접종 관련 정보 안내

1. 어린이 표준예방접종 일정표(2017)	179
2. 백신의 보관관리	180
3. 백신 접종법	182
4. 각 백신별 최소접종 간격	184
5. 미접종 소아의 예방접종 일정표	185
6.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186
7.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기준	187
8. 국내 유통 백신 현황(2016.12.5. 기준)	190



어린이가 건강할 댜대한민국

표준예방접종일정표 (2017)

대상 연령별	백신종류 및 방법	회수	1개월 이내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19~23개월	24~35개월	만4세	만5세	만6세	만7세	만11세	만12세
생애	BCG(백일해)	1	BCG(백일해)													
태생간접	HepB	3	HepB 1회	HepB 2회	HepB 3회											
다문화가족 대상자 백일해	DTap	5	DTaP 1회	DTaP 2회	DTaP 3회	DTaP 4회										
홍역	Td / Tdap	1														7~12살(1회)
홍역	IPV	4	IPV 1회	IPV 2회	IPV 3회	IPV 4회										7~12살(1회)
신장세포바이러스 인플루엔자	FRP-T / HBCC	4	FRP-T 1회	FRP-T 2회	FRP-T 3회	FRP-T 4회										
폐렴구균	PCV(단백질접종)	4	PCV 1회	PCV 2회	PCV 3회	PCV 4회										
백해구균	PPSV(단백질)	-														
중개 유형 유형 유형 유형	MMR	2														
수두	Var	1														
사포신	HepA	2														
일본뇌염	JEV(사백신)	5														
일본뇌염	LJEV(생백신)	2														
사상무증바이러스	HPV 2 / HPV 4	2														
인플루엔자	IIV(사백신)	-														
인플루엔자	LAV(생백신)	-														
기타 예방 백종	BCG(생백신)	1														
폴리오미아스	RV1	2														
폴리오미아스	RV5	3														

* 1회 접종은 2회 접종을 의미합니다. 2회 접종은 1회 접종을 받은 후 2~4개월 후에 접종합니다.
 * BCG: 1회 접종만 실시하며, 2회 접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2회 접종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입니다.)
 * 홍역: 1회 접종만 실시하며, 2회 접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2회 접종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입니다.)
 * DTaP: 1회 접종만 실시하며, 2회 접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2회 접종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입니다.)
 * Td / Tdap: 1회 접종만 실시하며, 2회 접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2회 접종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입니다.)
 * IPV: 1회 접종만 실시하며, 2회 접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2회 접종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입니다.)
 * FRP-T / HBCC: 1회 접종만 실시하며, 2회 접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2회 접종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입니다.)
 * PCV(단백질): 1회 접종만 실시하며, 2회 접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2회 접종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입니다.)
 * PPSV(단백질): 1회 접종만 실시하며, 2회 접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2회 접종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입니다.)
 * MMR: 1회 접종만 실시하며, 2회 접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2회 접종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입니다.)
 * Var: 1회 접종만 실시하며, 2회 접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2회 접종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입니다.)
 * HepA: 1회 접종만 실시하며, 2회 접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2회 접종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입니다.)
 * JEV(사백신): 1회 접종만 실시하며, 2회 접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2회 접종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입니다.)
 * LJEV(생백신): 1회 접종만 실시하며, 2회 접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2회 접종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입니다.)
 * HPV 2 / HPV 4: 1회 접종만 실시하며, 2회 접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2회 접종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입니다.)
 * IIV(사백신): 1회 접종만 실시하며, 2회 접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2회 접종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입니다.)
 * LAV(생백신): 1회 접종만 실시하며, 2회 접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2회 접종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상입니다.)



백신의 보관관리

1 백신의 보관

백신의 취급 및 보관을 소홀히 하게 되면 면역원성이 떨어지거나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접종 시행기관에서는 백신의 취급과 보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 백신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사항 ::

● 백신 인수 시 확인 사항

- 주문백신의 수량과 백신의 손상여부를 확인합니다.
- 백신의 상표가 훼손 된 경우, 백신병이나 주사기에 금이 간 경우에는 백신을 교환합니다.
- 백신수령 시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 원본**을 제출 받아 **2년간 보관**합니다.
 ※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판매관리규칙 제6조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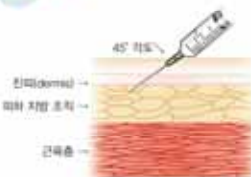
● 백신보관냉장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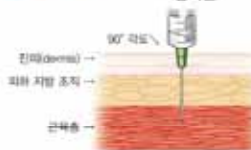
백신 접종법

2 예방접종 방법

피하주사 주사부위 : 상두근 바깥쪽 상부



근육주사 주사부위 : 대퇴부 전외측과 상지근



3 백신의 투여 용량 및 투여 방법

백신종류	종류	제조업체	제명명	용량	경로	접종부위
결핵	예방접종 백신	(주)한국세라믹	피하용 건조 비사지백신 에스제스라이프주	1세 미만 0.25ml	피하주사	상지근 부위
		(주)한국백신	피하용 건조 BCG 백신	1세 이상 0.1ml		
유행성홍역	예방접종 백신	(주)한국백신	결핵용 건조 BCG 백신	제용실용서	결핵주사	제용실용서 침주
		한림백신(주)	백아백스			
DTaP	활형성화 백신	(주)한국백신	활형성화 DTaP 백신	11세 미만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상지근
		(주)보령아이오과	보령디프테리아백신	11세 이상 1.0ml		
Tdap	활형성화 백신	(주)한국백신	활형성화 Tdap 백신	0.5ml	근육	대퇴부전외측 또는 상지근
		(주)보령아이오과	보령디프테리아백신			
Tb	활형성화 백신	(주)한국세라믹	피하용 건조 비사지백신 에스제스라이프주	0.5ml	근육주사	상지근
		(주)한국백신	결핵용 건조 BCG 백신			
폴리오	활형성화 백신	(주)한국세라믹	다피부 스카우트백신	0.5ml	근육주사	상지근
		(주)한국백신	다피부 스카우트백신			
DtaP-IPV	활형성화 백신	(주)한국세라믹	다피부 스카우트백신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상지근
		(주)한국백신	다피부 스카우트백신			
9val 헤르페스	활형성화 백신	(주)한국세라믹	다피부 스카우트백신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상지근
		(주)한국백신	다피부 스카우트백신			
제임구균 (13가)	활형성화 백신	(주)한국세라믹	다피부 스카우트백신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상지근
		(주)한국백신	다피부 스카우트백신			
제임구균 (23가)	활형성화 백신	(주)한국세라믹	다피부 스카우트백신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상지근
		(주)한국백신	다피부 스카우트백신			
MMR	예방접종 백신	(주)한국세라믹	다피부 스카우트백신	0.5ml	피하주사	상지근 부위
		(주)한국백신	다피부 스카우트백신			
수두	예방접종 백신	(주)한국세라믹	다피부 스카우트백신	0.5ml	피하주사	상지근 부위
		(주)한국백신	다피부 스카우트백신			
일본뇌염	활형성화 백신	(주)한국세라믹	다피부 스카우트백신	0.5ml	피하주사	상지근 부위
		(주)한국백신	다피부 스카우트백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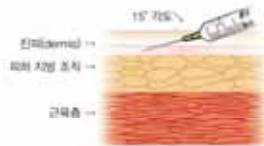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영아 : 대퇴부전외측의 대퇴사두부근
· 소아와 성인 : 상완의 삼각근



피내주사 주사부위 : 상완의 삼각근



백신명	부위	제조업체	적용량	Dose	종류	접종부위
A형간염	불활성화 백신	글락소스미스클라(인구)	허브릭스	19세 미만 0.5ml, 19세 이상 1.0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사노피파스티르(구)	아막실800스마를 아막실1600성인용	16세 미만 0.5ml/800 UL, 16세 이상 0.5ml/1600 UL		
사상유두종 바이러스(HPV)	불활성화 백신	한국VGD제	백다	19세 미만 0.5ml, 19세 이상 1.0ml	근육주사	삼각근
		한국VGD제	가다실 가다실9	0.5ml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글락소스미스클라(인구)	사버릭스	3세 미만 0.25ml, 3세 이상 0.5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동아제약	백스플루			
		SK제약	스카이플루루 스카이플루루4가			
		한국노바티스(구)	이그리플드 스마플드그리플			
		한독	플루어드			
		한독	지비플루			
		(주)노원제약(오리파)	제비플루독트라이플인트 보형플루백신V			
		(주)LG생명과학	보형플루백신4가 보형플루백신4가 보형플루백신4가 올부플루스티에프			
		(주)한국백신	코백스플루 코백스인플루 올부AA코백스			
		사노피파스티르(구)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코백스			
영지쿠스	불활성화 백신	(주)노원제약(오리파)	지코티드	0.5ml	근육/피하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신영후궁출혈열	불활성화 백신	(주)한독	한타백스	0.5ml	근육/피하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대퇴부 외측 또는 상완외측면
보타니아이스	학독화 생백신	글락소스미스클라(인구)	보타릭스	1.5ml	경구투여	경구
수막구균	불활성화 백신	한국VGD제	공리제	2.0ml	근육주사	대퇴부전외측 또는 삼각근
		글락소스미스클라(인구)	엔시오	0.5ml		
대상포진	학독화 생백신	한국VGD제	로스타릭스	0.65ml	피하주사	상완외측면

각 백신의 최소 접종간격¹⁾

종류	백신	최종 접종시기	최소 연령	다음 접종 간격	다음 접종 최소 접종간격
B형간염	B형간염(1차)	출생시	출생시	1개월	4주
	B형간염(2차)	생후 1개월	생후 4주	5개월	8주
	B형간염(3차) ²⁾	생후 6개월	생후 24주	-	-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2개월	4주
	DTap(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2개월	4주
	DTap(3차)	생후 6개월	생후 14주	6-12개월	6개월 ³⁾
	DTap(4차)	생후 15-18개월	생후 12개월	3년	6개월
성인용 디프테리아 파상풍	Td	만 4-6세	만 4세	-	-
성인용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Tdap	만 11-12세	만 7세	10년	5년
유킴오(불활성화 백신)	IPV(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2개월	4주
	IPV(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2-14개월	4주
	IPV(3차)	생후 6-18개월	생후 14주	3-5년	6개월
	IPV(4차)	만 4-6세	만 4세	-	-
5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5가수막열 백신)	Hib(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2개월	4주
	Hib(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2개월	4주
	Hib(3차)	생후 6개월	생후 14주	6-9개월	8주
	Hib(4차)	생후 12-15개월	생후 12개월	-	-
폐렴구균	단백결합(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8주	4주
	단백결합(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8주	4주
	단백결합(3차)	생후 6개월	생후 14주	6개월	8주
	단백결합(4차)	생후 12-15개월	생후 12개월	-	-
	23가 다당(1차)	-	만 2세	5년 ⁴⁾	5년
	23가 다당(2차)	-	만 7세	-	-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1차)	생후 12-15개월 ⁵⁾	생후 12개월	3-5년	4주
	MMR(2차)	만 4-6세	생후 13개월	-	-
수두 ⁶⁾	Varicella	생후 12-15개월	생후 12개월	4주 ⁷⁾	4주 ⁸⁾
	MMR(2차)	만 4-6세	생후 13개월	-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1차)	생후 12-23개월	12개월	7-30일	7일
	불활성화 백신(2차)	생후 12-23개월	12개월	12개월	6개월
	불활성화 백신(3차)	생후 24-35개월	18개월	3-4년	2년
	불활성화 백신(4차)	만 6세	만 5세	-	-
	불활성화 백신(5차)	만 12세	만 11세	-	-
	약독화 생백신(1차)	생후 12-23개월	12개월	12개월	1개월
	약독화 생백신(2차)	생후 24-35개월	24개월	-	-
A형간염	A형간염(1차)	생후 12-23개월	생후 12개월	6-18개월	6개월
	A형간염(2차)	생후 18개월	생후 18개월	-	-
사할유두종바이러스 ⁹⁾	HPV(1차)	만 11-12세	만 9세	2개월	4주
	HPV(2차)	만 11-12세(+2개월)	만 9세(+4주)	4개월	12주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¹⁰⁾	생후 6개월 이상	생후 6개월	1개월	4주
	약독화 생백신	생후 24개월-49세	생후 24개월	1개월	4주
로타바이러스 ¹¹⁾	1차	생후 2개월	생후 6주	2개월	4주
	2차	생후 4개월	생후 10주	2개월	4주
	3차	생후 6개월	생후 14주	-	-

● 혼합 백신(combination vaccine) 사용이 가능하다. 허가받은 혼합 백신 사용이 각 성분의 개별 접종보다 안전하다(COCC, Combination vaccines for childhood immunization: recommendations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nd the 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 MMRV Recombin Part, 100000000-001-001, 혼합 백신을 투여할 때 최소 연령은 각 성분 백신 중 가장 높은 연령이다. 혼합백신을 투여할 때 최소 접종간격은 각 성분 백신의 최소 접종간격 중 가장 큰 것이다.

● B형간염 백신 3차 접종은 3차 접종 2주 이후에, 1차 접종 1주 이후에 접종하여야 한다. 또한 3차 접종은 생후 36주 이전에 해야 하는 것이다.

● 1차 3차 접종과 4차 접종 사이에 권장되는 최소 간격은 6개월 이상이다. 그러나 1차 3차 접종 4개월 후에 4차 접종을 하였다면, 4차 접종을 안착할 필요는 없다.

● 2차 4차 백신 3차 접종은 종종 폐렴구균 감염증의 예방이 높은 경우와 폐렴구균 예방 약기의 급속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 권장된다.

● 홍역 유행이 있고, 생후 12개월 이전의 예방접종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생후 9개월 이상의 연령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그러나 생후 12개월 이전에 접종하는 백신은 높은 접종률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는다(COCC, Measles, mumps, and rubella vaccine use and considerations for elimination of measles, mumps, and rubella disease and control of mumps: recommendations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MMRV Recombin Part, 100000000-001-001).

● 1개월-1년에 2번의 소아는 수두 백신 1회 접종으로 충분하다. 1회 이상인 경우 4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접종하여야 한다.

● HPV 4가 백신은 9-16세의 남성 및 여성에게 허가되어 있고, 9-11주 2차 백신은 9-16세의 여성에게 허가되어 있다. 3차 접종은 최소 연령은 초회 접종과 최소 연령에 따라 다르며 1차 접종 및 2차 접종간의 최소 접종간격은 5개월이다. 초회 접종 이후 최소 5주가 지나야 2차 접종할 수 있다. 3차 접종은 언제든 필요 없다. 4가 백신은 9-16세 소아 2차 백신은 9-16세의 소아에게 6개월 간격 2회 접종으로 완료할 수 있다.

● 9세 이전의 소아에게 인플루엔자 백신을 처음으로 접종하는 때에는 최소한 4주 이상의 간격으로 두 차례 접종하며, 다음 해부터는 1회 접종한다. 이전에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은 적이 있는 6개월-9세 소아들도 유행기에 따라서는 2회 접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 열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에는 참고한다.

● 로타바이러스의 초회 접종은 생후 6주에서 14주 사이에서 투여되어야 한다. 생후 12주 이상의 유아에게 투여해서는 안된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생후 9개월 이상의 유아에게 투여되어서는 안된다. 1가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경우로는 2회 접종하며 3차 접종은 필요하지 않다.

[자료 출처: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pidemiology and Prevention of Vaccine-Preventable Diseases, Hershkovitz J, Hooge A, Waks S, eds. 10th ed. Washington DC: Public Health Foundation, 2016.]



미접종 소아의 예방접종 일정표



○ 지연시 예방접종(4개월~6세)

접종백신	최초 접종연령	1~2차 최소 접종간격	2~3차 최소 접종간격	3~4차 최소 접종간격	4차와 최소 접종간격
▶▶▶	출생시	4주	8주(1차접종 16주 후)	-	-
DTP ^a	생후 6주	4주	4주	6개월	6개월*
PV ^b	생후 6주	4주	4주	6개월(마지막 총량의 최소 연령은 4세)	-
Hb ^c	생후 6주	4주: 만 12개월 이전에 1차 접종한 경우	4주: 현재 연령이 만 12개월 미만이고 1차 접종을 7개월 이내에 받은 경우	8주(마지막 접종) : 만 12개월 이전에 3번의 접종을 한 경우 12개월~만 5세 소아만 필요	-
		8주(마지막 접종) : 만 12~14개월 사이에 1차 접종을 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만 15개월 이후에 1차 접종을 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 만 12~14개월 사이에 1차 접종을 한 경우 현재 연령이 만 12개월 미만이고 1차 접종을 7~11개월에 받은 경우, 또는 현재 연령이 만 12~59개월이 1차 접종을 12개월 미만에서 받고 두 번째 접종을 15개월 이내에 받은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이전 접종을 만 15개월 이상에서 한 경우		
PCV ^d	생후 6주	4주: 만 12개월 이전에 1차 접종한 경우	4주: 현재 연령이 만 12개월 미만이며 이전 접종을 7개월 이내에 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 만 12개월 이전에 3번의 접종을 한 경우 8~11개월에 한 경우 (최소 12개월 이후에 접종), 또는 현재 연령이 만 12개월 이상이며 1회 이상 12개월 이내에 접종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건강한 소아로 이전 접종을 만 24개월 이후에 한 경우	-
		8주(마지막 접종) : 건강한 소아로 만 12개월 이후에 1차 접종을 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건강한 소아로 1차 접종을 PCV13으로 24개월 이후에 한 경우	8주(마지막 접종) : 건강한 소아로 이전 접종을 7~11개월에 한 경우 (최소 12개월 이후에 접종), 또는 현재 연령이 만 12개월 이상이며 1회 이상 12개월 이내에 접종한 경우		
MMR ^e	생후 12개월	4주*	-	-	-
수두 ^f	생후 12개월	-	-	-	-
일본뇌염활성화백신 ^g	생후 12개월	7일	6개월	2년	-
일본뇌염생백신 ^h	생후 12개월*	4주	-	-	-
A형간염 ⁱ	생후 12개월	6개월	-	-	-
호파바이러스 ^j	6주	4주	(8주)	-	-

* 지연된 예방접종이란 권장 접종시기를 1개월을 초과하여 접종을 한 경우임. 접종이 지연되었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접종하지 않고 지연된 접종부터 접종을 함

- ▶▶▶ : 백신이 3회 접종을 최소 연령 36주임
- ▶▶▶ : 4차 접종이 만 4세 이후에 접종되었다면 5차 접종은 생략
- ▶▶▶ : 3차 접종이 만 4세 이후에 접종되었다면 4차 접종은 생략
- ▶▶▶ : 만 5세 이상의 소아에서는 권장하지 않음
- ▶▶▶ : 만 5세 이상의 소아에서는 일반적으로 권장하지 않음
- ▶▶▶ : 2차 접종이 표준 접종 시기는 만 4~6세지만 용역이 유행할 경우 상기 최소접종간격으로 접종할 수 있음
- ▶▶▶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 3차 접종을 5세 이후에 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추가접종을 하지 않음
- ▶▶▶ : 일본뇌염 생백신 : 국내에서는 12개월부터 접종하나 해외에서는 '역학적 생백신은 6개월부터, 제조할 지역의 바이러스 백신은 9개월에 접종을 추천함
- ▶▶▶ : 접종 간격은 제품에 따라 6~8개월이며, 접종받지 않은 3세 이상 소아는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 ▶▶▶ : 호파바이러스 : 첫 접종이 최대 연령인 14주 0일이며, 만 2세 이후에는 접종을 시작하지 않음. 접종할 수 있는 최대 연령은 6개월 0일이며, Revacc:는 2회, Revacc2:는 3회 접종함

○ 지연시 예방접종(7세~18세)

접종백신(초연령)	최초 접종연령	1~2차 최소 접종간격	2~3차 최소 접종간격	3차~추가 최소 접종간격	
Tdap ^a	7세	4주	4주: DTap 첫접종을 12개월 이내에 받은 경우 8개월(마지막 접종): DTap 첫 접종을 12개월 이후에 받은 경우	6개월~첫 접종을 12개월 이내에 받은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b	9세	경각접종 간격을 지킨다			
A형간염	-	6개월	-	-	
B형간염	-	4주	8주 및 1차 접종 최소 16주 후	-	
PV ^c	-	4주	4주	-	
MMR	-	4주	-	-	
수두 ^d	-	4주	-	-	

- ▶▶▶ : 3차 접종 중 1회는 Tdap 백신으로 접종
- ▶▶▶ : 1차 백신은 9~14세 소아, 2차 백신은 9~14세의 소아에게 6개월 간격 2회 접종으로 권유될 수 있음
- ▶▶▶ : 물리우 : 만 8세 이상에서 물리우 접종을 권장하며 권장하지 않음
- ▶▶▶ : 수두 : 9세 이상이면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 종류와 접종 시작 연령에 따른 권장 접종일정

백신의 종류	초기 접종 연령	기초 접종 회수 및 간격	추가 접종 시기
PRP-T 또는 HBOC	생후 2~6개월	3회, 2개월 간격	생후 12~15개월 ¹⁾
	생후 7~11개월	2회, 2개월 간격	생후 12~15개월 ¹⁾
	생후 12~14개월	1회 ²⁾	2개월 후
	생후 15~59개월	1회 ³⁾	-

- 이전 접종 후 최소한 2개월 후
- 고위험 환자 중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소아는 5세 이상에도 접종한다.
- 침습성 1차 감염에 위장성이 높은 소아일, 즉,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음막상피질구, 비장 질환을 후, 항암치료에 따른 면역저하, HIV 감염, 초기 포스 보체결핍증, 특히 UGT 1A1 결핍 등의 세제면역결핍질환 환자에서는 연령에 따라 1~3회 접종한다(2회 접종 시 2개월 간격).

●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 종류와 접종당시 월령에 따른 접종일정

백신의 종류	첫 번째 접종시 월령	기초접종 ¹⁾	추가접종 ²⁾ 시기 및 회수
PCV10	생후 2~6개월	3회	생후 12~15개월에 1회
	생후 7~11개월	2회	생후 12~15개월에 1회
	생후 12~59개월	2회	-
PCV13	생후 2~6개월	3회	생후 12~15개월에 1회
	생후 7~11개월	2회	생후 12~15개월에 1회
	생후 12~23개월	2회	-
	생후 24~59개월(건강한 소아)	1회	-
생후 24~71개월 (침습 폐렴구균 질환에 대한고위험군 ³⁾)	2회	-	

- 1세 이전에 접종 시 최소 접종간격은 4주, 그 이후의 최소 접종간격은 8주일, 최소 접종연령은 생후 6개월
- 이전 접종으로부터 최소 6주의 간격을 두고 접종함
-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자에 대한 소아침습성³⁾ 참고

●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서 폐렴구균 백신 접종의 대상이 되는 기저질환들)

위험군	상 환
중상연역 소아청소년	만성 심장 질환 ¹⁾ , 만성 폐 질환 ²⁾ , 당뇨병, 뇌척수액 누출, 인공와우 이식 상태, 만성 간 질환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음 소아청소년	결상구 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무비음 또는 비장 기능장애
면역저하 소아청소년	HIV 감염증, 만성 신부전과 신증후군, 면역억제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질환(악성 종양, 백혈병, 림프종, 호지킨병) 또는 그릴 장기 이식 신천성 면역결핍질환 ³⁾

- 특히 선천성 혈액 이상과 관련된
- 고혈압의 소아환자들도 광구로 복용하는 항신혈지질 약물함
- 1차원(제1형) 또는 2차원 결핍증, 보체결핍증(특히 C1, C2, C3 및 C4 결핍증), 황색구 질환(만성 육아종 질환은 제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기준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

예방접종 종류	이상반응의 범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비씨지(BCG)	1. 림프절 종창(지름 1.5cm 이상)	1년 이내
	2. 골염, 골수염	6개월 이내
	3. 전신 파종성 비씨지 감염증	6개월 이내
	4. 국소 이상반응	6개월 이내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6. 제1호부터 제5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B형간염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폴리오(주사용)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디티에이피(DTaP), 티디(Td), 티덱(Tdap), 디티에이피-아이피브이 (DTaP-IPV)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상완신경총 말초신경병증	28일 이내
	4.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5.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6. 제1호부터 제5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엠엠알(MMR)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21일 이내
	3.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7-30일
	4. 만성 관절염	42일 이내
	5.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예방접종 종류	이상반응의 범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6.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7. 제1호부터 제6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일본뇌염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수두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뇌염, 뇌증	7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폐렴구균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인플루엔자*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상완신경총 말초신경병증	28일 이내
	3.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5. 제1호부터 제4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A형간염*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예방접종 종류	이상반응의 범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1. 아나필락시스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7일 이내
	3. 그 밖에 접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기한 없음
	4. 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기한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별표3)

*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고시(별표)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

국내유통백신현황(2016. 12. 5. 기준)

백신종류	분류	제조수입사	제품명	포장단위	유효기간	제조방법	원액		판매사	허가일	비고
							제조사	제조국			
BCG(피내)	생백신	(주)엑세스파마	피내용건조비씨백신에스에스아이주	1.0ml/vial	18개월	완제품수입	StatensSeruminstitut	덴마크	자사	2003-09-29	
		(주)한국백신	피내용건조BCG백신	1ml/ampule	24개월	완제품수입	BCGLaboratory	일본	자사	2016-03-23	
		(주)한국백신	경피용건조BCG백신	12mg/ampule	24개월	완제품수입	BCGLaboratory	일본	자사	1993-01-12	
B형간염 (유전자 재조합)	사백신	안센백신(주)	헤파박스-진티에프주	0.5, 1.0ml/vial	36개월	국내제조	안센백신	한국	녹십자	2004-06-31	
			헤파박스-진티에프프리필드시린지주	1.0ml/PFS	36개월	국내제조	안센백신	한국	녹십자	2010-08-04	
		SK케미칼(주)	헤파문주	0.5ml/vial	36개월	국내제조	LG생명과학	한국	자사	1998-11-10	
			헤파문프리필드시린지	1.0ml/PFS	36개월	국내제조	LG생명과학	한국	자사	2012-04-24	
DTaP	사백신	(주)LG생명과학	유박스비주	0.5, 1.0ml/vial	36개월	국내제조	LG생명과학	한국	자사	1995-04-24	
			유박스비프리필드주	1.0ml/PFS	36개월	국내제조	LG생명과학	한국	자사	2012-04-24	
		(주)한국백신	정제디피티-코박스	0.5ml/vial	24개월	완액수입제조	비켄	일본	자사	1985-02-07	
			인핀릭스주	0.5ml/PFS	36개월	완제품수입	GSK	벨기에	광동	2002-07-02	
폴리오	사백신	(주)보령바이오과마	보령디피에이(비백신)주	0.5ml/PFS	24개월	완액수입제조	카케츠켄	일본	자사	2014-12-17	
			이모박스폴리오주	0.5ml/PFS	36개월	완제품수입	SanofiPaseurusA.	프랑스	자사	2001-04-06	
		(주)보령바이오과마	아이피박스주	0.5ml/PFS	36개월	완액수입제조	BillrothBiologicals	네덜란드	자사	2007-12-26	
			코박스폴리오PF주	0.5ml/PFS	36개월	완액수입제조	NetherlandsVaccineInstitute	네덜란드	자사	2010-07-26	
DTaP-IPV	사백신	사노피파스트로(주) 글락소미스클라인(주)	테트락심	0.5ml/PFS	36개월	완제품수입	SanofiPaseurusA.	프랑스	자사	2009-08-31	
			인핀릭스IPV주	0.5ml/PFS	36개월	완제품수입	GSK	벨기에	광동	2010-06-10	
Td	사백신	SK케미칼(주)	에스케이티디백신주	0.5ml/PFS	36개월	완액수입제조	GSK	독일	자사	2003-10-21	
			티디퓨어주	0.5ml/PFS	48개월	완제품수입	GSK	독일	보령	2006-11-29	
		(주)엑세스파마	디티부스터에스에스아이주	0.5ml/PFS	36개월	완제품수입	StatensSeruminstitut	덴마크	녹십자	2010-01-07	
Tdap	사백신	사노피파스트로(주) 글락소미스클라인(주)	아다셀주	0.5ml/vial	36개월	완제품수입	SanofiPasteurLimited	캐나다	한독약품	2009-06-22	
			부스터트릭스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36개월	완제품수입	GSK	벨기에	광동/SK	2010-06-09	
MMR	생백신	(주)영광에스디(주) 글락소미스클라인(주)	영광II주	0.5ml/vial	24개월	완제품수입	MSD	미국	SK	1995-07-01	
			프리오릭스주	0.5ml/vial	24개월	완제품수입	GSK	벨기에	광동	1999-08-20	



백신종류	분류	제조·수입사	제품명	포장단위	유효기간	제조방법	원액		판매사	허가일	비고
							제조사	제조국			
일본뇌염	사백신	(주)녹십자	녹십자-일본뇌염백신주	1.0ml/vial	18개월	국내제조	제조사	한국	자사	1999-11-09	
			녹십자-서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0.4, 0.7ml/vial	36개월	원액수입제조	녹십자	일본	자사	2013-10-25	
			보령일본뇌염백신주	1.0ml/vial	18개월	국내제조	가케츠켄	한국	자사	1991-09-12	
			보령세포배양일본뇌염백신주	0.4, 0.7ml/vial	36개월	원액수입제조	가케츠켄	일본	자사	2013-08-09	
수두	생백신	(주)글로백스	씨디.제박스	0.5ml/vial	18개월	원제품수입	ChengduInstituteofBiological Products Co., Ltd.	중국	한국백신	2002-03-07	
			이모젠주	0.5ml/vial	36개월	원제품수입	SanofiPasteurBiologics Co.	미국	자사/SK	2015-04-03	
			수두박스주	0.7ml/vial	24개월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자사	1999-11-09	
			바리-웬백신	0.5ml/vial	18개월	원제품수입	ChangchunkeygenBiologic al Products Co., Ltd.	중국	법랑/한국백신	1995-09-07	
대상포진	사백신	(주)보령바이오파마	조스타박스	0.65ml/vial	18개월	원제품수입	MSD	미국	녹십자	2009-04-17	
			지포티프주	0.5ml/vial	20개월	원액수입제조	ATVO-TEAM	러시아	자사	1992-12-09	
			한타박스	0.5ml/vial	24개월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자사	1990-07-02	
			아티브주	0.5ml/vial	36개월	원제품수입	SanofiPasteurS.A.	프랑스	자사	2002-07-26	
A형간염	사백신	한국엠에스디(주)	클락스스미스클라인(주) 백신합	0.5ml/PFS	36개월	원제품수입	GSK	이태리	광동	2009-03-18	
			유히브주	0.5ml/vial	36개월	국내제조	LG생명과학	한국	자사	2010-08-10	
			하브리크스주	0.5, 1.0ml/PFS	36개월	원제품수입	GSK	벨기에	광동	1997-04-09	
			아박스80스아용주	0.5ml/PFS	36개월	원제품수입	SanofiPasteurS.A.	프랑스	자사	2006-07-18	
수막구균 (단백결합)	사백신	한국엠에스디(주)	아박스1600성인용주	0.5ml/PFS	36개월	원제품수입	SanofiPasteurS.A.	프랑스	자사	2011-11-04	
			박타프리플드시린지	0.5, 1.0ml/PFS	36개월	원제품수입	MSD	미국	SK	2013-04-22	
			박타주	0.5, 1.0ml/vial	36개월	원제품수입	MSD	미국	SK	1998-04-10	
			프리베나13주	0.5ml/PFS	36개월	원제품수입	Pfizer	미국	한국백신/우한양행	2010-03-19	
폐렴구균 (23가단정)	사백신	한국엠에스디(주)	신물로릭스프리플드시린지	0.5ml/PFS	36개월	원제품수입	GSK	벨기에	광동	2010-03-26	
			뉴모-23폐렴구균백신주사	0.5ml/PFS	24개월	원제품수입	시노파파스퇴르	프랑스	자사/한독약품	2002-06-20	
			프로다익스-23	0.5ml/vial	24개월	원제품수입	MSD	미국	SK	2000-12-15	
			가다실프리플드시린지	0.5ml/PFS	36개월	원제품수입	MSD	미국	SK	2007-08-17	
HPV	사백신	한국엠에스디(주)	가다실프리플드시린지	0.5ml/PFS	36개월	원제품수입	MSD	미국	자사	2016-01-25	
			서바릭스프리플드시린지	0.5ml/PFS	48개월	원제품수입	GSK	벨기에	보령	2008-07-03	
로타 바이러스	생백신	한국엠에스디(주)	로타텍액	2.0ml/tube	24개월	원제품수입	MSD	미국	SK	2007-06-22	
			로타릭스프리플드	1.5ml/PFS	36개월	원제품수입	GSK	벨기에	광동	2008-03-07	
수막구균	사백신	한국엠에스디(주)	엔비오	0.5ml/vial	36개월	원제품수입	GSK	이태리	한국백신/녹십자	2012-06-22	
			메낙트라	0.5ml/vial	24개월	원제품수입	SanofiPasteurInc.	미국	자사/SK	2014-11-21	



백신종류	분류	제조사	제품명	포장단위	유효기간	제조방법	원액		판매사	허가일	비고
							제조사	제조국			
인플루엔자 사백신		동아제약(주)	백시플루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12개월	원액수입제조	제조사	프랑스	자사	2016-4-12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	0.25, 0.5ml/PFS	12개월	국내제조	SK케미칼	한국	자사	2014-12-26	
		SK케미칼(주)	스카이셀플루4가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12개월	국내제조	SK케미칼	한국	자사	2015-12-24	4가
			이그리델S1 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12개월	완제품수입	시큐리스	이태리	보령/한국백신	1994-06-03	
		한국노바티스(주)	소아용이그리델프리필드시린지	0.25ml/PFS	12개월	완제품수입	시큐리스	이태리	보령/한국백신	2011-05-12	
			플루아드	0.5ml/PFS	12개월	완제품수입	시큐리스	이태리	보령/한국백신	2009-05-26	
		㈜녹십자	지씨플루프리필드시린지주	0.25, 0.5ml/PFS	12개월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자사	2009-07-22	
			지씨플루퀘드리백트 프리필드시린지주	0.5ml/PFS	12개월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자사	2015-11-26	4가
		(주)보령바이오파마	보령플루백신V주	0.5ml/PFS	12개월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자사	2009-08-25	
			보령플루백신V주-TF주	0.25, 0.5ml/PFS	12개월	원액수입제조	제조사	프랑스	자사	2014-06-27	
		(주)G생명과학	보령플루V테트라백신주	0.5ml/PFS	12개월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자사	2016-07-19	4가
			플루플러스티에프주	0.5ml/PFS	12개월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자사	2009-08-25	
		(주)한국백신	코박스플루PF주	0.5ml/PFS	12개월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자사	2009-09-15	
			코박스인플루PF주	0.5ml/PFS	12개월	국내제조	일양약품	한국	자사	2014-07-04	
		사노피파스트(주)	박세그리프주	0.25, 0.5ml/PFS	12개월	완제품수입	제조사	프랑스	자사/한독	2003-06-23	
		글락소스미스클라인(주)	플루아릭스테트라프리필드시린지	0.5ml/PFS	12개월	완제품수입	GSK	독일	보령/일양약품	2014-12-26	4가
			일양플루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0.5ml/PFS	12개월	국내제조	일양약품	한국	자사	2013-08-08	
		일양약품(주)	일양플루백신주	0.5mL/Vial	12개월	국내제조	일양약품	한국	자사	2015-02-24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0.5ml/PFS	12개월	국내제조	일양약품	한국	자사	2016-09-09	4가



〈부 록〉

IV. 민원상담 사례집

1. 사업운영	197
2. 등록 및 시스템 운영	221
3. 교육시스템	240
4. 이상반응 관리	245



2017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민원상담 사례집

I. 사업운영

1. 비용상환 적용범위	197
2. 적용대상 의료기관	198
3. 지원대상 예방접종	199
4. 예방접종비용	200
5. 비용상환	200
6. 비용상환 이의 신청	201
7. 비용상환 기준	201
8. 백신별 비용상환 심사기준	205
8.1 결핵(BCG)	205
8.2 B형간염(HepB)	205
8.3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Td, Tdap)	206
8.4 폴리오(IPV)	209
8.5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210
8.6 폐렴구균(PCV, PPSV)	211
8.7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212
8.8 수두(Var)	213
8.9 일본뇌염(JE)	214
8.10 A형간염(HepA)	214
8.11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215
8.12 인플루엔자(Flu)	216
9. 계약체결 및 교육이수	217
9.1 위탁계약체결	217
9.2 교육이수	219



II. 등록 및 시스템 운영

1. 등록 및 시스템 운영(대국민 이용안내)	220
1.1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탈퇴 등	220
1.2 아이등록	223
1.3 NIP의료기관	225
1.4 예방접종 내역확인 및 전산등록	225
2. 등록 및 시스템 운영(의료기관 이용안내)	226
2.1 예방접종 전산등록(IR) 의료기관 등록 및 관리	226
2.2 IR의료기관(전산등록 의료기관) 정보관리	226
2.3 의료정보시스템 연계	228
2.4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설치	229
2.5 인적/접종정보 등록 및 수정, 삭제	230
2.6 비용상환 신청	235
2.7 기타	237

III. 교육시스템

교육시스템 이용(의료기관)

1. 회원가입	239
2. 개인정보 수정	239
3. 교육이수	240
4. 프로그램 오류	241
5. 수료증 발급	242

IV. 이상반응 관리

1. 이상반응 신고	244
2. 피해보상 신청	246



I 사업운영

사업운영 총괄

1. 비용상환 적용범위

Q 1.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적용대상은 누구인가요?

A 1. 전국의 만 12세 이하 어린이(2004.1.1. 이후 출생자)는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Hib,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백신은 생후 59개월까지, A형간염 백신은 2012년 이후 출생아, HPV 백신은 '03~'05년 출생아('03년 출생아는 1차 접종 완료자에 한함)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Q 2. 출생신고 전 신생아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2. 가능합니다. 출생 신고 전 신생아의 경우 임시 신생아번호(생년월일 및 성별)와 함께 보호자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합니다. 다만, 임시 신생아번호는 법정 출생신고 기한인 생후 1개월 이내 접종(B형간염 1차, BCG)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인적정보 보완 이후 비용상환 심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출생신고가 늦어지는 경우는 지속적인 접종 관리를 위하여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관리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도 동일하게 관리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아동의 경우 시설아동번호(의료급여 관리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p.39~40 참조)

※ 시설아동의 경우 시설아동번호(의료급여 관리번호)를 주민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 아동번호 미발급 시설아동은 시설아동번호 발급 시까지 관리번호로 접종

Q 3. 외국인도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3. 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외국인등록 면제자 포함)는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중 국내에 3개월을 초과하여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관리번호 발급 후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 가능 합니다.

※ 예방접종 관리번호는 보건소 방문 후 대면발급이 원칙이며, 본인 확인을 위한 여권 지참 필요(피접종자의 여권이 없는 경우 보호자의 여권으로 확인).

※ 3개월 미만 단기체류 외국인은 관리번호 발급대상에서 제외

Q 4.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한 아이가 B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으려 온 경우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4.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한 아이는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서 지원함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관련 문의(☎043-719-6848~6852)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은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및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의 B형간염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비용 및 면역글로불린, 항원·항체 검사비용을 지원함

* 대상자 확인 방법: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피접종자 또는 산모 주민번호로 조회 시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로 표기되어 있음

2. 적용대상 의료기관

Q 1.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접종할 경우 비용지원이 안되나요?

A 1.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비용은 피접종자가 전액 부담 하여야 합니다.



Q 2. 모든 의료기관에서 국가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A 2. 지자체장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은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따라 실제 접종 가능한 백신 정보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대상 예방접종

Q 1. 의료기관에서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접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1.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백신은 총 16종으로 의료기관마다 실제 시행중인 접종 항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백신 종류(16종):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DTaP-IPV, Td, Tdap, Hib, 폐렴구균, 수두, MMR, A형간염, 일본뇌염 사백신, 일본뇌염 생백신,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인플루엔자

Q 2. 일부 백신의 경우 예방접종비용 지원가능 연령이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접종이 해당 되나요?

A 2.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모든 국가예방접종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Hib 및 폐렴구균은 만 5세 이상에서는 접종을 권장하지 않으므로 59개월까지, A형간염의 경우 도입당시 권장연령 기준인 2012. 1. 1. 이후 출생아,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03~'05년 출생 여아(단, '03년생의 경우 1차 접종 완료자에 한함), 인플루엔자는 우선접종 권장 연령인 생후 6~59개월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Q 3. 로타바이러스 등과 같은 기타 예방접종도 비용지원이 되나요?

A 3. 기타 예방접종의 경우 비용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예방접종은 연령에 따른 감염의 위험과 질병의 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제외 백신: BCG(경피), 로타바이러스, 수막구균 등

4. 예방접종비용

Q 1. 국가예방접종 백신별 예방접종 지원비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1.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행정지원 → 공지사항' 및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 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 비용상환

Q 1. (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은 어디서 지급하나요?

A 1.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예방접종비용은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에서 심사 후 비용을 지급합니다.

Q 2.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2.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내역 등록* 시 자동으로 비용상환 신청되며, 행정자치부 주민정보시스템에서 정확한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약 1일 소요) 후 피접종자 거주지 보건소로 청구됩니다. 보건소에서 비용상환 심사 후 비용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백신제조번호 미등록 등 불완전 접종내역은 비용상환 신청 불가

※ 비용상환 진행과정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 지원사업' → '비용상환현황' → '비용상환내역'을 통하여 확인



Q 3. 예방접종 실시 후 비용상환 신청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A 3. 중복접종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접종 당일 전산 등록 및 비용상환을 신청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6. 비용상환 이의 신청

Q 1. (의료기관) 비용상환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A 1. 비용상환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상환불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의신청 절차: 상환불가 내역을 더블 클릭 후 '이의신청 팝업창'에 이의 신청 사유를 작성하여 신청하며, 이의신청된 내역은 보건소에서 확인 후 재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7. 비용상환 기준

Q 1. 비용상환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1. 백신별 지원대상 여부 및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심사합니다. (p.32~33 참조)

상환불가 접종

- ▶ 동일백신, 동일차수의 중복접종('09.3월~)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된 자료 기준으로 중복접종인 경우
(예) 동일 피접종자의 인적정보를 두 개 이상 생성되어 동일접종 중복신청 등
- ▶ 최소접종연령보다 5일 이상 앞당겨 접종된 이른접종('12.7월~)
- ▶ 최소접종간격보다 5일 이상 앞당겨 접종된 이른접종('13.10월~)
 - ※ 이른접종의 경우 무효로 간주되므로 향후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따라 접종 일정에 맞춰 재접종이 필요하며, 접종 일정에 맞춰 재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
 - ※ (예외)4일 이하의 오차(grace period) 적용 제외 : 일본뇌염 사백신 1, 2차 최소 접종 간격 7일
- ▶ 불필요한 추가접종('14.8월~)
 - 자연접종으로 다음접종이 생략되는 접종을 시행한 경우
- ▶ 일본뇌염 생백신과 사백신간 교차접종('14.8월~), 사백신간 교차접종('15.5월~)

Q 2. 3세까지 예방접종을 전혀 하지 않은 소아가 내원하여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A 2. 표준예방접종일정보다 접종이 지연된 경우에도 예방접종실시기준을 준수하여 접종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Q 3.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과거 접종력을 확인할 수 없었고, 보호자가 접종력을 알 수 없다고 하여 우선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나중에 예방접종수첩 등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됐는데, 이 경우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3.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시행 이전 과거 접종력은 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종 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수첩 등을 통한 중복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접종시점에 과거 접종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용상환이 인정되지만, 원칙적으로 과거 접종력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시행한 중복접종은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및 예방접종수첩 등으로 중복확인을 완료하여 접종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서 중복접종이 이루어진 경우는 먼저 전산등록 한 의료기관에 비용지급

Q 4. 중복접종 등 일반적으로 상환불가 한 내역이지만 예외적으로 비용상환 인정되는 경우의 사례가 있나요?

A 4. 과거에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의학적인 사유로 재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예: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접종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은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Q 5.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접종이라는 소견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을 하였습니다.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5. 조혈모세포 이식 후에 백신에 의해서 예방가능한 질환(과상풍,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폐렴구균, 수막구균 및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항체는 재접종하지 않으면 1~4년 동안에 걸쳐 차츰 감소합니다. 따라서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는 조혈모세포 공여자(기증자)를 불문하고 이식 후 재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접종을 하는 경우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Q 6. 백혈병 등의 혈액종양 또는 고형종양으로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재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6. 일반적으로 항암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 이전에 접종 받았던 백신을 재접종 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면역저하 상태 동안 접종한 불활성화 백신의 경우는 면역기능이 회복된 이후에 재접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독화 생백신의 경우는 면역억제제 치료 후 최소한 3개월 동안은 접종해서는 안 되며, 고용량 스테로이드 투여 등 피접종자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여 전문의가 생백신 접종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사유로 접종이 필요한 경우 접종내역 등록시 의학적 소견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비용상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당한 의학적 소견에 의한 재접종은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예방접종 일정

백신	조혈모세포이식 후 첫 접종 시기	기초접종		추가접종
		횟수	최소접종간격	
불활성화 백신				
B형간염 ¹⁾	6~12개월	3	(0, 1, 6개월) ¹⁾	-
DTaP/Tdap/Td ²⁾	6개월	3	4주	-
폴리오	6~12개월	3	4주	-
폐렴구균 ³⁾	(3)~6개월	3	4주	이식 후 12개월
Hib	6~12개월	3	4주	-
인플루엔자 ⁴⁾	(4)~6개월	1	-	매년
A형간염	6~12개월	2	6개월	-
일본뇌염 ⁵⁾	6~12개월	2	4주	두 번째 접종 후 6개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⁶⁾	6~12개월	3	(0, 1, 6개월-서바릭스; 0, 2, 6개월-가다실) ⁶⁾	-
약독화 생백신				
MMR ⁷⁾	24개월	2	4주	-
수두 ⁸⁾	24개월	13세 미만: 1 13세 이상: 2	13세 미만: - 13세 이상: 4주	-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백신), Td(청소년 성인용 파상풍·디프테리아 백신), Tdap(청소년 성인용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백신)

- ¹⁾B형간염 백신은 조혈모세포이식 6개월 후부터 0, 1, 6개월 스케줄로 접종한다.
- ²⁾나이에 관계없이 DTaP로 3회 접종할 수 있으며 7세 이상에서는 Tdap 1회 접종 후 Td 2회 접종으로도 가능하다.
- ³⁾폐렴구균에 대한 기초접종은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접종하며 필요한 경우 조혈모세포이식 3개월 후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 추가접종은 폐렴구균 다당백신으로 접종하되 이식편대숙주병이 있으면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접종한다.
- ⁴⁾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을 조혈모세포이식 6개월 후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식 4개월 후부터 접종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4주 간격으로 1회 더 접종하여야 한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처음 접종받는 생후 6개월~9세 미만의 소아는 4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접종받아야 한다.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으로 매년 접종하여야 한다.
- ⁵⁾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은 조혈모세포이식 후 6~12개월부터 접종을 시작하되 4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기초접종 후 최소 6개월이 경과한 후 3차 접종한다. 이후의 추가접종은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의 일반적인 접종 일정을 따른다.
- ⁶⁾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 6~12개월 이상 경과한 후의 11~26세의 여성에게 0, 1, 6개월(서바릭스) 또는 0, 2, 6개월(가다실)의 일정으로 접종한다.
- ⁷⁾MMR은 조혈모세포이식 24개월 이후에 환자가 면역학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접종하여야 하며 최소 4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의 접종을 추천한다.
- ⁸⁾수두 백신은 조혈모세포이식 24개월 이후에 환자가 면역학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접종한다.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참조



8. 백신별 비용상환 심사기준

8.1 결핵(BCG)

Q 1. BCG 예방접종은 4주 이내에 접종하도록 하는데, 접종이 지연된 경우 TST 검사비용도 지원되나요?

A 1. 생후 2개월까지는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st: TST) 없이 접종 가능하며, 이후에는 접종력이 없다 하더라도 결핵균의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TST가 필요하지만, 검사비용은 별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Q 2. BCG 예방접종 후 반흔이 없는데, 재접종이 필요한가요?

A 2. 예방접종 후 반흔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예방접종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BCG 접종력이 확실하다면 다시 접종할 필요는 없으며, 불필요한 재접종은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8.2 B형간염(HepB)

Q 1. B형간염 기초접종 후 항체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 재접종을 하려고 합니다.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1. B형간염 기초접종 후 일률적인 항체검사나 이에 따른 추가접종을 권장하지 않으므로 기초접종 완료 후 실시한 항체검사 결과(음성)에 따른 추가접종은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다만, B형간염 고위험군(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가족, 혈액제제를 자주 수혈 받아야 하는 환자,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등)과 같이 의학적인 사유로 추가·재접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학적 소견을 입력하고 비용상환 신청하며 적합성을 인정할 경우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른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추가접종을 권장하지 않으며, 추가 접종 시 발생하는 접종비용은 전액 본인부담

Q 2. 미숙아인 경우 B형간염을 4회 접종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A 2. HBsAg 상태를 알 수 없거나, 양성인 산모에게서 37주 미만에 태어난 2kg 미만의 미숙아의 경우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 B형간염 백신과 B형간염 면역글로블린을 투여하여 예방합니다. 미숙아의 몸무게가 2kg 미만이면 출생 직후 접종은 접종횟수에 포함하지 않고 생후 1개월부터 3회 접종 실시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총 4회 접종이 필요하며 모두 비용상환이 인정됩니다.

※ 접종내역 등록 시 의학적 소견을 반드시 기입하고, 접종일자 순으로 등록(1차에 두 번 등록: 마우스 오른쪽버튼 클릭 → 추가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HBsAg 음성인 산모에게서 태어난 2kg 미만 미숙아는 출생 후 1개월 또는 1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의학적으로 안정되고 체중증가가 적절하여 퇴원하게 될 경우 1차 접종 실시하여 총 3회 접종 실시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은 해당 사업에서 별도 관리

Q 3. 과거 접종력이 없는 만 11세 아동에게 B형간염 접종 시 지원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3. 비용지원은 가능하나 소아(0.5ml) 기준으로 비용지원이 됩니다.

※ 11세 이상은 1.0ml 접종 필요

8.3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Td, Tdap)

Q 1. 만 4세 된 아이가 DTaP 4차 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이후 접종 일정은 어떻게 되며 비용상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1.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4차 접종을 실시하고, 5차 접종은 생략합니다. 비용상환은 해당 접종차수(DTaP 4차)에 접종내역을 등록하고 비용상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접종은 만 11~12세에 Tdap 또는 Td 백신으로 추가 접종합니다.



Q 2. 만 9세 된 아이가 DTaP 접종을 받은 적이 없다면 접종 후 비용상환 신청 가능한가요?

A 2.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Td 백신으로 기초접종(1,2,3차)을 완료하되, 이중 1회는 Tdap 백신으로 접종합니다. Td 접종은 <Td(그외)>에 순차적으로 등록하고, 3회 접종 중 1회를 Tdap으로 접종한 경우 해당 접종기록은 <Tdap-6차>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Q 3. 만 4~6세 DTaP 5차를 접종하지 못한 소아가 만 7세 1개월에 내원했을 경우 비용상환 되나요?

A 3. 지연접종 시에도 예방접종 실시 기준을 준수하여 접종한 경우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DTaP 추가접종이 지연된 만 7세 이상 연령에서는 DTaP 대신 Td 백신으로 접종합니다. Td 접종내역은 <Td(그외)-1차>에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합니다. 이후 추가접종은 매 10년(최소 접종간격은 5년)마다 실시합니다.

Q 4. 만 4세 때 DTaP 4차 접종을 시행한 만 8세 소아가 추가 접종을 위하여 방문한 경우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4. DTaP 4차 접종을 만 4세 이후에 한 경우 5차 접종은 생략됩니다. 이 경우 다음 접종은 만 11~12세에 Td 또는 Tdap 백신으로 접종하고 접종내역은 <Td(만 11~12세)-6차> 또는 <Tdap-6차>에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가능합니다.

Q 5. 생후 15개월인 소아가 DTaP-IPV 혼합백신으로 3회 기초접종을 완료하였 습니다. 생후 15~18개월에 실시하는 DTaP 4차 접종도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해야 하나요?

A 5. 제조사에 관계없이 DTaP 단독백신을 선택하여 접종하면 됩니다.

Q 6. 생후 18개월에 DTaP 4차를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하고 4차 (추가)에 등록했습니다. 비용상환 받을 수 있나요?

A 6. DTaP-IPV 혼합백신 4차 접종은 DTaP 5차, IPV 4차 접종을 의미합니다. DTaP 4차 접종시기에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IPV 접종력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DTaP 4차 접종은 DTaP 단독백신으로 접종합니다.

Q 7. DTaP 단독백신으로 1차 접종 후 DTaP-IPV 혼합백신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한가요?

A 7. DTaP 백신은 제조사마다 백신 제제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접종(1~3차)은 동일백신으로 접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DTaP 1차 기초접종 시작을 단독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이전에 접종한 백신과 동일한 백신으로 3차 접종까지 완료하도록 합니다. 추가접종(4차, 5차)은 교차접종이 가능합니다.

※ 단, 동일 제조사의 백신인 GSK의 DTaP(인판릭스)와 DTaP-IPV(인판릭스-IPV)는 교차접종 가능

Q 8. Tdap 백신의 최소접종연령(만 11세)보다 이르게 접종한 경우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8. 비용상환 기준에 따라 최소접종연령 이전에 접종한 경우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만 7~10세 소아가 DTaP 기초접종 3회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백일해 유행상황 등에서는 백일해 방어면역 불충분을 인정하여 Tdap 백신 접종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접종 내역 전산등록 시 의학적 소견을 입력하여 비용상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TaP 4차, 5차 추가접종 지원 시 Td 백신(최소접종연령 만 7세)으로 접종



Q 9. Tdap(또는 Td) 백신 6차 추가접종 시 접종간격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권장접종간격보다 이르게 접종을 시행한 경우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9.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만 11~12세 Tdap(또는 Td) 백신 추가접종 시 직전 접종한 DTaP 백신과의 접종간격은 최소 5년 이상을 유지하여 접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만약, 우발적으로 DTaP 백신과 Tdap(또는 Td) 백신간 권장접종간격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Tdap(또는 Td) 백신의 접종력을 인정하여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Q 10. 만 6세 11개월에 Td 백신으로 접종하였습니다. 이 경우 접종력이 유효한가요? 비용상환은 어떻게 되나요?

A 10. 원칙적으로 최소접종연령 또는 최소접종간격보다 5일 이상 앞당겨 시행한 이른접종은 접종력이 유효하지 않으므로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가능한 빨리 DTaP 백신으로 재접종하도록 하며, DTaP 재접종은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8.4 폴리오(IPV)

Q 1. 국외에서 OPV로 기초(1~3차)접종을 완료한 만 6세 아동입니다. 3차 접종을 만 4세 이후에 한 경우 4차 접종은 생략하나요?

A 1. OPV(Oral Polio Vaccine)와 IPV(Inactivated Polio Vaccine)간 교차접종이 가능하며 이 경우 3차 접종 시기와 상관없이 나머지 접종을 IPV로 실시하여 총 4회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고, 비용상환 신청도 가능합니다.

※ OPV로 접종 시작 시 접종이 지연되어도 IPV로 4차 접종까지 완료

8.5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Q 1. 만 6세 아동이 Hib 백신을 접종 받은 적이 없다면 접종권장연령(생후 2개월~59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A 1. 일반적으로 만 5세 이상의 소아에서는 무증상 감염에 의해 Hib에 대한 면역력이 획득되어 접종이 필요 없으므로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단, 침습 Hib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만 5세 이상 소아의 경우 소아기에 Hib 접종력이 없는 아동에 한해 1~2회 접종이 필요하며 의학적 소견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가능합니다.

※ 침습 Hib 감염의 고위험군: 겸상적혈구증, 비장절제술 후, 항암치료에 따른 면역저하, 백혈병, HIV 감염, 보체결손증, 특히 IgG2 이형 결핍 등의 체액면역결핍질환 환자에서는 1~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할 수 있음

Q 2. 현재 만 4세 소아입니다. 생후 6개월에 Hib 백신 3차 접종을 받았고, 12~15개월에 실시하는 추가접종(4차)을 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이라도 접종을 해야 하는지와 비용상환이 되는지요?

A 2.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추가접종(4차)을 실시하고 접종을 완료합니다. 생후 12개월 이전에 3회의 기초접종을 완료한 12~59개월 소아의 경우 마지막 접종과 최소한 8주 이상의 간격을 띄워 1회 추가접종이 필요합니다.

Q 3. 생후 15~59개월의 소아 중 과거 Hib 접종력이 없어 접종할 경우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3. 백신 종류에 관계없이 1회 접종을 실시하며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라 생후 15~59개월에 접종을 시작한 경우 일반적으로 침습 Hib 감염의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추가 접종은 불필요하므로 1회 접종으로 접종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8.6 폐렴구균(PCV, PPSV)

Q 1. 폐렴구균 접종력이 없는 60개월 이상의 소아의 경우 비용지원이 가능한가요?

A 1. 일반적으로 건강한 만 5세(생후 60개월)이상 소아에게는 접종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폐렴구균 감염 위험이 높은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만 5세 이상이라도 과거 접종력이 없으면 폐렴구균(단백결합) 백신 접종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의학적 소견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가능합니다.

Q 2. 생후 24~59개월 연령에서 폐렴구균 1차 접종을 10가 백신으로 시작한 경우 8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권장되는데 생후 58~59개월에 10가 백신으로 1차 접종한 아동의 2차시기에 60개월이 도래한 경우 2차 접종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나요?

A 2. 일반적으로 건강한 60개월 이상 소아에서는 폐렴구균 접종을 권고하지 않으므로 폐렴구균 1차 접종을 10가 백신으로 하고 2차시기에 만 5세(생후 60개월)가 넘었다면 2차 접종은 불필요하며, 비용상환에서 제외됩니다.

Q 3. 폐렴구균 1차를 생후 7개월에 접종하고, 2차를 생후 9개월, 3차를 생후 11개월에 접종하려는데 비용상환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A 3. 생후 7개월에 폐렴구균 1차 접종을 시작한 경우 기초 2회, 추가 1회 총 3회의 접종이 필요합니다. 기초 1, 2차 접종은 2개월(생후 12개월 이전 최소접종간격 4주) 간격으로 2회 실시하고 3차 추가접종은 생후 12개월 이후에 실시합니다. 생후 11개월에 실시된 접종은 예방접종 실시기준상 이른접종으로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Q 4. 면역저하 질환이 있는 3세 소아입니다. 이전에 폐렴구균 백신을 4회 모두 접종하였고 폐렴구균 다당질 백신으로 추가 접종이 필요할 경우 비용상환 되나요?

A 4.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 따른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면역저하자 등)은 이전에 10가 또는 13가 단백결합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하였다더라도 다당질 백신으로 추가접종이 가능하며, 의학적 소견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가능합니다.

Q 5. 이전에 폐렴구균 10가 백신으로 접종하였는데 2차 접종을 13가 백신으로 접종해도 되나요? 만약 교차접종이 시행된 경우 다음 접종은 어떤 백신으로 실시하나요?

A 5. 폐렴구균 10가 백신과 13가 백신간의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으므로 기초 및 추가접종 시 동일한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발적으로 교차접종을 한 경우 다음 접종은 더 많이 접종한 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합니다. 우발적인 교차접종 발생 시 접종력을 인정하여 비용상환 가능하지만, 예방접종 실시 기준 및 과거 접종력 확인 절차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8.7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Q 1. MMR 2차 접종을 받은 소아가 가와사끼병으로 1주 만에 면역글로불린을 투여 받았습니다. MMR 재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1. MMR 백신을 투여하고 2주안에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한 경우에는 백신의 효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면역글로불린 주사 후 최소 11개월 뒤에 추가적으로 MMR 백신 접종을 권장합니다. 의학적 필요에 의한 표준예방접종 횟수 이상의 접종은 적합성을 인정할 경우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 Q 2. MMR 1차 접종을 생후 11개월에 하였습니다.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 A 2.** MMR 1차 접종 최소연령은 생후 12개월로 최소접종연령보다 5일 이상 앞당겨서 시행한 이른접종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최소접종연령보다 이른접종 시 이미 실시한 접종은 무효로 간주하고 다시 접종해야 하며 재접종은 의학적소견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가능합니다.
- 예외적으로 지역사회 내 홍역 유행 등으로 생후 6개월~11개월 연령에게 이른접종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는 의학적 소견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가능합니다.

8.8 수두(Var)

- Q 1. 수두 접종이 지연된 경우 비용상환 기준은?**
- A 1.** 과거에 수두를 앓은 적이 없고 접종력이 없는 만 12세 이하 아동은 1회 접종을 실시하며,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 ※ 과거 수두병력 및 접종력이 없는 만 13세 이상 아동은 4~8주 간격으로 2회 접종 필요
- Q 2. 생후 12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형제가 수두를 앓아 수두 예방접종을 한 경우 비용상환 되나요?**
- A 2.** 수두 백신 최소접종연령은 생후 12개월로, 생후 12개월 이전에 수두 예방접종을 한 경우 항체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접종을 권장하지 않으며 이 경우 비용상환 불가합니다.

8.9 일본뇌염(JE)

Q 1. 일본뇌염 1차를 생백신으로 접종하고 2차 시기에 사백신으로 접종을 원하는 경우 비용상환 되나요?

A 1. 일본뇌염 생백신과 사백신간 교차접종 허용에 대한 자료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본뇌염 생백신으로 접종한 경우는 2차 접종도 표준접종 일정에 맞춰 생백신으로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합니다. 일본뇌염 생백신과 사백신간 교차접종의 경우 비용상환에서 제외됩니다.

Q 2. 과거에 일본뇌염 생백신과 사백신으로 각각 1회씩 접종하였습니다. 다음 접종은 어떤 백신으로 접종하나요? 교차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2. 일본뇌염 생백신과 사백신간 교차접종을 권장하지 않으나, 과거 교차접종이 이루어진 경우 두 가지 백신 중 한 가지 백신을 선택하여 접종을 완료합니다. 접종을 완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행된 교차접종은 의학적 소견을 등록하여 비용상환 신청 가능합니다.

Q 3. 일본뇌염 베로세포 유래 사백신 0.7ml 백신이 없어 0.4ml 백신 2vial을 사용하여 만 3세 이상 아동에게 접종할 경우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3. 식약처 사용허가 권장기준에 따라 만 3세 이상에서는 반드시 0.7ml 백신으로 접종하며, 0.4ml 백신을 사용하여 접종 시 비용상환에서 제외됩니다.

8.10 A형간염(HepA)

Q 1. 2011년 출생아입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후 A형간염 예방접종 시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1. A형간염 백신은 2012.1.1.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접종비용을 지원함에 따라 2012년 이전 출생아의 경우 비용상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11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Q 1. 2017년 HPV 사업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A 1. '03~'05년 출생한 여아로, '03년 생의 경우는 2016년에 1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2017년 2차 접종비용을 지원합니다.

Q 2. 만 12세에 HPV 2가 백신으로 1차 접종 후 5개월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2차 접종에 대해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2. HPV 2가 백신은 1차 접종 후 5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차 접종 시 2회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2차 접종에 대해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 HPV 4가 백신은 1차와 2차 접종간격이 5개월일 경우 총 3회의 접종이 필요하므로 2차 접종비용은 상환 불가하며, 3차 시기 접종에 대해 비용상환함

Q 3. 만 11세에 4개월 간격을 두고 HPV 2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3차 접종에 대해 비용상환 받을 수 있나요?

A 3. HPV 2가 백신은 만 14세까지 1차 접종 후 5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차 접종 시, HPV 4가 백신은 만 13세까지 1차 접종 후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차 접종 시 총 2회의 접종으로 접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차와 2차 접종간격이 이보다 이를 경우에는 총 3회의 접종이 필요하며, 지원대상 연령에 해당한다면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Q 4. HPV 1차 접종을 2가 백신으로 하고, 2차 시기에 4가 백신으로 접종한 경우 비용상환 가능한가요?

A 4. 교차접종을 권고하지 않습니다만, 우발적으로 교차접종이 발생한 경우 비용상환 가능합니다.

8.12 인플루엔자(Flu)

Q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A 2. 2017년도부터는 생후 6~59개월을 대상으로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합니다.

Q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2. 접종 첫 해는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하고, 이후에는 매년 1회 접종이 권장됩니다. 만약 접종 첫 해 1회 접종을 받았다면, 다음 해 2회 접종을 완료합니다. 예방접종 실시 기준을 준수하여 시행된 접종에 대하여 비용상환 합니다.

Q 3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시행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 3.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유행이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발생함에 따라 백신공급 시기 및 예방접종 효과 지속기간을 고려해 10~12월 사이를 예방접종 권장시기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권장시기를 참고하여 사업기간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Q 4 어린이 인플루엔자접종은 기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원체계와 동일하게 진행되나요? 아니면 노인 인플루엔자접종 지원사업처럼 백신을 중앙에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A 4. '16-'17절기에는 기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의료기관에서 자체 구매한 백신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17-'18절기부터는 안정적 백신 수급을 위한 공급방식을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으로 관련 세부내용은 '17-'18절기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계약체결 및 교육이수

9.1 위탁계약체결

Q 1. (의료기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1.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 의사는 반드시 사업 참여 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 계약 시 제출 서류〉

1. 예방접종 시행 의사 교육 수료증
2. 통장사본
3.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4.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확인증(HPV 예방접종시행 의료기관만 해당)
5. HPV 백신 공급 협약서(HPV 예방접종시행 의료기관만 해당)

Q 2. (의료기관) 계약 체결 후 비용상환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2.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후 예방접종건부터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할 보건소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승인한 비용상환 참여일 기준

Q 3. (보건소, 의료기관) 기존에 사업 참여를 하였으나 타 지역으로 병원을 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체결을 다시 하여야 하나요?

A 3. 의료기관이 폐업하게 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폐업정보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정보연계를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자동 반영됩니다. 예방접종업무는 시·군·구청장이 관할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므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한 지역 관할 보건소와 다시 계약을 체결합니다.

Q 4. (보건소, 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중 일부 백신에 대하여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 참여가 가능한가요?

A 4. 네, 가능합니다. 단, 의료기관에서 실제 접종을 시행하는 모든 백신은 국가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위탁계약 시 실제 시행 중인 접종 항목을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에 표기하여 제출합니다. 참여백신 정보는 인터넷 ‘예방접종도우미’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예방접종 항목이 변경된 경우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을 다시 제출하여 계약정보 변경

Q 5. (보건소, 의료기관)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5.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계약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제출합니다. 해당 보건소는 ‘계약해지 통지서’를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행정업무’ → ‘의료기관관리(보건소)’에서 해당 의료기관을 조회하여 ‘위탁사업참여 여부’란을 체크해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위탁의료기관인 경우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 확인증’을 추가로 제출(사업 참여여부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과 동시에 계약해지 자동 반영

※ 계약해지 관련 서식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행정지원] → [자료실] → [각종서식]에서 조회 및 출력

Q 6. (보건소, 의료기관) 의료기관이 계약해지절차 없이 폐업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6. 의료기관이 폐업하게 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계약해지신청서는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폐업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자료연계를 통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자동 반영됩니다.



9.2 교육이수

Q 1.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되며, 반드시 의사가 이수하여야 하나요?

A 1.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을 통해 이수가 가능하며, 예방접종 위탁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사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탁 계약 만료 후 재계약 하고자 할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예방접종업무 관계자(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도 교육과정 신청 및 수강은 가능함

Q 2.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기관검색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전화번호, 담당자, 요양기관코드(※ 요양기관일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부여한 요양기관코드를 기재)’를 추가로 기재하여 질병관리본부의 기관등록 담당자에게 팩스(Fax 043-719-7069)로 송부 후, 반드시 담당자(☎ 043-719-7059)에게 수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3. (의료기관)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했는데, NIP사업 관련 교육이 교육과정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A 3. 이 경우, 회원가입 시 소속구분을 ‘민간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 또는 ‘기타’로 설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시스템의 ‘나의정보’에서 소속구분이 ‘민간의료기관’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잘못되어 있는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동일한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내정보’에서 기관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승인되어 있는 모든 권한의 미승인 처리 후 변경이 가능하므로 각 관리자에게 미승인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한 권한에 대한 승인 상태는 '메뉴보기-권한부가정보관리'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교육관리USER(학습자) 권한 승인요청관련은 043-719-7059로 문의

II 등록 및 시스템 운영

1. 등록 및 시스템 운영(대국민 이용안내)

1. 등록 및 시스템 운영(대국민 이용안내)

1.1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탈퇴 등

Q 1. 아이디(또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A 1. ①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 클릭 후 회원 서비스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합니다.



②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화면에서 휴대폰 인증 또는 공공아이핀 인증절차를 통해 가입된 아이디 확인 및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 휴대폰 인증방법





- 공공아이핀(i-PIN) 인증방법



Q 2. 회원정보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A 2. 예방접종도우미 회원정보 수정은 '기본정보수정'과 '회원부가정보수정'으로 나뉩니다.

- ① 기본정보(비밀번호) 수정은 로그인 후 홈페이지 우측상단의 [회원정보수정]을 클릭하여 변경



- ② 회원부가정보(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수정은 좌측메뉴의 [회원부가정보 입력]을 클릭하여 수정



3. 회원탈퇴는 어떻게 하나요?

- A** 3. 로그인 후 메인화면 가운데 상단의 '회원정보수정'을 클릭 합니다. 화면 좌측 메뉴 중 '회원탈퇴' 메뉴가 있으며 '아이디, 비밀번호, 탈퇴사유'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회원탈퇴가 완료됩니다.





Q 4. 회원가입 후 개명을 하였습니다. 회원 정보에서 개명된 이름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4. 본인인증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본인인증기관(휴대폰 통신사 또는 공공아이핀 센터)에 변경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① 본인인증기관(휴대폰 통신사 또는 공공아이핀 센터)에 변경된 정보 등록
 - 개명된 사용자가 사용하는 본인인증기관(휴대폰 통신사 또는 공공아이핀 센터)에 변경된 정보를 수정요청
- ② 회원 탈퇴 후 재가입
 - 본인인증기관에 개명된 정보를 등록한 후 기존에 가입한 예방접종도우미 회원탈퇴 후 재가입

1.2 아이등록

Q 1.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아이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 [HOME] → [예방접종관리] → [자녀 예방접종 관리] → [아이정보등록]에서 아이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일, 성별, 관계, 문자수신 동의 여부를 입력하면 됩니다.

※ 시설아동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복지(생활)시설아동’ 체크, 시설명을 입력하신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Q 2. ‘입력하신 정보가 전산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며 아이가 등록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2.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아이정보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아이정보등록’에서 입력한 아이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이는 메시지로, 이 경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48~6852)로 연락하여 아이정보를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Q 3. 아이정보 입력 시 이미 등록된 주민번호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3. 아이 정보로 회원가입을 하였거나, 다른 보호자가 아이정보를 이미 등록한 경우로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 ① 아이정보로 회원가입을 한 경우: 아이정보로 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회원 탈퇴 → 보호자 아이디로 접속 후 아이등록
- ② 다른 보호자가 아이정보를 이미 등록한 경우: 기존에 아이정보를 등록한 보호자 계정에서 등록된 아이정보를 삭제 후 현재 보호자 계정에서 아이 정보를 등록

Q 4. 등록된 아이정보는 어떻게 삭제 하나요?

A 4. [예방접종관리] → [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 리스트에서 삭제가 필요한 아이 정보의 [수정하기] → [삭제하기]버튼을 클릭하면 아이정보 삭제가 가능합니다.





Q 5. 출생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아이도 임의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5. 출생신고 전의 아이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 등록이 불가능하며, 임의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정확한 접종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1.3 NIP 의료기관

Q 1.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서 NIP 의료기관이란 무엇인가요?

A 1. NIP 의료기관이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으로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는 의료기관입니다.

1.4 예방접종 내역확인 및 전산등록

Q 1. 예방접종을 하였는데 ‘예방접종 내역조회’에서 과거 접종내역 전체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A 1. 예방접종전산자료는 2002년 이후 보건소와 예방접종 전산등록(IR) 의료기관의 접종내역만 조회됩니다. 전산등록 의료기관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접종한 경우 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에서 예방접종내역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2.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한 기록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 NIP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한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 이전에 접종한 BCG와 B형간염 1차의 경우 산모의 정보로 접종내역이 전산등록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한 후 아기정보로 전산등록정보를 수정(접종내역 이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3. 예방접종일자가 잘못 등록되었습니다. 접종일자 수정이 가능한가요?

A 3. 전산으로 등록된 예방접종 내역은 예방접종을 시행한 접종기관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해당 접종기관에 확인한 후 수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등록 및 시스템 운영(위탁 의료기관 이용안내)

2. 등록 및 시스템 운영(의료기관 이용안내)

2.1 예방접종 전산등록(Immunization Registry) 의료기관 등록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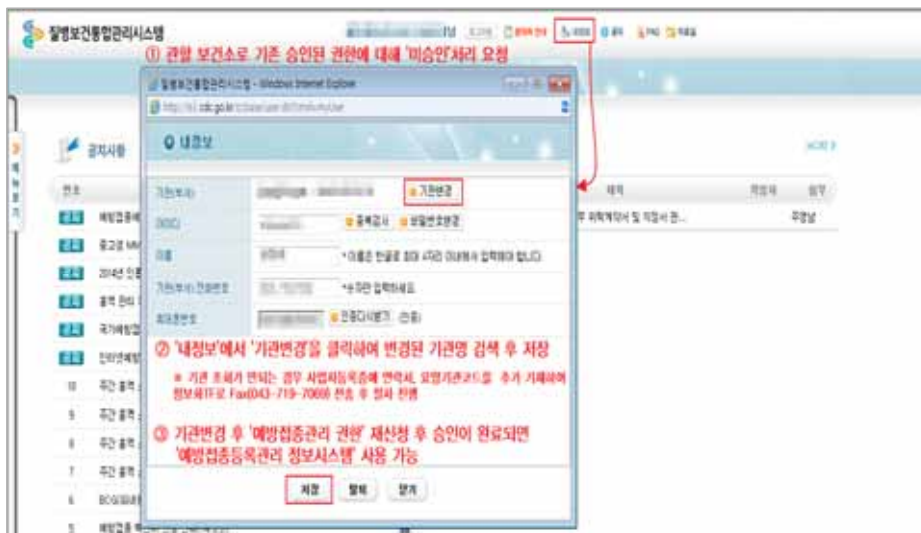
Q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어떻게 하나요?

- A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비밀번호는 Help desk(☎ 1644-1407)로 연락하여 비밀번호 초기화를 받으셔야 합니다.

2.2 IR의료기관(전산등록 의료기관) 정보관리

Q 1. 의료기관의 요양기관코드번호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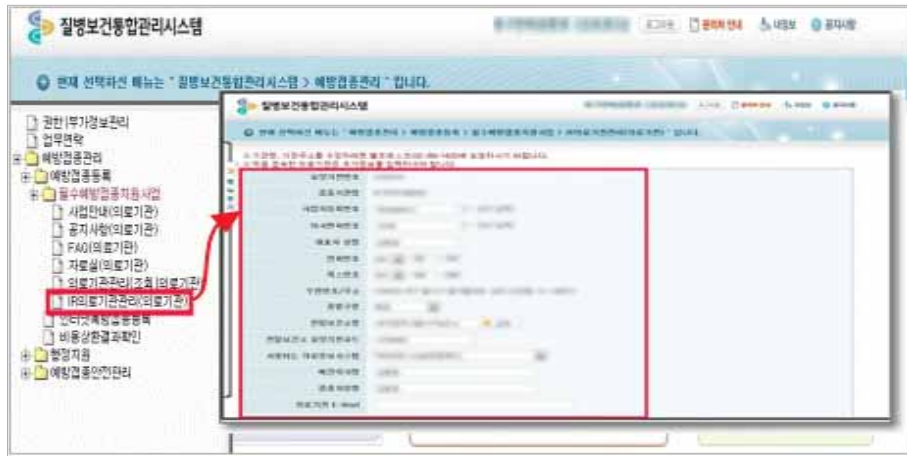
- A 1. ① 먼저 보건소에 연락하시어 기존 권한에 대해 미승인 처리를 요청한 후, ②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메인화면 우측 상단의 '내정보'에서 기관변경을 진행합니다. ③ 요양기관 코드 변경이 저장되면 권한신청 화면으로 자동 연동되며, 예방접종 업무를 위한 권한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Q 2. 의료기관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 ‘IR의료기관관리(의료기관)’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②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단 ‘메뉴보기’ → ‘행정업무’ → ‘의료기관정보 관리’ → ‘의료기관정보’ 에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Q 3. 예방접종관리에 대한 권한 신청 시 “권한정보가 부적합합니다.” 등의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여 신청이 불가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3. ‘도구’ → ‘호환성보기설정’ → ‘cdc.go.kr’ 추가 후 재신청합니다.



Q 4.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인증서 로그인을 했는데 메뉴에 ‘예방접종관리’ 폴더가 보이지 않습니다.

A 4.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가입완료 후 예방접종관리업무 권한 승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Common Administration’ → ‘권한/부가정보관리’ 메뉴에서 예방접종관리업무에 대한 권한 승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권한이 승인되면 메뉴에서 예방접종관리 폴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의료정보시스템 연계

Q 1. 의료정보업체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예방접종 내역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1. 의료정보업체 프로그램(차트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는 의료정보업체에 요청하여 프로그램 업데이트(질병관리본부로 전산등록이 가능하도록 연계)를 받으면 의료정보업체 프로그램을 통한 접종내역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Q 2. 예방접종내역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이 연계 가능한 의료정보업체는 어디가 있나요?

A 2. 연계가 가능한 업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트컴퓨터, 브레인컨설팅, 네오소프트뱅크, 다숨정보, 유비케어, 포인트닉스, 전능아이티, 병원과컴퓨터, 중외정보기술, 메디칼소프트, 메디컴코리아, 엠디소프트, 금우뱅킹소프트, 포닥터, 케이컴, 서전정보개발, 나온소프트, 대일전산, 메트로소프트, 엔지테크, 지누스, 자인컴, 메딕슨, 이헬스플러스, 뉴마테크, 지센커뮤니케이션,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2.4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설치

Q 1. Active X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1. Active X 설치화면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시작] → [제어판] → [프로그램 및 기능(프로그램 추가/제거)]에서 'XPLAFORM 9.2 Engine', 'XPLAFORM 9.2 Engine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삭제합니다.



Q 2. 윈도우 Xp에서 Active X 설치시 “command line” 오류가 발생하면서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A 2. 모든 익스플로어창을 닫고 바탕화면의 “내컴퓨터”에 대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 후 [속성] → [고급] → [환경변수]를 클릭합니다. 팝업창의 사용자 변수값 TEMP,TMP를 각각 선택하여 편집을 클릭해 사용자 변수값을 “c:\temp”로 수정, 확인 후 재부팅한 후 재설치하기 바랍니다.

2.5 인적/접종정보 등록 및 수정, 삭제

Q 1. 미등록 외국인 및 시설아동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A 1. 외국인등록번호 미발급자 및 시설아동번호(의료급여 관리번호)가 없는 시설아동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관리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된 관리번호를 입력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종내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번호 미발급자의 경우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이 가능하며,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원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Q 2.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형식에 맞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라고 합니다. 어떻게 등록하나요?

A 2. 주민등록등본상으로 등록되어있는 번호가 맞는지 보호자에게 재확인하고, 올바른 주민등록번호임에도 계속 오류가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4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3. 등록된 피접종자의 인적정보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A 3. 등록된 피접종자의 인적정보 중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는 의료정보업체 프로그램(차트프로그램) 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Q 4. 출생신고 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생아의 경우 어떻게 등록하나요?

A 4. 출생신고 전인 영유아의 등록은 반드시 모(母)의 인적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출생 후 1개월이내 접종하는 접종내역(BCG, B형간염 1차)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외 접종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어야만 접종내역 등록이 가능합니다.

- ※ 부득이한 사유로 출생신고가 지연된 경우는 관할 보건소에서 본인 확인 후 관리번호 발급이 필요하며, 발급된 등록번호로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 관리번호 발급 후 관할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출생신고 후에는 접종기록을 통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5.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실제 출생일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5. 2017년도부터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예방접종일정(적기성 정보)이 안내됩니다. 만약, 실제 태어난 날짜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는 출생일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보건소에 정보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Q 6. “행정자부에서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로 접종하여 등록(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정보가 변경된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확인바랍니다.”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6.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인 경우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로 확인된 경우 접종등록이 불가능 하므로 인적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선통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올바른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043-719-6848~52)에 연락하시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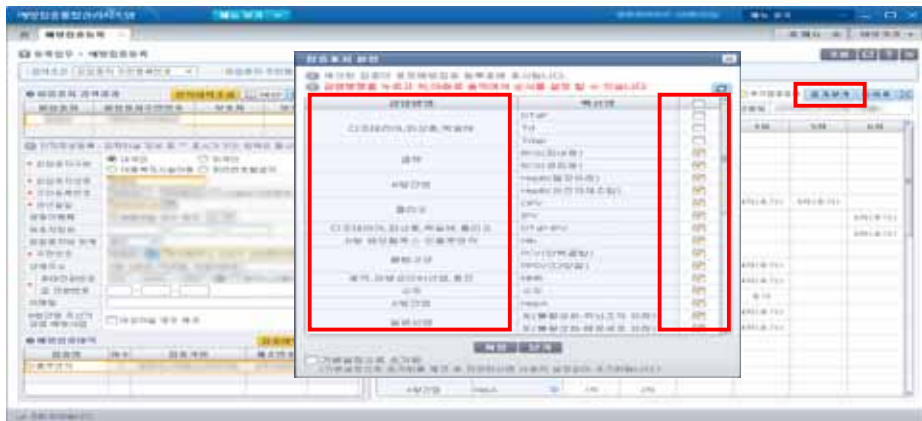
Q 7. 접종내역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 재접종한 경우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A 7. 동일백신, 동일차수에 중복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접종차수 접종일에 마우스를 위치한 후 오른쪽버튼을 클릭하면 접종내역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 ※ 접종정보가 중복으로 등록된 경우 접종일 박스가 노란색으로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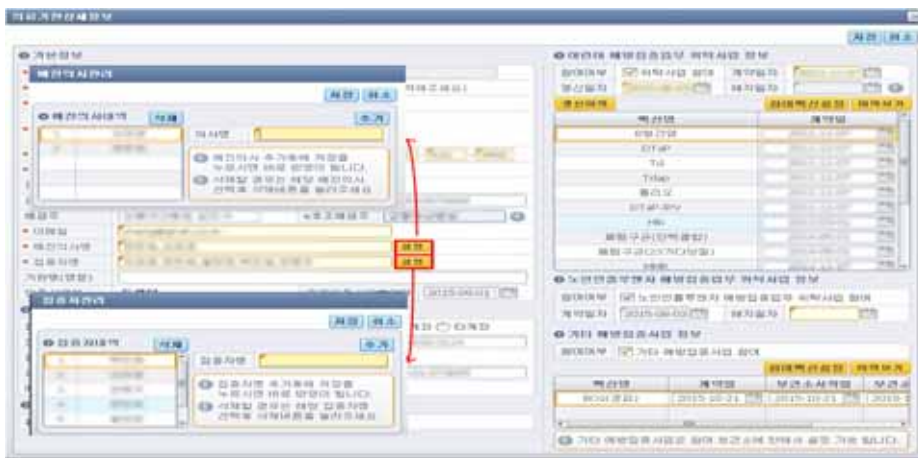
Q 8.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표준예방접종 등록표'는 의료기관에서 자주 등록하는 접종만 따로 설정할 수는 없나요?

A 8.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예방접종등록 화면에서 현재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백신만 볼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설정을 원하는 경우 예방접종 등록화면 오른쪽 상단의 '즐거찾기'를 클릭하여 기관에서 접종하는 백신을 선택하거나 감염병명을 Drag&Drop하여 순서를 변경한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Q 9. 예진의사명, 접종자명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A 9. 예진의사명 및 접종자명 수정을 원하는 경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단 '메뉴보기' → '행정업무' → '의료기관정보관리' → '의료기관정보' 에서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 할 수 있으며, 최대 10명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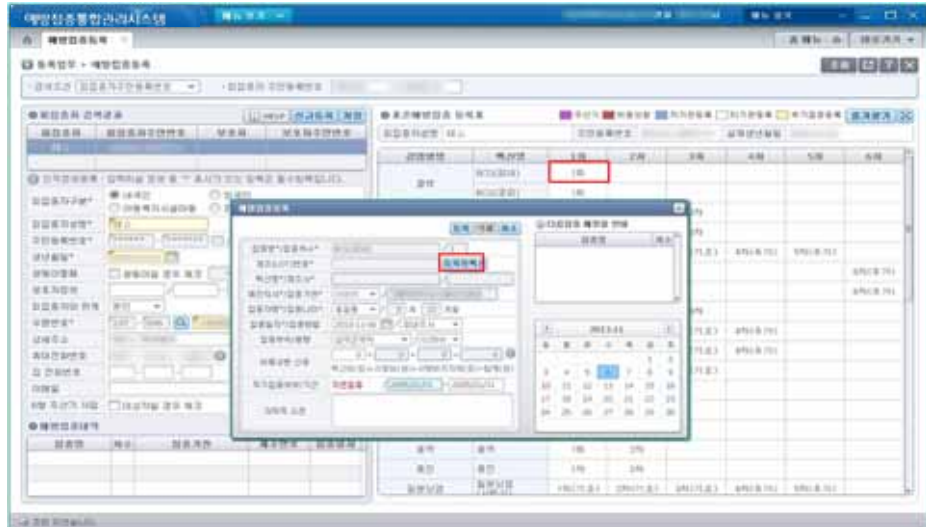




Q 10. 접종내역 등록 시 매번 백신제조번호를 검색해야 하나요?

A 10. 자주 사용하는 백신제조번호를 설정(등록/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① '예방접종등록'화면에서 등록할 백신의 차수 선택 시 생성되는 팝업창에서 '등록된백신'을 클릭합니다.



- ② 등록된백신 팝업창에서 백신을 검색하고 조회된 목록에서 찾는 제조번호를 선택 후 '등록'을 클릭하여 상단 목록에 추가시키면 다음 접종내역 등록 시 바로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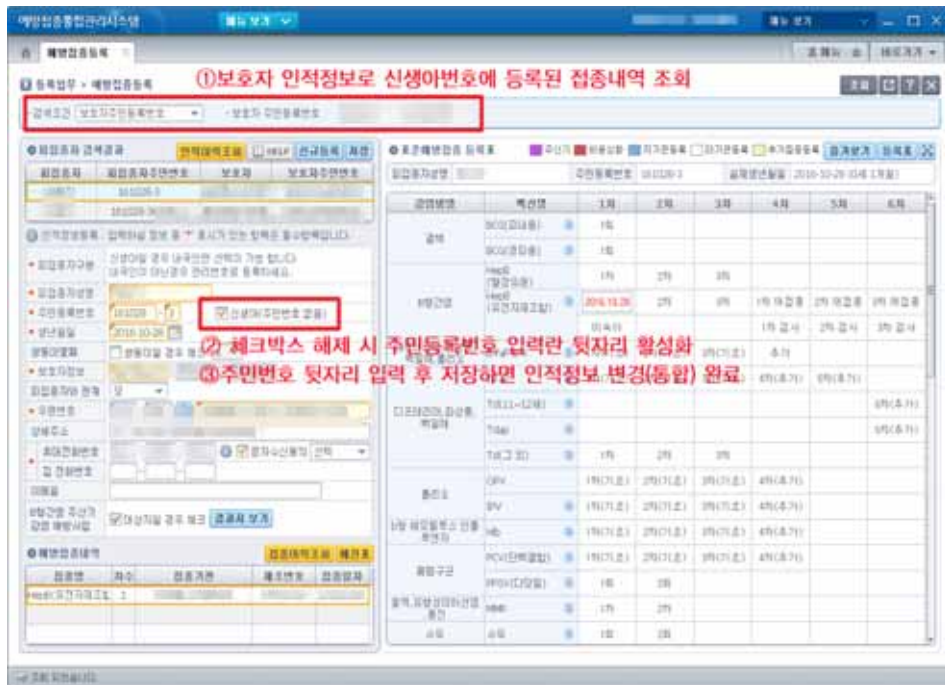


Q 11. 출생신고 전 임시 신생아번호 접종내역을 주민등록번호로 어떻게 통합 관리 하나요?

A 11. 보호자의 주민번호로 신생아번호 접종내역을 조회합니다. 신생아(주민번호없음) 체크박스 선택해제 시 주민번호 뒷자리가 활성화되고,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주민번호 정보로 통합됩니다.

※ 임시 신생아번호와 주민등록번호에 중복 접종내역이 존재하는 경우는 통합이 불가하므로 중복등록내역을 우선 처리 후 통합하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번호의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이 상이한 경우는 질병관리본부 (☎043-719-6848~52)로 인적 및 접종정보 통합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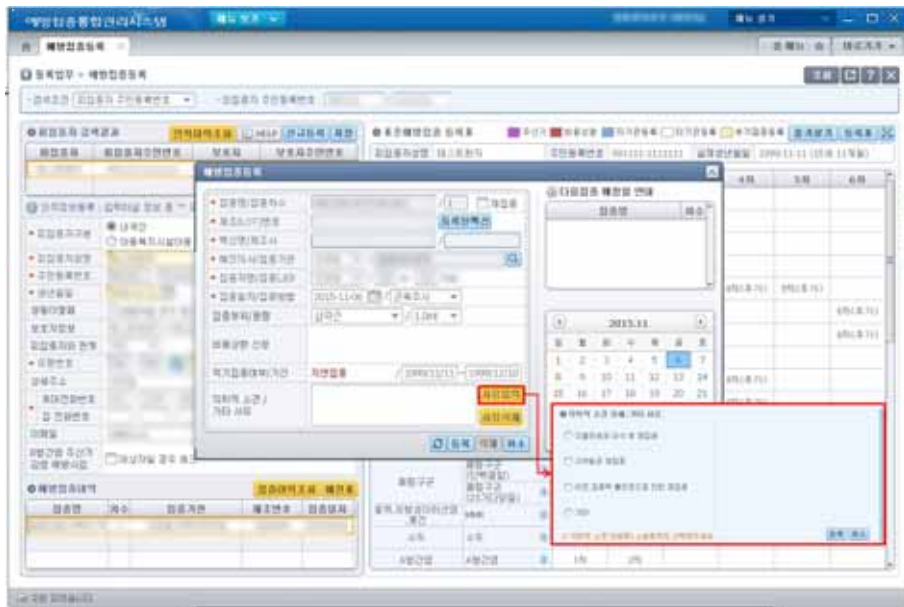
2.6 비용상환 신청

Q 1.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후 접종내역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A 1. 예방접종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은 가급적 예방접종 후 실시간으로 등록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접종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접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중복접종, 예방접종 등록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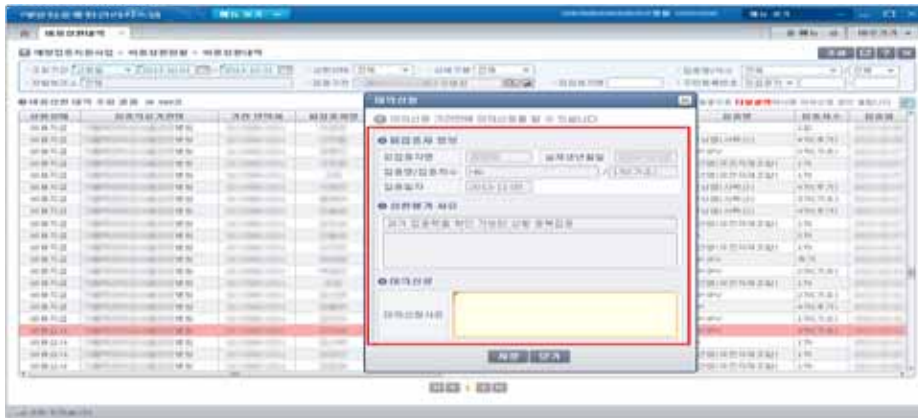
Q 2. 과거 접종력을 조회하였는데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서 비용상환 신청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2. 다른 의료기관에서 접종기록이 등록된 동일백신 동일차수의 중복접종은 비용상환이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B형간염 고위험군, 조혈모세포 이식 후 재접종 등)는 의학적 소견을 입력하면 비용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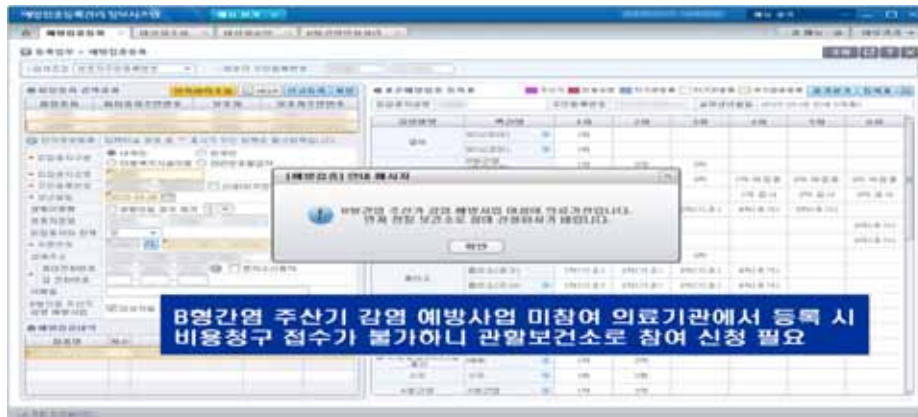
Q 3. 비용상환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3. ‘비용상환내역’ 메뉴에서 비용상환 신청건 중 상환불가로 심사된 내역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상환불가 내역’을 더블클릭 후 ‘이의신청 팝업창’에 이의신청 사유를 작성하여 저장하면 완료되며, 이의신청된 내역은 보건소에서 확인 후 재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Q 4.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입니다.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대상자의 B형간염 접종내역을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4.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접종력을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 경우 비용 청구 접수가 불가하니 등록방법 및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관할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5. 비용상환 신청내역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나요?

A 5.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메뉴보기' →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상환현황' → '비용상환내역'에서 비용상환 신청, 심사, 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지급결과'를 클릭하면 비용지급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6. 의료기관이 폐업된 경우에는 과거 비용신청 된 내역은 어디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A 6. 폐업된 의료기관일 경우에는 의료기관 관할보건소에서 접종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직접 관할보건소로 연락하시어 과거 비용상환 신청내역 확인을 요청을 하시면 보건소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Q 7. 비용상환 신청건에 대한 행정자치부 오류내역은 어디서 수정하나요?

A 7.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메뉴보기' → '예방접종지원사업' → '비용상환현황' → '행자부오류내역'에서 내역 조회 후 수정하고자하는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여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 등 오류내용을 수정 후 '수정'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 위탁의료기관용 지침 별첨 II. 6. 행정자치부 인증결과 오류내역 참조

2.7 기타

Q 1. 예방접종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을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서면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가 이 법이 정하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산을 통하여 예방접종내역을 등록하는 의료기관은 전산등록이 서면보고를 대체하므로 별도의 서면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2. 예방접종 위탁계약현황 등 기관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2.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단 ‘메뉴보기’ → ‘행정업무’ → ‘의료기관정보관리’ → ‘의료기관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위탁계약정보 외 기관정보(예진의사, 접종자, 전자서명용 기관인증서 등) 직접 수정 가능



Q 3. 비용상환 지급계좌번호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3. 의료기관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의료기관정보(병원)’ 메뉴에서 등록된 계좌번호 확인이 가능하며, 지급계좌정보를 수정하려면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 계약신청(어린이) 메뉴에서 통장 사본을 새로 등록 하고,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Ⅲ 교육시스템

1. 회원가입

Q 1.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할 경우, 등록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는?

A 1. 심평원에서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기관인증서 또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개인 공인인증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하나의 공인인증서로 두 명 이상 중복사용이 불가(즉, 하나의 공인인증서에 하나의 ID만 사용 가능) 등록하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2. 교육사이트 접속 시 오류가 발생한 경우(실명 인증 오류, 공인인증서 변경 등)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 Help desk(☎1644-1407)로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개인정보 수정

Q 1. 요양기관번호는 동일하나 소속(요양)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정보를 어떻게 변경하나요?

A 1. 사업자등록증에 요양기관번호를 기재하여 질병관리본부 시스템 담당부서(정보화T/F)로 팩스(Fax 043-719-7069)를 보낸 후, 반드시 담당자(☎043-719-7059)에게 수신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Q 2. 예방접종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데, 소속기관의 요양기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나의 정보’에서 정보를 변경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 회원정보 변경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에서 동일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 상단의 ‘내정보’에서 변경된 요양기관번호 및 소속으로 기관변경하거나, 기존에 사용하신 ID(회원)를 탈퇴 후 재가입 합니다. 기관변경 또는 재가입 후 ‘교육관리user(학습자)’ 권한을 재신청하고, 기존 ID로 수강한 내역은 동 사이트의 ‘게시판-묻고답하기’에 글을 남기거나 해당과(☎ 043-719-6851)로 연락하면 기존 수강(수료)내역을 이관해 드립니다.

※ 기관변경 또는 회원탈퇴 시 해당 ID에 부여된 모든 권한에 대해 해당과로 연락하여 미승인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이수

Q 1.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 의료기관입니다.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여 수강종료과정에서 ‘수료’로 확인되는데 관할보건소에서는 병원명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나의정보’를 클릭하여 관할보건소가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NIP 사업 교육은 의사 대상 교육이므로 간호사 등 기타 직군이 수료한 경우 미수료로 처리됩니다.

Q 2. 의사선생님이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아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이 본인의 개인 정보로 회원가입 후 동 ID로 의사분이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의사분이 교육 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재)계약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2.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과정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과 효율적인 국가 예방접종 사업 시행을 위하여 의무교육으로 운영되는 과정이므로, 위탁계약을 원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접종시행 의사 1인 이상이 반드시 본인의 ID로 회원가입 후, 직접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 ※ 수강이력은 개인별로 관리되고 있음

4. 프로그램 오류

- Q** 1. 다음 강의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1. 이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① Explorer 버전이 7.이하일 경우 8.이상 업데이트 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② 'http://www.adobe.com/software/flash/about'에서 컴퓨터 내에 설치된 flash player의 버전이 10.인 경우 11.으로 업데이트 후 수강하기 바랍니다.
- ③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가 'Google Chrome'인 경우 프로그램 작동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브라우저를 'explore'로 변경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 Q** 2. 모든 강의를 수강하였고 진도율도 100%인데 '수강종료과정(수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A** 2. 해당 과정의 [학습하기]를 클릭한 후 'e강의실' 화면의 왼쪽에 위치한 [강의실 입장]을 클릭합니다. 목차 화면 중, 마지막 회차의 강의 [복습하기]를 클릭한 후 화면 로딩이 끝나면 동영상 강의창을 닫은 후, 'e강의실' 화면을 닫으면 됩니다.

※ 수강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과로 문의 바랍니다.

Q 3. 예방접종 교육과정 중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파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A 3. PDF파일을 다운 받았으나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포털사이트에서 PDF뷰어(Adobe Reader)를 다운받아 설치하기 바랍니다.

5. 수수료 발급

Q 1. 교육수수료증은 어디서 발급 받나요?

A 1. 수수료여부는 교육시스템 홈 화면 상단의 ①‘수강과정’ 메뉴의 ②‘수강종료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의 교육과정 수수료 여부 확인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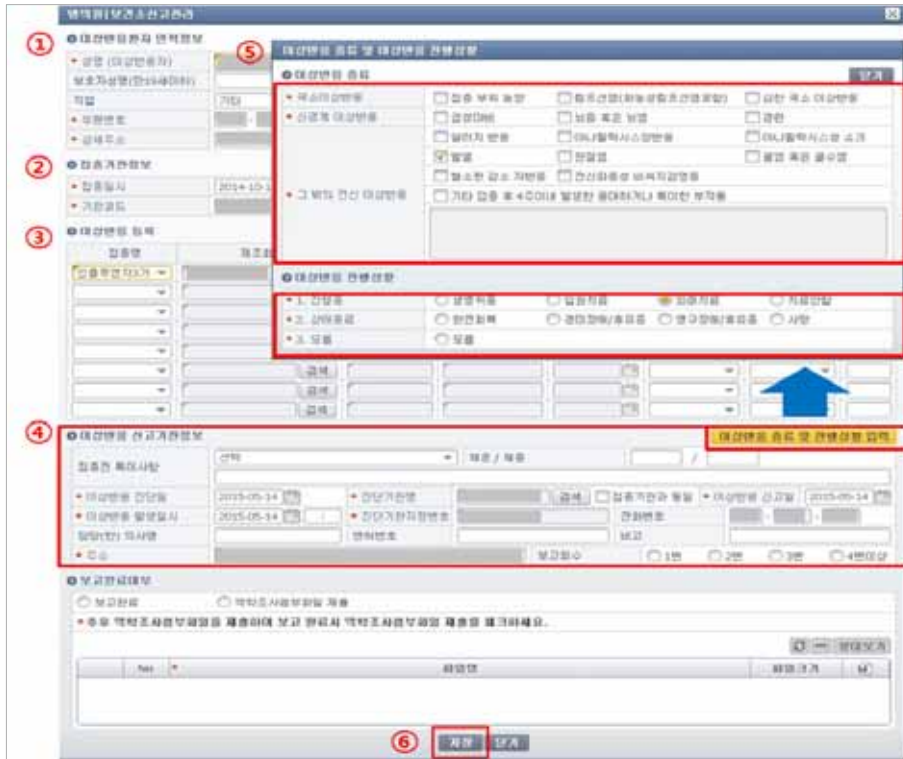


Q 2. 소속 의료기관이 변경되어 기존 수강내역을 현재 이전한 소속기관의 ID로 이관했습니다. NIP사업 계약을 위해 수수료증을 출력했는데 이전 의료기관 주소로 출력됩니다.

A 2. 교육과정을 이미 이수한 경우는 보건소 교육시스템 관리자가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이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같습니다. 따라서 이전 의료기관에서 수수료한 기본교육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Q** 3. 기존에는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교육을 수료했는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니 해당 교육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A** 3.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 교육을 수료한 아이디와 공인인증서에 등록된 아이디가 달라 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예방접종관리과(043-719-6848~52)로 문의하여 교육내역 이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병의원/보건소 신고화면(2)〉

- ① 이상반응환자 인적정보 확인
 - ② 접종기관정보 확인
 - ③ 예방접종정보 확인
 - ④ 이상반응 신고기관정보 확인
 - ⑤ [이상반응 종류 및 진행상황 입력버튼] 클릭
- 이상반응 종류와 진행상황을 반드시 체크
 - ⑥ 입력내용 확인 후 [저장] 버튼 클릭
- ※ 인적정보, 접종기관정보, 예방접종정보, 신고기관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입력함

2. 피해보상 신청

Q 1. 피해보상 신청 기준이 있나요?

A 2.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7호)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대상자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이상이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록 1-3.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Q 2.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 시 보상 결정 처리 절차와 보상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2.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관할보건소에 이를 보상 신청하고,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시·도지사는 신속히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피해조사결과가 및 피해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질병관리본부는 보상신청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하고 보상이 결정될 경우, 해당보상금을 보상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상관련 세부 사항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참고

2017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위탁 의료기관용)

- 창 간 : 2009년 1월
- 인 쇄 : 2016년 12월
- 발 행 : 2016년 12월
- 발 행 인 :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 편 집 인 : 감염병관리센터장 곽숙영
- 편집위원 : 예방접종관리과
- 자문위원 :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 편 집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주 소 : (363-951)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
- 팩 스 : 043) 719-6859
- 홈페이지 : <http://is.cdc.go.kr>

ISBN : 978-89-6838-310-6 (93510)